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600-01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추진 모델 개발 연구

2016. 12.

연구기관: 보험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추진 모델 개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연구기관명 : 보험개발원

연구책임자 : 지연구

연구 원 : 차일권

연구 조 원 : 양찬영



# 차 례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 방법 .....	6
가. 기존 문헌 및 현지 조사 .....	6
나. 실증분석 .....	7
다. 통계 및 계량분석 .....	7
라. 연구 협의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7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	8
1. 기대효과 .....	8
2. 활용 .....	8
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 .....	9
제1절 가축질병공제(보험) .....	9
1. 국내 .....	9
가. 가축재해보험(소) .....	9
나.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충남) .....	20
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유우진료소 운영 .....	24
라. 축산농가 및 수의사 면담 .....	28
2. 일본 .....	30
가. 개요 .....	30
나. 가축공제 운영 현황 .....	31
다. 가축공제 상품 운영 .....	35
3. 이스라엘 Hachaklait .....	42
가. 이스라엘 낙농업 .....	42
나. Hachaklait 개요 .....	43

다. Hachaklait 서비스 내용 .....	45
<b>제2절 시사점 .....</b>	<b>50</b>
1. 국내외 사례 요약 .....	50
가. 가축재해보험 .....	50
나.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충남) .....	50
다. 서울우유 유우진료소 운영 .....	51
라. 일본공제조합 .....	52
마. 이스라엘 Hachaklait .....	54
2. 시사점 .....	56
가. 상품운영 측면 .....	56
나. 운영구조 .....	59
다. 기타 .....	60
<b>제3장 사업추진모델 개발 .....</b>	<b>62</b>
<b>제1절 기본방향 .....</b>	<b>62</b>
1. 대상축종 선정 및 확대 .....	62
가. 검토방향 .....	62
나. 대상가능 축종 .....	62
다. 국내외 사례 .....	65
라. 이해관계자 의견(설문조사 결과) .....	66
마. 대상축종 선정 및 확대 .....	67
2. 상품운영 .....	68
가. 대상질병 .....	68
나. 진료 범위 .....	72
다. 진료비 부과 방식 .....	79
라. 표준진료수가 및 지역별 차등화 .....	82
마. 보장수준 및 보험료 지원 차등화 .....	83
바. 보험료계산1(위험구분) .....	84
사. 보험료계산2(농가별 차등적용) .....	86
아.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의 폐사위험 절감 반영(재해보험) .....	90
3. 운영구조 .....	91
가. 가입방식(전두수 or 일부) .....	91
나. 특정지역 전부 or 농가선택 가입 여부 .....	92
다. 가축재해보험과의 연계 여부(폐사보험금 지급 여부) .....	94
라. 보험 또는 공제 .....	96
마. 수의사 활용(지정수의사, 가축진료소 등) .....	100

4. 기타 .....	101
가. 처치시스템 운영(증빙서류 간소화 및 입증강화) .....	101
나. 질병처치 심사평가 .....	103
<b>제2절 상품설계 .....</b>	<b>105</b>
1. 기본방향 .....	105
2. 상품설계안 .....	105
가. 상품구조 .....	105
나. 보험목적의 범위(대상축종) .....	106
다. 보장범위 .....	109
라. 보장수준 .....	111
마. 보험기간 : 1년 .....	113
바. 진료항목 및 수가 .....	114
사. 보험금 지급 .....	121
3. 위험률 산출 .....	121
가. 산출방법 .....	121
나. 사용통계 .....	122
다. 위험률 산출안 .....	124
<b>제3절 국가재보험 운영방안 .....</b>	<b>129</b>
1. 국가재보험의 역할 .....	129
2. 국내외 사례 .....	132
가. 국내사례 .....	132
나. 해외사례 .....	140
3. 운영방안 .....	147
<b>제4절 사후 관리방안 .....</b>	<b>149</b>
1. 검토배경 .....	149
2. 시범사업 수행주체 .....	149
가. 공제와 보험의 정의 .....	149
나. 공제와 보험의 특성 .....	150
다. 공제와 보험의 장단점 .....	154
라. 가축질병공제(보험) 수행가능 조직 .....	155
마. 가축질병공제(보험) 수행 적절성 .....	156
3. 가축질병공제(보험) 시행지침 마련 .....	158
가. 개요 .....	158
나. 가축재해보험의 주요 내용 .....	158
다. 사업시행지침(안) .....	160

제5절 운영기반 마련 .....	186
1. 검토배경 .....	186
2. 기존제도 활용가능성 검토 .....	186
가. 공제(보험) 인프라 .....	186
나. 공제(보험)약관 작성 .....	188
다. 공제(보험)요율 산출 .....	188
라. 수의사회 .....	189
3. 근거법령 마련 .....	189
가. 농어업재해보험법 활용 방안 .....	189
나. 가축질병공제(보험)법 제정 방안 .....	192
제6절 IT기술과의 연계방안 .....	194
1. 검토배경 .....	194
2. 진료활동 시스템 .....	194
3. 공제(보험) 사업자 연계 .....	197
가. 요율산출기관 인프라 활용 .....	197
나. 시스템 연계 사례 .....	199
다. 진료기록 및 보험정보 연계방안 .....	202
제4장 실증실험 및 효과분석 .....	206
제1절 실증실험 .....	206
1. 개요 .....	206
2. 실증실험 결과 .....	207
3. 실증실험 한계와 분석 전환 .....	209
제2절 실증실험 대안 분석 .....	210
1. 분석 설계 .....	210
2. 효과분석 .....	214
가. 두당분석 .....	214
나. 젓소 전체 분석 .....	218
[참고1] 일본 가축공제진료 점수표(2014년 4월, 농림수산성) .....	220
[참고2] '16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245
[참고3] 가축재해보험법안 및 가축질병보험법안 .....	271
[참고4] 가축질병공제(보험)에 관한 설문조사 .....	281



# 표 차례

## 제2장

<표 2-1> 가축재해보험의 보장범위 .....	10
<표 2-2>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	10
<표 2-3> 2015년 축종별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	11
<표 2-4> 가축재해보험 체중 및 kg당 금액 .....	15
<표 2-5> 산지가격 적용범위표 .....	15
<표 2-6> 발육 표준표 .....	15
<표 2-7> 충청남도 사업비 규모(2013년 기준) .....	21
<표 2-8> 진료단가 구분 .....	22
<표 2-9> 진료단가 수준(아산시) .....	22
<표 2-10> 가축질병 진료비 정산서(아산시) .....	23
<표 2-11> 업무처리 시한 .....	24
<표 2-1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서식(아산시) .....	24
<표 2-13> 서울우유협동조합 계약진료 용어의 정의 .....	25
<표 2-14> 서울우유협동조합 계약진료 정기예방진료 규칙 .....	26
<표 2-15> 서울우유협동조합 계약진료 일반(응급) 진료비 내역 .....	27
<표 2-16> 일본 가축공제 운영현황 .....	31
<표 2-17> 일본(2013.2)과 대한민국(2014.6)의 가축 사육 현황 .....	31
<표 2-18> 농림수산성의 농업공제 인수실적(2012년) .....	32
<표 2-19> 일본의 가축공제 운영 현황(2012) .....	33
<표 2-20> 직역별 수의사 수(2012.12) .....	33
<표 2-21> 산업동물수의사 근무 분야(2012.12) .....	34
<표 2-22> 포괄공제와 개별공제 대상가축의 종류 .....	36
<표 2-23> 포괄공제 대상가축 중 사고 제외할 수 있는 기준 .....	37
<표 2-24> 제외할 수 있는 공제사고와 포괄공제 대상가축 종류 .....	37
<표 2-25> 한국과 이스라엘 비교 .....	42
<표 2-26> Hachaklait 연간 서비스 이용료 .....	46

## 제3장

<표 3-1> 2014년 주요 축종별 생산액 .....	63
<표 3-2> 축산물생산비 중 방역치료비 비중 .....	64

<표 3-3> 축종별 방역치료비 개선 .....	64
<표 3-4> 일본의 가축공제 운영 현황(2012) .....	65
<표 3-5> '1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66
<표 3-6> 축산단체의 도입의견 .....	66
<표 3-7> 축종도입 순서에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66
<표 3-8> 가축전염병 종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	68
<표 3-9> 검사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	69
<표 3-10> 격리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조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69
<표 3-11> 가축전염병 처분에 따른 보상금 .....	70
<표 3-12> 질병범위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의견 .....	71
<표 3-13> 대상질병에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72
<표 3-14> 2016년 예방주사, 검진 및 기타 예산 배정액 .....	73
<표 3-15> 국내 돼지 백신접종 프로그램(새끼 및 육성돈, 한돈협회 제공) .....	74
<표 3-16> 국내 돼지 백신접종 프로그램(모·임신돈, 한돈협회 제공) .....	75
<표 3-17> 국내 돼지 백신접종 프로그램(분만돈, 한돈협회 제공) .....	76
<표 3-18> 장범위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의견 .....	76
<표 3-19> 진료활동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77
<표 3-20> 일본 가축질병공제 진료항목 .....	80
<표 3-21> 진료비 부과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81
<표 3-22> 도입단계별 진료비 구분 .....	81
<표 3-23> 표준수가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82
<표 3-24> 일본의 부보비율과 보험료 수준 .....	83
<표 3-25> 진료비 보장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84
<표 3-26> 축산물생산비 중 방역치료비 비중 .....	85
<표 3-27> 위험구분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86
<표 3-28> 위험 세부구분 .....	86
<표 3-29> 가축전염병예방법 질병관리등급 부여 .....	87
<표 3-30> 1두(수)당 방역치료비 .....	88
<표 3-31> 보험료 차등적용에 대한 축산단체 의견 .....	89
<표 3-32> 농가별 보험료 차등적용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89
<표 3-33> 폐사율 감소에 대한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91
<표 3-34> 가입방식(전두수 or 일부)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92
<표 3-35> 특정지역 전부 or 농가선택 가입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93
<표 3-36> 가축재해보험 보장내용(소) .....	95
<표 3-37> 보장범위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의견 .....	96
<표 3-38> 수의사 활용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101
<표 3-39> 처치시스템 운영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102
<표 3-40> 질병처치 심사평가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104
<표 3-41> 축종별 가입형태 .....	107

<표 3-42> 가축전염병 종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	110
<표 3-43> 방문주기 및 업무 .....	111
<표 3-44> 한우 진료비 분포(충남아산 기준) .....	111
<표 3-45> 젃소 진료비 분포(충남아산 기준) .....	112
<표 3-46> 한우 진료비 분포 적합(충남아산 기준) .....	112
<표 3-47> 젃소 진료비 분포 적합(충남아산 기준) .....	113
<표 3-48> 보장한도액 예시 .....	113
<표 3-49> 진료수가 예시(대한수의사회) .....	116
<표 3-50> 진료수가 예시(충남수의사회) .....	116
<표 3-51> 진료수가 조사 광역 시도별 분포 .....	117
<표 3-52> 진단(처치)명별 동물병원 진료수가 분포 .....	118
<표 3-53> 연초 사육두수 현황(과주 유우진료소 일부) .....	122
<표 3-54> 2014년 및 2015년 유우진료소 응급진료비 .....	123
<표 3-55> 축종별 방역치료비 .....	124
<표 3-56> 위험구분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124
<표 3-57> 평균 응급진료비 분포 .....	125
<표 3-58> 2014년 및 2015년 방역치료비 현황(전체, 유우진료소) .....	125
<표 3-59> 2014년 및 2015년 두당 방역치료비 현황(전체, 유우진료소) .....	126
<표 3-60> 진단처치 및 약품비 비중 설문조사(대동물 수의사) .....	126
<표 3-61> 방역치료비(젃소, 송아지포함) .....	127
<표 3-62> 방역치료비 상대도 .....	127
<표 3-63> 경산우 비율 .....	127
<표 3-64> 축종별 추정보험료(안) 및 농가부담 예시 .....	128
<표 3-65> 국내 자연재해보험 현황(2015년) .....	133
<표 3-66>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방식(2015년 기준) .....	133
<표 3-67>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실적 .....	137
<표 3-6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2015년 기준) .....	138
<표 3-6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실적 .....	139
<표 3-70> 미국 농작물보험 주체별 역할 .....	141
<표 3-71> SRA 계약단계 .....	142
<표 3-72> 일본 농작물보험 주체별 역할 .....	143
<표 3-73> 스페인 농작물보험 주체별 역할 .....	145
<표 3-74> 스페인 위험분산 구조 .....	146
<표 3-75> 축종별 방역관리비 .....	147
<표 3-76> 일반 가축질병공제 금액피해율 .....	147
<표 3-77>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비교 .....	151
<표 3-78> 공제사업 주체의 개관 .....	152
<표 3-79> 공제사업 주체의 지배구조 .....	153
<표 3-80> 민영보험, 우체국보험 및 공제의 특징 .....	154

<표 3-81> 가축재해보험의 시행지침 목차 .....	158
<표 3-82>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	161
<표 3-83> 가입형태 .....	163
<표 3-84> 보장내용 .....	164
<표 3-85> 공제(보험)료 분납방법 .....	166
<표 3-86> 손해상황에 따른 조치 .....	177
<표 3-87> 축종별 가입형태 .....	190
<표 3-88>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	191
<표 3-89> 가축재해보험법 또는 가축질병보험법인 구성(안) .....	193
<표 3-90> 수의사처방 시스템 구축 현황 .....	195
<표 3-91>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관계기관 및 단체별 .....	200
<표 3-92>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전산망 관계기관 및 단체 .....	201

## 제4장

<표 4-1> 축종별 가입형태 .....	208
<표 4-2> 반응(종속)변수 및 조정 내역 .....	211
<표 4-3> 연도별 진료목장과 비진료목장 비교 .....	212
<표 4-4> 규모별(착유우 기준) 진료목장과 비진료목장 비교 .....	213
<표 4-5> 경산우 비율 .....	213
<표 4-6> 두당 방역관리 비교(전국, 계약진료 목장) .....	214
<표 4-7> 제적우비율 비교(과주 서울우유협동조합 계약·비계약 진료목장) .....	215
<표 4-8> 두당 평균 수익(원) .....	215
<표 4-9> 도태차이에 따른 두당 순이익 차이 .....	215
<표 4-10> 경산우1 두당 분만간격 및 송아지 생산두수(전국, 계약진료 목장) .....	216
<표 4-11> 두당 송아지 가격(천원) .....	217
<표 4-12> 두당 송아지 생산두수 차이에 따른 두당 이익 차이 .....	217
<표 4-13> 두당 유대 차이 .....	217
<표 4-14> 두당 유대 차이(규모차이 반영) .....	218
<표 4-15> 가축공제(보험) 도입 손익 추정 .....	219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1> Hachaklait 시장점유율 .....	44
<그림 2-2> Hachaklait 생산성 증가효과 .....	48

## 제3장

<그림 3-1> 가축종합보험(공제) 개념도 .....	106
<그림 3-2> 대재해발생 전후의 보험가격 변동 .....	131
<그림 3-3> 2005~2013년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구조 .....	136
<그림 3-4> 2014~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구조 .....	136
<그림 3-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구조 .....	139
<그림 3-6> 일본 농작물보험 운영구조 .....	144
<그림 3-7> 자금배정 절차 .....	175
<그림 3-8>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정보 처리단계별 법적 근거 .....	204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 목적

- 가축질병 방역강화 및 FTA에 따른 축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문제의 감소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질병공제(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모델 개발을 검토
  - 해외 축산 선진국의 가축공제(보험)제도의 실행 사례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럽(독일·네덜란드), 북미(미국·캐나다), 아시아(일본·태국) 및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등의 사례 조사
  -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연계하여 한·육우, 젖소 축종에 대한 질병관리활동에 따른 방역관리비 증가, 분만 및 착유(양 및 질), 폐사에 따른 손실 등 효과분석을 수행하고, 향후 돼지·가금류 등 축종 확대 방안 및 우선순위 모색

#### 2. 연구 필요성

##### □ 예방기능과 보장기능의 적절한 조화

-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질병 및 폐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유지할 필요
  - 가축질병 및 이로 인한 폐사 등 축산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은 예방활동과 긴

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한 축으로 예방 활동 및 발병시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

- 예방활동 및 적기 치료에 따른 방역치료비와 발생가능한 폐사 등에 따른 손실 역시 매우 중요
- 또한, 예방과 적기치료로 축산물이 정상적으로 생산·출하되는 경우에도 축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라 생산자인 축산농가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가격기반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
- 이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예방,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 치료 및 폐사에 따른 손실보전 등 가축질병공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모델 개발이 필요함

#### □ 예방적 진료를 통한 가축질병발생 가능성 최소화

- 가축질병은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줄여 생산자인 축산농가에게 안정된 수입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가축에 대한 재해위험을 보장하는 가축재해보험제도 외에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축산물 생산액 중 질병에 의한 손실액이 약 20%로 추산되고 있어 조기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하여 질병에 의한 손실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 특히,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상재발생국과의 교역의 확대로 인하여 외래성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적절한 방역조치를 위해서는 질병 발생 초기에 수의사의 정확한 예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상수의사가 가축방역의 제1선이 되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수적
- 목장에서의 자가진료는 수의사에 의한 질병의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파력이 높은 전염성 질병의 조기검진의 실패에 따른 전국적 확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부정확한 자가진료는 가축질병을 만성화시켜 질병으로 인한 손실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전문가에 의한 질병관리 및 예방체계 확립으로 가축의 질병에 의한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국가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보강이 필요한 시점임

#### □ 축산농가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

-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시 전국적인 전파로 인하여 347만 여두의 가축을 살처분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이 약 3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
  - 가축질병발생으로 인한 치료비와 가축의 살처분, 폐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 마련 및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아울러 축산농가가 직면하는 축산물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도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축산농가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대부분 보장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 ① 연구용역 주관 연구

##### ① 세부 연구과제 연구내용 총괄 및 조정

- 동 공제(보험)의 도입방향이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 축산업계, 수의사, 농협, 보험사 등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기본방향 설정(대상축종 및 대상질병, 유무상 진료항목의 구분, 진료수가제(포괄, 개별), 전담수의사 지정, 보장범위, 사업운영주체, 가축질병공제(보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
- 실증실험 등 직접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분야는 수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를 위탁하여 효율성을 제고
- 아울러, 연구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토록 조정

##### ②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추진 T/F 운영

- 생산자단체 · 수의사회 · 농협 · 농협손해보험 등으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T/F운영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기 구성된 TF 활용)
- 필요시 별도의 세부 T/F 또는 팀원을 보강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제고

#### ② 가축질병공제제도 국내외 사례 조사

##### ① 국내 유사 제도 조사

-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질병치료비 지원제도(충청남도 등), 서울우유 협동조합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사업 등을 조사

##### ② 해외 공제(보험)제도 및 유사제도 조사

- 유럽(독일 · 네덜란드), 북미(미국 · 캐나다), 아시아(일본 · 태국) 및 오세아니아(호주 ·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제도 사례 조사
- 공제제도가 정착되어 활성화 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도 시행

### ③ 시사점 도출

- 조사된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된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 ③ 가축질병공제제도 실증실험 및 효과분석

#### ① 한·육우, 젖소 축종에 대한 소규모 실증실험 및 효과분석

-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연계하여 질병관리활동을 실시함에 따른 방역관리비용, 분만 및 착유(양, 질), 폐사 등에 따른 손익 등 효과분석
- 이를 위하여 파주(계약진료 진행 중), 아산(충남 소진료비 50% 보조사업 최초 시행) 등 공제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사전 질병관리활동이나 진료비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동물병원 2~3 곳과 해당 농가를 지정하고, 일반 시·군 단위의 동물병원과 농가를 지정하여 비교분석(유병율, 폐사율, 수태율, 생산성(한·육우, 젖소), 면역력 등)을 수행

#### ② 향후 돼지·가금류 등 축종 확대방안 모색

- 해당 축종별 수의사회 소속 임상수의사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방안 마련
- 국내 여건을 고려, 해당 축종 생산자단체들과 협의하여 돼지, 가금류 등에 대한 확대방안 및 우선순위 설정

### ④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모델개발

#### ① 한·육우, 젖소 축종 공제료, 진료항목별 무상진료 항목과 유상진료 항목 진료수가, 공제활동(전담수의사 순회진료 주기 등) 마련

- 한·육우, 젖소 축종에 대한 보장조건(보장질병, 보장수준, 보장방법 등) 설정
- 한·육우, 젖소 축종에 대한 사육두수, 평균가격, 생산액 등 위험노출크기 측정(가축재해보험 활용 검토)
- 보장조건에 따른 비용 추정
-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표본조사를 통한 무상진료(예방활동)과 유상진료항목 개발 및 진료수가 산정(일상진료와 특수진료 구분)

- ② 폐사/사고 보상금 등 재원 부족에 대비한 국가재보험 운영 방안
  - 전염병 등의 경우에는 대규모 피해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제(보험)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보험 제도 등 운영 방안 마련
  - 동 국가재보험 등에 대한 해외사례, 국내사례(농어업재해보험, 환경책임보험, 풍수해보험 등)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
- ③ 사업수행주체, 사업비 집행 및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
  - 별도법인 설립, 생산자단체, 농협, 보험사 등 기존 기관 활용 시범사업 수행 주체별 장·단점 및 사업효과 비교 분석, 정부와 사업수행주체 등 운영체계 및 역할 분담 등 운영방안 마련
  - 동 사업을 위한 사업비(영업비, 손사비, 일반관리비 등) 집행 및 사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농작물·가축재해보험 등의 사업시행지침을 모델로 한 가축질병공제 사업시행지침(안) 마련)
- ④ 기존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근거 법령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작물 재해보험·수입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보험 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요율산출기관 등의 인프라 활용방안 및 연계운영 가능성 검토
  - 동 공제(보험)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 제정 방식과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운영방식 등 비교 분석
- ⑤ 향후,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정착을 위한 IT 연관 기술과의 연계방안 및 공제관련 시스템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 동 공제(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가능한 IT 연계방안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험전산망 등을 연결함으로써 종합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 마련 등 검토

## 2. 연구 방법

### 가. 기존 문헌 및 현지 조사

- 질병공제(보험)와 유사한 국내 사례 조사

- 가축질병 폐사를 보장하는 가축재해보험, 지방자치단체의 진료비보조사업, 협동조합 진료사업 등 유사 공제(보험)에 대한 조사

○ 외국의 질병공제(보험)에 운영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 유럽(독일 · 네덜란드), 북미(미국 · 캐나다), 아시아(일본 · 태국) 및 오세아니아(호주 · 뉴질랜드) 등의 공제제도 사례 조사
- 공제제도가 정착되어 활성화 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도 시행

## 나. 실증분석

○ 한 · 육우, 젖소 축종에 대한 소규모 실증실험 및 효과분석

-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연계하여 질병관리활동을 실시함에 따른 방역관리비용, 분만 및 착유(양, 질), 폐사 등에 따른 손익 등 효과분석

○ 향후 축종 확대방안 모색

-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돼지, 가금류 등에 대한 확대방안 및 우선순위 설정

## 다. 통계 및 계량분석

○ 한 · 육우, 젖소에 대한 진료항목별 진료항목 및 진료수가 조사

- 보험상품 설계를 위한 진료항목 및 진료수가 조사

○ 미국 등 일반화된 보험요율 산출방법론을 적용하여 한 · 육우, 젖소에 대한 공제(보험) 위험률 시산

○ 수의사의 질병관리활동에 따른 분만 및 착유(양, 질), 폐사 등 통계분석

## 라. 연구 협의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동 공제(보험)의 도입방향이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축산업계, 수의사, 농협, 보험사 등의 전문가 Pool을 대상으로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자 간 토론 및 공감대 형성(연구진, 학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보험 전문가, 농업인 등)

○ 생산자단체 · 수의사회 · 농협 · 농협손해보험 등으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T/F운영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 1. 기대효과

- 가축질병공제(보험)에 대한 사업추진모델 개발은 국내 축산농가가 직면하는 질병 및 사고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 및 처치모델을 개발하여 가축질병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생산손실을 최소화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질병손실에 대하여는 보험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나아가 기 개발된 수입보장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하여 완전한 생산안정을 유도할 수 있음

### 2. 활용

- 전문가 Pool 간담회 및 실무자 T/F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최종연구결과를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추진모델 개발에 활용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함

## 제2장

# 국내외 사례조사

## 제1절 가축질병공제(보험)

### 1. 국내

#### 가. 가축재해보험(소)

##### 1) 개요

- (목적)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 ('15년 지원) 국비 546억원(총보험료 국비보조 50%, 자부담 50%)
  - \*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운영체계)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관장, 국고로 보험료 지원, 민간보험사는 보험판매와 손해평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시

##### 2) 보장내용

#### 담보위험 및 보험가입대상

- 질병, 풍수재, 화재, 설해 등으로 인한 폐사(주계약), 축산휴지(특약), 질병,

전기장치위험(특약), 축사손해위험(특약)

< 2- 1> 가

구분	주계약						축사특약				질병 특약	휴지 특약	전기 특약	폭염 특약
	법정 전염병	기타 질병	사고	화재	풍수재	설해	화재	풍수해	설해					
소	×	○	○	○	○	○	○	○	○	×	×	×	×	
말	×	○	○	○	○	○	○	○	○	×	×	×	×	
돼지	×	×	×	○	○	○	○	○	○	○	○	○	○	
닭	×	×	×	○	○	○	○	○	○	×	×	○	○	

○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사슴·양(염소)·칠면조·타조·거위·벌·토끼·관상조·오소리(16개 축종) 및 특약에 의한 축사

- ('97~'99) 소 → ('00) 말, 돼지 추가 → ('02) 닭 추가 → ('04) 오리 추가 → ('05) 꿩, 메추리 추가 → ('06) 칠면조, 사슴, 양 추가 → ('07) 거위, 타조 추가 → ('10) 양봉 추가 → ('11) 한봉, 토끼, 관상조 추가 → ('12) 오소리 추가

□ 보상수준 및 가입방식

○ 축종에 따라 보상수준 상이

- 가축: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 ~ 95%까지 보상

- 축사: 가입금액 한도 내(풍수해 및 설해는 손해액에서 50만원 공제)

○ 임의가입형태로 운영하며, 가입률은 축종별로 차이

< 2- 2> 가 가

구분	'14년	'15년	비고
농가수(호)	11,375	12,282	9.0% ↑
가입두수(백만마리)	218	220	0.5% ↑
가입률(%)	89.1	90.7	1.6%p ↑
가입금액(조원)	3.7	3.8	2.7% ↓
보험료(억원)	983	1,120	13.9% ↓

자료 :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회의 자료, 농식품부



< 2 - 3 > 2015 가 가

(단위 : 호, 천두, %, 백만원)

축종	사육 두수	가입현황					사고현황			손해율
		농가수	가입두수	가입률	가입금액	위험보험료	농가수	건수	보험금	
소	3,195	4,169	219	6.8	606,924	24,148	3,444	10,473	21,479	88.9
돼지	10,142	3,845	8,769	86.5	2,451,958	42,011	575	647	42,881	102.1
가금	226,680	3,629	210,940	93.1	694,981	20,569	1,083	1,231	21,715	105.6
말	26	567	0.9	3.5	30,441	3,285	64	74	2,241	68.2
기타	2,364	72	11	0.5	2,488	143	21	125	156	109.1
계	242,407	12,282	219,940	90.7	3,786,792	90,157	5,187	12,550	88,473	98.1

자료 :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회의 자료, 농식품부

## □ 정부지원

- 총보험료의 50%지원

### 3) 보험목적의 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에서 정한 소(牛)의 수용장소(소제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牛)(귀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한우, 육우.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 젖소. 다만,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8세 미만
- ※ 젖소 수컷은 육우로, 젖소 불임우(프리마틴 등)는 암컷으로, 거세우는 수컷으로 분류

### 4) 보상하는 손해

#### □ 기본담보

-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입은 손해를 보상
  - 사망(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외 일반증상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
  - 긴급도축(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난, 행방불명. 다만 도난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도난손해)
-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1조(보험 목적의 관리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함.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30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소(牛)도체결함보장 확장담보

- 도축장에서 도축 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결함은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판정한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이 경락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보상

###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기본담보

##### ○ 일반조항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
- 가축전염예방방법에서 정하는 법정전염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
- 보험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목적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

- 해. 다만, 풍수해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 담보조항

- 사료공급 및 보호, 피난처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가축의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쇄약, 성장지체 · 저하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 개체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에는 제외
-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사망 손해
-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영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고로 회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 출하지시를 통보(구두, 유선 및 문서 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육 또는 치료하다 발생한 손해 및 자격 있는 수의사가 도살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 산유능력 저하(비유량, 유지율) 또는 세균수와 체세포수가 정부의 “원유의 위생등급 및 기준”을 초과하여 도태시키는 경우

#### ○ 도난담보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손해

-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 보관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줌도둑으로 인한 손해
- 재고 조사 시 발견된 손해
- 망실 또는 분실 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보험의 목적이 보관 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

#### 확장담보(소(牛)도체결합보장)

-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와 부문1(소)에서 보상하는 손해
- 도축 경매 후 발견된 결함으로 인한 손해

### 6) 보험가액 산정

#### 기본담보

- 한우(암컷, 수컷(거세우 포함) 공통)
  - 연령(월령<sup>1)</sup>)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 보험가액 =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

1) 출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를 滿으로 계산하며 월 미만 일수는 무시함

- 연령(월령)이 7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 = ①(체중) × ②(Kg당 금액)

< 2- 4>가 kg

- ① 체중은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牛)의 연령(월령)에 해당되는 체중
- ② kg당 금액은 『산지가격 적용범위표』에서 사고소(牛)의 축종별, 성별, 월령에 해당되는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함
- ③ 한우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530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함
- ④ 월령별 가액이 위 1.의 송아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위 1.의 송아지 가격을 적용함

< 2- 5> 가

구분		수컷	암컷
한우	성별 35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생후 7개월 이상	생후 7개월 이상
육우	젖소 수컷 5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생후 3개월 이상	생후 3개월 이상

< 2- 6>

한우 수컷 (거세우 포함)		한우 암컷				육우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2	-	2	-	26	385	2	-
3	-	3	-	27	390	3	-
4	-	4	-	28	400	4	210
5	-	5	-	29	410	5	220
6	-	6	-	30	420	6	230
7	230	7	230	31	425	7	240
8	240	8	240	32	430	8	250
9	250	9	250	33	435	9	270
10	260	10	260	34	440	10	290
11	295	11	270	35	445	11	310
12	325	12	280	36	450	12	330
13	360	13	290	37	455	13	350
14	390	14	300	38	460	14	370
15	420	15	305	39	465	15	390
16	450	16	310	40	470	16	410

한우 수컷 (거세우 포함)		한우 암컷				육우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17	480	17	315			17	430
18	505	18	320			18	450
19	530	19	325			19	470
20	555	20	330			20	490
21	580	21	340			21	500
22	600	22	350			22	520
23	620	23	360			23	540
24	640	24	370			24	560
25	655	25	380			25	580
							600

### ○ 젓소(암컷)

- 사망 시점의 연령(월령)을 계산(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 일까지를 滿으로 계산하며 월 미만 일수는 무시).
- 상기 월령을 계산한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단계에 따라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계산함
  - 월령 2개월 ~ 7개월까지 : 분유 떼기 암컷 가격
  - 월령 8개월 ~ 12개월까지 :
    - 분유떼기암컷 +  $\frac{1}{6} \times (\text{수정 단계가격} - \text{분유떼기암컷}) \times (\text{사고월령} - 7\text{개월})$
  - 월령 13개월 ~ 18개월까지 : 수정 단계 가격
  - 월령 19개월 ~ 23개월까지 :
    - 수정단계가격 +  $\frac{1}{6} \times (\text{초산우가격} - \text{수정 단계가격}) \times (\text{사고월령} - 18\text{개월})$
  - 월령 24개월 ~ 31개월까지 : 초산우 가격
  - 월령 32개월 ~ 39개월까지 :
    - 초산우가격 +  $\frac{1}{9} \times (\text{다산우가격} - \text{초산우가격}) \times (\text{사고월령} - 31\text{개월})$
  - 월령 40개월 ~ 55개월까지 : 다산우 가격
  - 월령 56개월 ~ 66개월까지 :

$$\text{다산우가격} + \frac{1}{12} \times (\text{노산우가격} - \text{다산우가격}) \times (\text{사고월령} - 55\text{개월})$$

· 월령 67개월 이상 : 노산우 가격

### ○ 육우

- 연령(월령)이 2개월인 경우

· 보험가액 = 전전월 전국산지 평균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

- 연령(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 = ①(체중) × ②(Kg당 금액)

### □ 확장담보(소(牛)도체결합보장)

○ 보험가액 = 정상도체의 해당등급(사고소(牛) 등급)의 1두가격\*

- 1두 가격\* = 사고 전월 전국지육경매평균가격(원/지육kg) × 사고소(牛)의 도체중(kg). 단, kg당 전월 전국지육경매평균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시하는 가격을 따름.

## 7) 손해액의 조사결정

### □ 기본담보

○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에 회사가 정하는 [별표 1]의 “소(牛)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함)으로 함.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함.

○ 제1항의 이용물 가액 산정 시 도축장 발행 정산자료 이외의 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용물 가액이 보험가액의 10%이상일 때는 그 금액을 이용물 가액으로 인정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정 평가하여 이용물 가액으로 함. 다만, 도축장 발행 정산자료 이외의 자료로 제출된 젖소 초산우 이용물의 경우에는 젖소 다산우의 보험가액으로 이용물 가액을 산정함.

- 피보험자가 제2항의 이용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회사의 입회 없이 이용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정 평가하여 손해액을 차감함.
-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함.

#### □ 확장담보(소(牛)도체결합보장)

-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에 아래와 같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함.
  - 특별약관의 손해액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소(이하 "사고소(牛)")의 도체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평균 경락가격[등외등급 및 결함을 제외한 도체(이하 "정상도체")의 가격]과 사고소(牛) 도체의 경락가격으로 계산한 1두가격의 차액으로 함.
  - 손해액 = 정상도체의 해당등급(사고소(牛) 등급) 1두 가격 × 도체중  
- 사고소(牛)의 1두 경락가격
  - 1두 가격 =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산출
  -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폐기처분된 소(牛)의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통약관의 부문1(소)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를 따름.

### 8) 지급보험금의 계산

#### □ 기본담보

-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 약관 각 부문별 제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손해액 ×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
-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함)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 약관 각 부문별 제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함.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함.

#### □ 확장담보(소(牛)도체결합보장)

- 지급할 보험금은 제3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서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5조(자기부담금)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text{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함)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함.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함.

## 나.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충남)

### □ 도입 목적

- 충남도 지역의 소사육농가의 진료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대가축진료비 지원을 통한 소사육농가 생산 인프라 구축
  - 가축질병의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등 질병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진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 진료 범위

- 소 50두 미만의 중·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하여 산과질환 등 진단·치료비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 해 오고 있음
  - 지역실정을 감안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업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 및 사육기술, 전염병예방 기술을 병행지원하고 있음

### □ 진료 세부 내용

- 주 관 : 시장·군수(협조 : 충남수의사회)

- 기 간 : 매년 1 ~ 12월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 사업비 부족 시 전업규모 이하 농가 우선
- (사업내용)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 및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 지도 병행
- 사업계획

&lt; 2 - 7 &gt;

(2013 )

(단위 : 두,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비	자 담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25,000	2,500 (100%)	375 (15)	875 (35)	1,250 (50)	

## □ 시·군 조치내용

- 진료 동물병원 선정 및 표준진료수가 산정<sup>2)</sup>
  - 개원 동물병원 중 사업에 참여할 진료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선정
  - 충남수의사회, 소 사육 관련단체장과 표준진료수가의 적정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진료비 지원사업에 적용
  - 사업비 지원한도는 농가당 1,000천원 이하로 편중 지원 예방. 단, 시군별 여건, 질병발생 상황 등을 고려 한도 변경 가능
  - 지방비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 타 시도 동물병원의 진료 건은 지원 제외
- 일반진료(2011)
  - 진료단가 구분

2) 충남수의사회에서는 질병별 표준진료수가(안)을 각 시장·군수에게 제출

<표 2- 8> 진료단가 구분

진료구분		진료구분	
내과	기본진료, 수액처치, 고창증, 기립불능, 케토시스, 수혈(1리터)	산과	후산정체, 자궁세척, 자궁내약물주입, 호르몬처치, 질탈수술, 난산처치, 질과열처치술, 회음3도열상, 자궁염전, 자궁탈정복술, 절태수술, 제왕절개수술
외과	기본외과, 골절(석고, 캐스트) 석고, 캐스트 제거, 유두공 확장술, 유두수술, 탈장수술, 관절굴건구축술, 전위맹봉합수술, 제1위 천공수술, 전위수술, 위절개술(자우), 위정개술(성우), 요도형성술		임상병리
			기타

- 진료단가 수준

< 2 - 9> 가 ( )

진료구분		단가(원)	진료구분		단가(원)
내과	기본진료	60,000	산과	후산정체	70,000
	수액처치	70,000		자궁세척	60,000
	고창증	70,000		자궁내약물주입	60,000
	기립불능	70,000		호르몬처치	60,000
	케토시스	80,000		질탈수술	100,000
	수혈(1리터)	120,000		난산처치	100,000
	기본외과	70,000		질과열처치술	100,000
외과	골절(석고, 캐스트)	100,000	회음3도열상	100,000	
	석고, 캐스트 제거	60,000	자궁염전	150,000	
	유두공 확장술	70,000	자궁탈정복술	200,000	
	유두수술	150,000	절태수술	200,000	
	탈장수술	150,000	제왕절개수술	400,000	
	관절굴건구축술	150,000	임상병리	전해질검사	20,000
	전위맹봉합수술	120,000		생화학검사	50,000
	제1위 천공수술	150,000		CBC검사	30,000
	전위수술	250,000	기타	부제병	60,000
	위절개술(자우)	200,000		거세	60,000
위정개술(성우)	300,000	제각		60,000	
요도형성술	200,000				



○ 업무처리 시한

< 2 - 11 >

보고 항목	보고기한	비 고
○ 표준진료수가 내역 제출	당년도 01. 30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차년도 01. 10	

○ 정산

< 2 - 12 >

( )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호수	두수	계	도비	시군비	호수	두수	계	도비	시군비			

□ 기대효과

- 조기진료 기피로 인한 소산업의 생산성 악화 개선
- 자가진료에 의한 치료효율 감소와 농가재정부담 증대 개선
- 소사육농가, 관련기관, 임상수의사의 네트워크 유지로 전염병 조기발견 기대
- FTA 시행에 따른 소 사육농가 보호장치 마련

**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유우진료소 운영**

□ 도입 목적

-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유우진료소의 계약진료 목적은 젖소 질병예방, 치료 등에 조합원의 낙농경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
  - 젖소에 대한 정기 계약진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정기 계약 진료가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계약진료에 대한 세부 약관을 운영하고 있음

## &lt; 2- 13 &gt;

## 용어의 정의

“조합원”이라 함은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납유하는 낙농가를 말함.

“계약자”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본 약정서에 의해 소정의 계약료를 납부하고 자신이 사육하는 젖소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피계약자에게 위임한 사람을 말함.

“피계약자”라 함은 본 약관에 의해 계약자가 사육하는 젖소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운영자를 말함.

“계약료”라 함은 정기계약 진료에 따른 계약자의 총원유대 중 일정율의 부담금을 말함.

## □ 계약 대상

- 자신이 생산한 우유를 조합에 납유하는 조합원으로서 본 약정서를 승인하고 약정한 조합원. 다만, 총 사육두수의 1/3이상이 비육우인 조합원은 제외함.

## □ 계약료

- 계약자의 원유기본가격 940원/L의 1.4%(13.16원/L)를 계약료로 수납함
- 세금, 사료대등 비용 공제로 인하여 계약료의 유대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 수납할 수 있음

## □ 계약진료 수행자(피계약자)의 의무

- 계약진료 수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자가 사육중인 젖소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정기예방 진료
  - 상기 외에 계약자로부터 별도 진료(응급진료 등) 요청으로 출장 진료할 경우 별도의 진료수가를 준수하며, 진료비 정산은 유대공제를 원칙으로 함

## &lt; 2 - 14 &gt;

**정기예방진료규칙**

피계약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자가 사육하는 젖소를 정기적으로 진료하며 단서 조항을 제외한 일체의 진료비는 계약료에 의한 것으로 피계약자가 부담한다.

**1. 진료 간격**

기 준(일평균납유량)	주 기(간격)	비 고
300kg 이하	1회/ 20일	
300~600kg 이하	2회/ 월	
600kg 초과	3회/ 월	

**2. 진료 항목**

가. 난산과 유열을 제외한 일체의 번식관계 검사와 처치

① 자궁내막염	② 자궁축농증	③ 자궁점액증
④ 배란장애	⑤ 난포발육장애	⑥ 난소낭종
⑦ 질 염	⑧ 난소검진	⑨ 미이라변성
⑩ 유,사산 처치	⑪ 자궁세척	⑫ 후산정체
⑬ 기타 번식장애 예방지도		

나. 유방염 검진 및 예방지도

- ① 월1회 이상 집합우유(별크우유)의 체세포검사(지도소 검사 결과 이용 가능)와 검사결과 250,000~300,000이상/ml 인 경우 개체별 검사 및 원인분석 조치에 관한 사항( 단, 샘플의 채취는 계약자 준비 사항임)
- ② 임상형 유방염의 감수성 검사 및 처방(단, 치료약품비는 계약자 부담)
- ③ 기타 유방염 예방 지도에 대한 사항

다. 백신, 구충약, 소독제 등 계약자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기구의 공급알선

라. 조기진단, 자가 치료법 등

**3. 시행 방법의 지도**

가. 피계약자는 정기진료일 전에 계약자에게 진료일정과 계약자 준비사항을 유선 또는 서신으로 통보한다.

나. 별지서식에 의해 개체기록 관리한다.

다. 피계약자가 질병 사고등 유고시에는 기간 중 계약진료를 이행할 자를 선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lt; 2 - 15 &gt;

( )

(금액단위:원)

질 병 명	진 료 비	비 고
제1위식체	10,000~15,000	
소화불량	10,000~15,000	
설사	10,000~15,000	
제3위식체	10,000~15,000	
제4위식체	10,000~15,000	
구내염	10,000~15,000	
임신후기소화불량	10,000~15,000	
비출혈	10,000~15,000	
비염	10,000~15,000	
복막염	10,000~15,000	
늑막염	10,000~15,000	
흉막염	10,000~15,000	
기관지염	10,000~15,000	
기관지폐염	10,000~15,000	
송아지설사	10,000~15,000	
송아지제염염	10,000~15,000	
송아지관절염	10,000~15,000	
송아지제염	10,000~15,000	
산욕열	15,000~20,000	
맹장확장염전	15,000~20,000	
폐출혈	15,000~20,000	
임신중독	15,000~20,000	
기립불능	15,000~20,000	
유두폐쇄	15,000~20,000	
신우신염	15,000~20,000	
신수종	15,000~20,000	
급성고창증	15,000~20,000	
케토시스	15,000~20,000	
유열	15,000~20,000	
혈색소뇨증	15,000~20,000	
신장염	15,000~20,000	
방광염	15,000~20,000	
각종중독증	15,000~20,000	
급성유방염	20,000~25,000	괴저성포함
각종독혈증	20,000~25,000	
골절(기브스)	20,000~25,000	
질탈	25,000~30,000	직장탈도이에준함

질 병 명	진 료 비	비 고
방광탈	25,000~30,000	
자궁경관탈	25,000~30,000	
난산	30,000~40,000	
자궁염전	20,000~30,000	
송아지헤르니아수술	30,000~40,000	
제4위전위(비외과)	25,000~30,000	Blind-Tech법
자궁탈	30,000~40,000	
골절	40,000~50,000	핀치료
제4위전위(외과)	80,000~100,000	
개복수술	80,000~100,000	
제왕절개	100,000~150,000	

※ 야간진료(일몰 후~일출전까지) 시에는 상기 진료비에 10,000원 추가함.

## 라. 축산농가 및 수의사 면담

### □ 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인터뷰(2016.8)

- (사육 현황) 한우 1,100농가, 52,000두로 추정(비육우 67% , 번식우 33%)
  - 경상북도 한육우 사육 규모의 1/10 수준
- (수의사 현황) 관내의 대동물 전문 수의사는 5명 미만으로 파악
- (주요 질병) 비육농가는 폐렴 등의 호흡기, 거세 시의 요결석, 번식농가는 산과 관련 질병과 송아지의 설사병 등이 주요 질병
  - 농가도 자가 진료보다 수의사를 통한 전문적인 진료를 희망하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만 수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화
- (질병공제(보험)) 소 가격이 높게 형성된 시점이므로 가축 질병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농가의 수요는 클 것으로 판단(일부 송아지 폐사율 20% 예상)
  - 폐사의 상당수는 수의사 진료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특히 송아지 가격이 높은 시점에서 해당 폐사율 감소는 농가 수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가격조건이 나빠졌을 경우 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감소가 자연스레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거세 포함 요청(생후 6~7개월쯤 실시)(비육농가 요청가능성 높음)
- (시범사업) 안동지역이 시범사업에 포함되기를 희망

## □ 충남 아산시 수의사(2016.7)

○ (진료비 지원사업) 축산농가와 수의사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는 형태의 제도라서 도입이 용이

- 정기 예찰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담 및 컨설팅 등도 농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 거의 이뤄지지 않음
- 치료 목적 및 생명유지에 관련된 사항만 보장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움에 따라 거세, 제각 등은 진료비 보조에서 제외
- 소 진료비 보조사업의 정산서 업무(작성~제출)는 수의사가 대행(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의 불편·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함)
- 유대, 소 값 등 해당 축농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축종간 진료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남(과거 우유값이 높았을 때는 젖소 진료비중이 높았고, 현재는 한우의 진료비중이 높게 나타남)

## ○ 질병공제(보험)

- (분배의 문제) 수의사의 분배문제가 해소되어야만 질병공제(보험)이 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수의사마다 진료하는 분야가 다르고 진료서비스 질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수의서비스에 따라 적절한 보수가 따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수의사에 대한 배분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제(보험)에서 관내 이용 가능한 수의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농가의 선택에 따라 수의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될 필요
- (진료수가 차별화) 지역에 따라서 수의사 이동거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수가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교통 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진료수가의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
- 관련 주체(정부, 축산농가, 수의사 등)의 의사 결정체계를 통해서 농가와 수의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료 수가 산정이 필요
- (진료DB구축) 방역관리의 정책목적 달성 및 수의사의 허위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대한 자료(이미지 포함)가 실시간으로 집적·관리될 필요

- 이를 통해 전국적인 질병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수의사의 허위진료를 차단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의 간편화에도 활용할 수 있음

## □ 파주시 서울우유협동조합 진료소 인터뷰(2016.7)

### ○ 빈번한 치료행위 요구에 대한 우려

- 계약진료 시행에 따라 수의사에 대한 빈번한 치료요구 행위가 초기에는 일부 발생하였으나, 자가조치 교육 등에 따라 정상화된 점을 고려하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 특정 수의사만을 요구 또는 거절하는 축산농가 존재

- 협동조합 진료소 내 수의사 중 특정 수의사를 요청하거나, 특정 수의사를 거부하는 축산농가가 존재
- 할당된 수의사를 거절하는 경우 대표 수의사(원장) 직접 계약진료를 수행

## 2. 일본<sup>3)</sup>

### 가. 개요

#### ○ 법률근거 : 농업재해보상법(1947년부터 시행)

#### ○ 공제혜택

- 소, 말 및 돼지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을 보상
- 공제조합 산하의 진료소에서 축산농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예찰과 진료를 통해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억제 및 환축 치료 제공

#### ○ 공제료

- 국가가 공제료의 일부(소 및 말 50%, 돼지 40%)와 공제조합의 운영비 부담, 전체 경비의 60%를 국가보조하고 농가는 40% 자부담

---

3)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 ○ 가축공제 운영현황(2012년)

&lt; 2 - 16 &gt; 가

구분	젓소	비육소	종돈	비육돈
사육두수	1,423,000	2,642,000	9,685,000	
공제가입두수	1,350,000	1,697,000	201,000	1,703,000
가입율(%)	91.0	68.9	25.6	21.6
두당 공제금액(천엔)	202.9	178.0	50.6	8.6
두당 공제료(엔)	17,017	7,611	2,128	1,015
자부담 공제료(엔)	8,606	4,009	1,308	609

## 나. 가축공제 운영 현황

## □ 사육 가축수

- 일본은 표 6과 같이 젓소는 우리나라보다 약 3.4배가 많은 약 142만두를 사육하고 있지만, 비육소, 돼지, 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숫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음

&lt; 2 - 17 &gt; (2013.2) (2014.6) 가

축종	일본		대한민국	
	가구수	두수	가구수	두수
젓소	19,400	1,423,000	5,768	423,779
비육우	61,300	2,642,000	114,128	2,878,678
돼지	5,570	9,685,000	5,315	9,679,569
닭	2,650	172,238,000	3,434	176,064,220
오리	-	-	549	6,088,517
말		37,000		

## □ 조합 및 국가지원

- 2013년 현재 기초(市,町,村) 농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은 241개이며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이하 재보험)에 의한 3단계 제도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음
- 농업공제는 농작물공제(수도, 보리), 가축공제, 과수공제, 발작물공제, 원예시설공제, 건물공제, 농기구공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lt; 2 - 18 &gt;

(2012 )

사업	총공제금액 (억엔)	공제피급(백만엔)		
		총액	국고부담	농가부담
농작물(수도, 보리)	12,253	34,422	17,779	16,643
가축	6,867	58,331	28,201	30,131
과수	1,038	4,623	2,312	2,312
밭작물	1,887	12,353	6,794	5,559
원예시설	3,851	4,940	2,466	2,474
합계	25,895	114,670	57,551	57,119

- 농업공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는 약 7,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합회에는 약 1,000명, 농림수산성에는 약 100명이 종사하고 있음
  - National Agricultural Insurance Association에 50명,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Foundation에서 10명이 농업공제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음
- 2012년에 수행된 가축공제 실적의 분석에서 보면(표 8), 젖소는 전체사육두수의 91.0%가 가입되었고 비육우는 68.9%, 말은 61.6%, 종돈은 25.6%, 비육돈은 21.6%가 가입되어 젖소의 가입율은 높은 반면 돼지는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았음
  - 일본의 가축공제에 가입한 가축의 평균가격(두당 평균 공제가액)은 우리나라 가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각 축종별 두당 평균 공제피급(보험료)은 젖소는 17,017엔, 비육소는 7,611엔, 종돈은 2,128엔, 비육돈은 1,015엔이었으며, 그 중 농민이 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피급은 젖소는 두당 평균 8,606엔, 비육소는 4,009엔, 종돈은 1,308엔, 비육돈은 609엔이었음

< 2 - 19 > 가 (2012)

구분	젓소	비육소	말	종돈	비육돈
사육두수	1,423,000	2,642,000			9,685,000
공제 가입두수(천두)(태아)	1,350(879)	1,697(612)	23	201	1,703
가입율(%)	91.0	68.9	61.6	25.6	21.6
두당 평균공제가액(천엔)	384.3	421.6	1,779.1	73.5	11.8
공제금액(천엔)	202.9	178.0	894.3	50.6	8.6
부보율(%)	52.8	42.2	50.3	68.8	72.7
두당 평균공제료(엔)	17,017	7,611	-	2,128	1,015
두당 평균농민부담공제료(엔)	8,606	4,009	-	1,308	609
사폐사고 두수	163,551	66,767	853	6,413	196,807
사폐사고 %	12.1	3.9	3.7	3.2	11.6
병상사고 건수	1,357,020	1,064,265	15,271	11,266	-
병상사고 %	100.5	62.7	66.4	5.6	-
사폐사고공제금(두당, 엔)	121,100	110,700	667,300	43,600	7,800
사폐사고총공제금(억엔)	197.9	74.1	5.7	2.8	15.3
병상사고공제금(두당, 엔)	13,100	8,800	14,600	6,900	-
병상사고총공제금(억엔)	177.8	93.7	2.2	8	-
사폐사고의 금액피해율	6.58	2.17	2.59	2.74	11.46
병상사고의 금액피해율	6.00	2.90	2.81	1.72	-

## □ 산업동물 수의사

- 활동 중인 일본 수의사의 총 38,293명 중 11.4%에 해당하는 4,366명이 산업동물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음

< 2 - 20 > (2012.12)

축종별	수	비율(%)	비고
반려동물수의사	14,640	38.2	
공무원	9,237	24.1	
산업계	5,541	14.5	
산업동물수의사	4,366	11.4	
수의업 외 종사	4,509	11.8	
계	38,293	100	

- 산업동물 수의사 중에 1,743명이 NOSAI 가축진료소에서 가축의 진료에 종사하고 있고, 시정촌 진료소의 72명도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고 있음
- 산업동물 임상과 관련하여 1,892명이 개업수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음

&lt; 2 - 21 &gt;

(2012.12)

분야별	수	비율(%)	비고
NOSAI가축진료소	1,743	38.2	
NOSAI사무직원	196	4.3	
농협	180	3.9	
산업계(제약, 사료회사 등)	226	5.0	
시정촌진료소	72	1.6	
개업	1,892	41.5	
경마관계	253	5.5	
계	4,562	100	

### □ 공제조합 가축진료소 운영

○ 2012년 현재 가축진료소는 총 277개(조합 177개, 연합회 97개, 시정촌 3)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NOSAI 가축진료소에는 1,743명의 수의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진료소 1개당 수의사 수는 6.2명임

○ 가축진료소 수의사는 공제가입 가축의 병상사고 진료, 생산 지원(인공수정 등), 손해방지사업, 가축공제 인수검사와 평가, 가축공제제도의 홍보와 가입 추진, 정부의 각종 축산시책에 협력, 기타(연구, 기술연수)에 종사하고 있음

- NOSAI에는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이 있어 사고확인, 진료기록의 심사, 공제금(진료비 등)의 급부, 가축진료소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가축진료소는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 □ 농업공제연합회 운영 실태

○ 이와테 NOSAI 연합회 내에는 7개의 단위 공제조합이 있으며 11개의 가축 진료소에 78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그 중 12명이 여성 수의사임

- 각 진료소에는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3~4명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공제조합은 진료소 직원이 아닌 개업수의사를 지정수의사로 지정하여 공제에 가입한 농민들의 가축을 진료하게 하며 농민들은 선호도에 따라 가축진료소의 수의사나 개업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이와테NOSAI연합회 구역 내에서는 진료소에서 59.1%의 진료를 담당하며



나머지 40.9%는 지정수의사가 진료함

#### □ NOSAI모리오카 (단위 공제조합)

- 2014년 4월 현재 조합원수가 17,718명이고 직원수는 81명(비수의사 62명)이며 그 중 수의사는 19명으로 3개의 가축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음

#### □ 지정수의사

- 지정수의사는 개업수의사 중에 공제조합에 지정수의사를 신청하면 지정되며, 농민의 진료요청에 의하여 병상사고를 치료한 내용을 농림수산성의 가축공제진료접수표에 의거하여 작성한 질병사고진단서를 NOSAI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진료비를 지급받게 됨

### 다. 가축공제 상품 운영

#### □ 공제 목적

- (소)원칙적으로 생후 5개월 째 달 말일을 경과한 것. 조합의 선택에 따라 생후 제5개월 째 달 말일을 경과하지 않은 송아지 및 수정 등을 치른 이후 240일 이상의 태아(송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말) 원칙적으로 출생한 해의 말일을 경과한 것
- (종돈(種豚)) 생후 5개월 째 달 말일을 경과한 것.
- (육돈)생후 제20일(그 때까지 이유를 못했을 경우 이유한 날. 이하 동일)부터 원칙적으로 8개월 째 달 말일까지의 것.

#### □ 공제사고

- 소 (송아지 포함), 말 및 종돈

- 사망(도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1951년 법률 제166호)(이하 '가전법') 제 58조 제1항 (제 4호에 관계된 부분에 한함) 규정에 따른 수당금,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특별 수당금 또는 동법 제 60조 2 제 1항 규정에 따른 보상금 (이하 '수당금'이라 함) 교부 원인이 되는 사망은 제외됩니다. 이하 동일), 폐기 (수당금 교부 원인이 될 만한 것은 제외), 질환 및 상해

○ 소의 태아 및 육돈

- 사망

□ 가입

○ 가축공제에는 소, 말 또는 돼지에 대해 양축(養畜) 업무를 행하는 사람 중, 조합 구역 내에 주소를 지닌 사람이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농작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로, 소 또는 말을 사육한다면, 총회(또는 회의)가 의결한 경우에 가축 공제에 가입해야만 함(의무가입).

□ 인수방식

○ 종류

- 포괄공제'와 '개별공제'의 2종류가 있음

< 2 - 22 > 가

인수방식	대상가축	내용
포괄공제	포괄공제대상가축 (젓소 암컷 등, 비육 소 등, 종웅마(種雄馬) 이외의 말, 종돈 및 육돈의 5종류)	포괄공제 대상가축 종류별로 전 두수 가입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개별 공제 가입이 가능)
개별공제	종웅우(種雄牛) 및 종웅마	가축 1마리 당 가입

- 주) 1. 육돈에 대해서는 사양구분(이유 또는 도입 날짜를 동일하게 하는 군) 별로 인수. 군 단위 인수방식과, 연간 일괄로 인수받는 농가단위 인수방식 (이하 '특정포괄공제'라 함)이 있음
2. 특정 포괄공제에 대해서는 일정 가입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농가만이 가입할 수 있음
3. 육돈 이외의 포괄공제 및 특정포괄공제의 경우, 공제 책임 개시 후 새로 도입된 가축 및 가입 자격 월(일)령에 도달한 가축은 자동적으로 가축공제에 가입하게 됨

○ 사고제외

- 육돈의 군 단위 인수방식 이외의 포괄공제 및 특정포괄공제에 대해서는, 사고 일부를 공제사고에서 제외시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부금이 감소됨

① 포괄공제 대상가축의 종류와 사고 제외 가능한 자의 기준

< 2- 24 >

가

포괄공제 대상 가축 종류	사고 제외 가능한 자의 기준
젖소 암컷 등	공제부금기간 개시 시 사양두수 (태아 및 송아지를 제외)가 6마리 이상이며, 해당 공제부금기간 개시 전 5년에 걸쳐 양축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자
비육 소 등 종용마 이외의 말 종돈	해당 공제부금기간 개시 전 5년에 걸쳐 양축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자
육돈	공제부금기간 개시 시 사양두수가 200마리 이상이며, 해당 공제부금기간 개시 전 5년에 걸쳐 양축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자

② 제외할 수 있는 공제사고와 포괄공제 대상가축 종류

< 2- 25 >

가

제외할 수 있는 공제 사고	포괄공제 대상가축의 종류
가. 화재, 전염병[법정 전염병 및 신고의무(계출) 전염병]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사망, 폐기사고 이외의 사망, 폐기 사고	젖소 암컷 등, 비육 소 등, 종용마 이외의 말 및 종돈
나. 화재, 전염병[법정 전염병 및 신고의무(계출) 전염병]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사망, 폐기사고 이외의 사망, 폐기 사고 및 병상 사고 전부	젖소 암컷 등, 비육 소 등, 종용마 이외의 말 및 종돈
다. 행방불명 및 출생 시 기형, 불구와 관련된 폐기 사고 이외의 폐기사고	비육 소 등
라. 행방불명 및 출생 시 기형, 불구와 관련된 폐기 사고 및 병상 사고 전부	종돈
마. 병상 사고 전부	젖소 암컷 등, 비육 소 등, 종용마 이외의 말 및 종돈
바. 화재, 전염병 (법정 전염병, 돼지 entero Virus성 뇌척수염 및 Nipha virus감염증)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이외의 사망사고	육돈

- 주) 1. 법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제 2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을 가리킨다.  
 2. 신고의무(계출)전염병이란 가전법 제 4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을 가리킨다.

## □ 공제기간

- 공제부금 기간은 공제부금을 지출한 다음 날부터 1년간임(다만 육돈군 단위 인수 방식에 있어서는 생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생후 8개월째 달 말일까지)

## □ 공제가입금액

- 공제금액은 공제가격에 최저비율 (20~40%(육돈은 40~60%)의 범위 내에서 조합이 지정)을 곱한 금액부터, 80%를 곱하여 얻은 금액 범위 중, 농가가 신청한 금액임

$$\text{- 공제가액} \times \text{최저 비율} \leq \text{공제금액} \leq \text{공제 가액} \times 80\%$$

※ 공제가액

- 포괄공제 : 육돈 군단위 포괄 인수방식 이외 - 포괄공제대상 가축의 종류별 가축가액의 합계액  
육돈 군단위 포괄 인수방식 - 사양구분별 육돈가액 합계액
- 개별공제 : 가축 1두별 가액

## □ 공제(보험)료

- 공제(보험)료
  - 공제(보험)료 = 공제가입금액 × 공제(보험)요율
  - 공제(보험)요율은 농림수산장관이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는 3년간. 가축 이상사고는 20년간) 있었던 피해율을 바탕으로 지정하는 공제부금표준율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정하며 또한 농가 피해율에 따라 위험단계별 공제부금률을 설정할 수 있음
  - 공제부금표준율은 일반적으로 3년 마다 개정됨.
- 공제(보험)료에 대한 국고부담
  - 국고는 공제(보험)에 대하여 공제가입금액(농림수산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에 공제(보험)표준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2 (돼지는 2/5)를 부담함

## □ 손해평가

### (1) 손해방지 및 발생 통지

- 농작물 공제와 동일

### (2) 손해 평가

- 손해평가는 농가로부터 손해발생통지를 받은 후 농림수산장관이 지정한 손해인정준칙에 따라 실행됨

- ① (사망사고) 조합 직원이 현지 확인. 다만 화재, 전염병 (법정전염병 및 계출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폐기 사고 이외의 사망, 폐기사고를 제외할 경우는 연합회 수의직원이 함께 현지 확인에 나서게 됨
- ② (폐기사고) 조합 직원이 현지 확인. 이 경우 연합회 수의직원이 함께 현지 확인에 나서게 됨
- ③ (병상사고) 연합회 수의직원에 의한 집합심사

## □ 가축진료소

○ 가입 가축의 진료와 손해방지를 위해 조합 및 연합회는 가축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축진료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① 가입 가축 병상 사고에 대한 진료
- ② 손해 방지
- ③ 인수 검사 및 평가
- ④ 가축 공제 보급 및 가입 촉진
- ⑤ 축산관련 시책에 대한 협력

## □ 공제(보험)금

### (1) 사망, 폐기 사고

- 포괄공제 대상 가축 종류 별로 지정된 연간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과 순 손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이 공제금으로 지불됨

- 공제(보험)금 = [사고가축(태아) 가액-(가축등 잔존물가액 + 폐용가축 평가액

$$+ \text{보상금 등}] \times \frac{\text{공제(보험)가입금액}}{\text{공제(보험)가액}}$$

\* 순손해액 = 사고가축(태아) 가액 - (가축등 잔존물가액 + 폐용가축 평가액 + 보상금 등)

- 한편 화재, 전염병 (법정전염병 및 계출전염병), 자연 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출 한도는 적용되지 않음

## (2) 병상사고

① (포괄공제) 포괄공제 대상 가축 종류 별로 지정된 연관 급부(給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질병 및 손해 진료비 (초진료는 제외)를 급부함

② (개별공제) 가축 1두 당 지정된 연관 급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질병 및 손해 진료비 (초진료는 제외)를 급부함

## □ 조합, 연합회 및 정부 책임부담

○ 공제금액 중 원칙적으로 조합이 20%, 연합회가 30%, 정부가 50%를 합하여 분담<sup>4)</sup>함

- 조합 또는 연합회가 가축진료소를 설치한 지역에서는, 병상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진료기술료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보류되어, 그 이외의 부분을 위 비율에 따라 분배함

- 가축 이상 사고<sup>5)</sup>는 전액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함

- 조합은 그 분담할 책임을 10% 또는 30%로 하는 것이 가능함. 이 경우 정부 책임은 60% 또는 40%가 됨

4) 2단계제 책임분담도 가능함. 특정조합과 정부의 2단계제로 실시할 경우 책임분담은, 가축 이상 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조합, 정부 둘 다 5할씩 보유하고, 가축 이상사고는 전액 정부가 책임을 부담함

5) 가축 이상 사고는 다음과 같음

- (1) 우폐역으로 인해 가전법에 따라 가축 이동 또는 유출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경우에 사망 또는 폐기 사고
- (2) 격심(激甚)재해법 및 천재(天災)용자법 천재로서 지정된 격심재해로 인한 특별피해지역에서의 사망 및 폐기 사고

## □ 가축공제제도의 주요 과제

### ○ 사양 관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금이 지급되고 있음

- 가축 공제는 1929년에 제도화되었다(당시는 가축보험법). 당시는 가축은 주로 사육 소, 말로 가축 노동적 존재였기 때문에 가축공제는 가축이 사망한 경우 즉시 동일한 가축을 도입하여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 재구입 가격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사인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았음
- 1947년에 가축공제제도는 농업재해보상법에 기인한 제도로 되면서 질병치료가 공제 사고에 추가 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
- 한편 가축공제 이외의 농업공제제도로는 이상기상에 따른 사고(풍수해, 간해, 냉해 등) 외에, 불가항력 요소가 강한 사고 (병충해, 조수해, 화재)를 공제 사고라 여기고 있음

#### [과제]

공제 사고 원인을 특정하지 않아, 개개인의 영업체 사양 관리기술이나 경영 방침으로 인해 발생한 인위적 피해까지 공제 사고 대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농가에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양 관리의 수준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이 판단하기 어렵다.

### ○ 대규모 경영 농가의 경우에는 공제금이 보조금화되고 있음. 공제 사고는 개개 가축을 보면 우연히 발생했다 할 수 있으나, 농가에서 대규모 사양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경영 농가에서의 연간 공제 사고 발생률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개개 농가에서 대수(大數)의 법칙이 적용됨).

#### [과제]

대규모 경영 농가의 경우에는 공제 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점 및 공제 부금에 대해서 1/2 국고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통해 해당 농가가 실질적으로 배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 3. 이스라엘 Hachaklait

#### 가. 이스라엘 낙농업

##### □ 이스라엘 낙농업계 현황(2012)

- 젖소-120,000 (940개 농장)
  - 163 대형 (Kibbutz) 농가 ( $\pm 400$  cows)
  - 762 소형 (Family) 농가 ( $\pm 80$  cows)
  - 15 농업 학교 ( $\pm 90$  cows)
- 전체 소의 85% 이상이 가축기록부에 등록되어있음
- 98% Israeli Holstein 종
- 99% 인공수정

< 2 - 25 >

비교 항목	한국	이스라엘
인구	50,000,000	7,700,000
면적(km2)	99,900	20,770
1인당 낙농 소비	67.2	178.3
젖소	207,000	120,000
농장	6,007	940
우유 생산량(Million tons)	2.11	1.38
젖소 두당 생산량(kg)	8,630	11,704
SCC(cells/ml)	234,000	220,000
지방 함유량 %	4.02	3.75
단백질 함유량 %	3.20	3.24

##### □ 이스라엘 낙농업계 주요 특징

- 중앙통제시스템
- 기본적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기반



- Mostly one veterinary service (90% of dairy cows)
- 90% 이상의 소가 기록부에 등록
- 개방적, 혁신적
- 데이터 공개

#### □ 이스라엘 낙농장 현황

- 착유 자동화, 전자 ID 사용, 체계화된 사료관리, 냉방시스템을 운영
- 개방우사 90% 이상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모색
- 각각의 소에 대한 정보를 요구
- 자동 열감지 시스템에 의존
-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록 보관하고, 농장의 데이터를 공유

### 나. Hachaklait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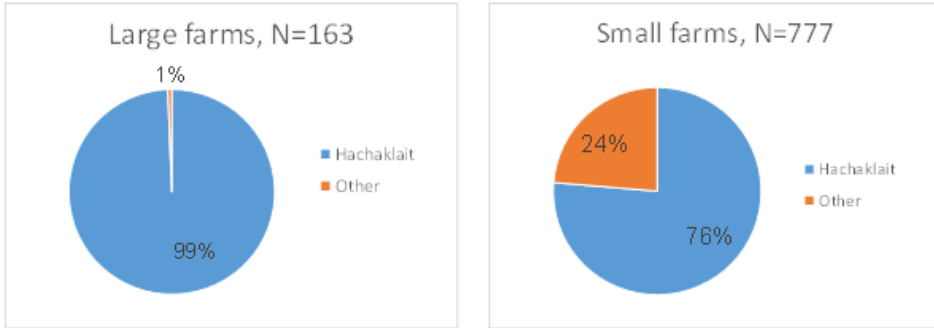
#### □ "Hachaklait" 성격

- 1919년에 공제조합으로 설립
- NPO (비영리단체), NGO (비정부기구)임
- 협동조합(고객=소유주)
- 수의사는 Hachaklait 에 의해 고용되며, 모든 것이 포함된 임상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의약품은 운영비 수준 가격에 배포됨

#### □ 이스라엘 "Hachaklait" 고객(시장점유율)

- 대형 농장 163 중 162개소가 Hachaklait의 고객
- 소형 농장(학교 포함) 777 중 578개소가 Hachaklait의 고객
- 젖소 12만여 마리 중 11만여 마리가 Hachaklait의 고객(이스라엘 젖소의 90%)

< 2 - 1 > Hachaklait



□ "Hachaklait" 문제점, 해결방법 및 성공요인

○ 1980년대

문제점	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통제기관의 부재, "수의사들이 각각 내키는대로 행동"</li> <li>- 관리 통제가 되지 않음</li> <li>- 수의 의약품 창고 부재</li> <li>-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임 수의사 임명 &amp; 작업 프로토콜 도입</li> <li>- 모든 수의사들이 의무적으로 이행</li> <li>- Nothing substantial done</li> <li>- Nothing substantial done</li> </ul>

○ 1990년대

문제점	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사가 고객 유치에 신경 쓸 동기 부족</li> <li>- Waste due to vet warehouse</li> <li>-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대안이 생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구조 변화, 수의사에게 농장들의 가치가 증가</li> <li>- Annual inventory vet warehouse, prize-sanction</li> <li>- 고객의 선택의 폭 증가. 고객이 수의사 선택 가능</li> <li>- 투명성 제고</li> </ul>

○ 성공요인

- 중앙 통제화와 명확한 방향성으로 인한 관리 체계
- (고객 지향적) 농부가 최우선. 수의사들도 고객이지만 차선. 농부가 가장 우선
- (인력에 대한 투자 실행) 최고의 수의사 최고의 사무인력 확보
- 모든 단계에서의 투명성
- 수의사와 축산농가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개발

## 다. Hachaklait 서비스 내용

### □ 서비스 내용

- 정기 및 긴급 농장 방문
- 컨설턴트 방문
- 반기 가축 건강 보고서
- 전염병 조사
- 임상 연구 유닛
- 국가 기관과의 협업
- 해외 코스와 자문

### □ 서비스 패키지

- "올인원" 서비스
- 암소당 1개월간 비용 (전연령)
- 연간 계약, 정기 및 긴급 서비스 포함
- 컨설턴트 및 가축 건강 보고서 포함
- 수의사의 수당은 지역 내 가축 두수에 비례
- 의약품 판매로 인한 추가 수당 없음

### □ 정기 농장방문 내용

- 가축 건강 서비스의 기본
- 이스라엘은 수의사가 1주일에 평균 2-3시간 방문
- 추가 방문은 소 200마리 이상 농장 대상으로 실시(시간은 더 짧음)
- 수의사는 지역별로 스케줄 계획
- 한 명의 수의사는 총 ±3,000마리의 소 담당

#### □ 정기 농장방문시 점검요소

- 산후 5-14일의 모든 소 (BCS)
- 아픈 소
- 저유생산 소 또는 사료섭취량이 낮은 소
- 생식 장애
- 산후 50-90일 내에 발정하지 않은 암소
- BCS: 40-60 days postpartum
- Repeat breeders - > 3 AI
- Problem cows - open period > 150 days post partum
- 임신 진단: 인공수정 후 40-50일
- Repeat pregnancy diagnosis - before drying off (BCS)
- Pregnant cows that were seen on heat
- Over due cows - > farm dependent

#### □ "Hachaklait" 의 서비스 이용 비용(1두 연간)

< 2 - 26> Hachaklait

제공 서비스	이용비용(원)
수의 서비스	71,364
수의 의약품	35,682
수의 백신(예방)	21,409
합계(평균)	128,455

## □ "Hachaklait" 의 서비스의 부산물

### ○ 신뢰성, 일관성을 갖춘 양질의 데이터

- 농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가 쓰여짐
- 그렇기에 농부들은 데이터를 의욕적으로 수집함

### ○ 데이터의 수집

- 정기(Weekly) 농장 방문 :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
- 외부통계자료 : 인공수정자료, 월간 실험 데이터

### ○ 데이터의 분석

- 가축 무리의 구조, 폐사, 생산할당량, 예방접종 등.
- 모니터링 보고서 : 시간 경과에 따른 개별 이벤트의 횟수
- 통계 모델에 의한 결과(원인분석) : 분만, 번식, 우유 생산량, 우유의 질

### ○ 데이터의 활용

- 연간 농가 전체의 가축건강 종합 리뷰 및 원인분석
- 해당 농가의 생산 및 번식 및 건강에 피해를 주는 원인은 무엇인가?
- 농장내에 답이 있음("Every herd has it's own truth")

## □ "Hachaklait" 의 서비스로 인한 농부의 이익

### ○ 수의사간 경쟁이 없음

- 협업, 컨설팅트, "다른 의사의 의견"
- 경험과 데이터의 공유

### ○ 수의사의 개발에 대한 공간제공과 독려

- 전문성 있는 조직

### ○ 농부와 수의사 사이의 신뢰

- 의약품 판매에 대한 판매 수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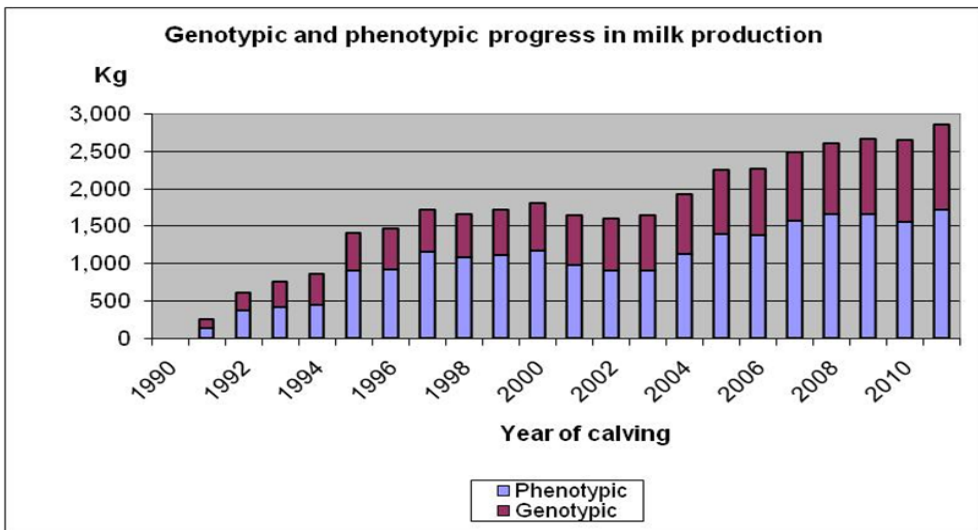
### ○ 심리적 안정감

- 대형 조직 소속의 수의사
- 자체적인 의약품 관리와 수입 능력
  -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의약품 선택
  - 운영비 수준 가격으로 판매
- Hachaklait은 위탁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
  - 임상 연구 의약품/첨가물 효능
  - 그 외 중요 연구 질문

"Hachaklait" 의 서비스의 효과성

- 생산성 증대

< 2 - 2> Hachaklait 가



"Hachaklait" 의 역할

- Management/Husbandry/Herd health)
  - Attending veterinarian
  - Herd Health program

- 영양 관리
  - 임상 영양학, 가족 건강 프로그램
- 예방 접종
  - 주치의, 수의 서비스

□ "Hachaklait" 의 선택 이유

- 장기적 약속, 헌신, 신뢰
- 고정된 가격 - 올인원 서비스
- 정기 방문
- 운영비 수준 가격에 의약품 판매
- 대형 기관의 지원과 후원
- 다른 의사의 의견과 자문
- 업계 대표 기관

## 제2절 시사점

### 1. 국내외 사례 요약

#### 가. 가축재해보험

##### □ 상품운영

##### ○ 소축종에 대한 정부정책 효과 제고 필요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돼지 및 가금은 가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소축종은 가입률이 높지 않음
- 보험을 통한 정부정책의 실시 효과가 소축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보험을 통한 정부정책의 실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축종의 가입을 제고가 필요함

#### 나.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충남)

##### □ 제도운영

##### ○ 소축종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

-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
- 이는 개체관리가 가능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 ○ 표준진료비 수가 설정

- 소 사육농가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 수의사회가 표준진료비 수가를 설정하고, 축산농가의 합의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 표준진료비 수가에 야간 진료 등 반영

- 야간진료 등 응급상황에 대한 진료수가 추가 반영으로 적절한 보수를 고려하고 있음



## □ 운영구조

### ○ 농가의 선택에 의한 진료서비스 제공

- 진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개업수의사를 대상으로 축산농가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수가에 의한 진료비를 받음으로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 진료수의사에 의한 진료비 지원신청

- 진료수의사가 축산농가를 대신하여 진료비 지원신청을 대신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지원신청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 착안사항

### ○ 질병 예방활동 어려움

- 질병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질병발생 이전의 예방활동은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예산소진 시 축산농가에 대한 진료혜택 불가

-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수의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축산농가의 진료서비스 수요가 급감될 수 있음

## 다. 서울우유 유우진료소 운영

## □ 상품운영

### ○ 젖소 축종을 대상으로 한 계약진료 사업 시행

- 서울우유 유우진료소는 젖소축종에 대한 계약진료사업을 시행함
- 이는 개체관리가 가능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 ○ 산과 질병 위주의 계약진료(기본진료)

- 산과 질병위주로 계약진료를 시행(기본진료)하고, 기타 질병에 대하여는 응급진료형태의 서비스(부가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 ○ 질병예방활동 수행

-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검진 및 처치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예방활동의 수행이 가능함

### ○ 단순한 진료비 부과 방식 및 이에 따른 낮은 운영비

- 산과 질병위주의 계약진료를 시행하고, 유대의 일정비율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진료수가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 운영구조

### ○ 계약농가 전체 유우 진료

- 계약 축산 농가의 모든 젖소에 대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함

### ○ 계약진료 대상질병에 대한 증빙서류 불필요

- 계약진료는 수의사와 계약농가간 당연히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로 이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가 불필요

## □ 착안사항

### ○ 계약진료 농가에 의한 수의사 호불호

- 축산농가는 수의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호불호를 나타냄
- 유우진료소는 소속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라. 일본공제조합

## □ 상품운영

### ○ 높은 소축종 가입률

- 가축질병 및 폐사위험을 보장하는 일본 가축공제보험은 소축종에서 높은 가입률을 시현하고 있음
- 특히, 젖소의 가입률은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나타냄으로써 동 공제보험이 가축의 위험관리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 모든 질병에 대한 공제사업

- 모든 질병에 대한 수의서비스 제공

### ○ 정기(또는 응급)방문을 통한 예방활동, 검사 및 치료활동 제공

- 정기 방문을 통한 예방활동, 검사 및 처치활동을 시행

### ○ 행위별 표준수가 적용

- 모든 수의사 활동에 따른 행위별 표준수를 적용됨으로써 수의서비스량에 따른 치료비 부과가 가능

## □ 운영구조

### ○ 전 두수 가입

- 가입목장은 전체 두수를 공제보험에 가입

### ○ 진료소 수의사 또는 개업수의사 선택 진료

- 소속 수의사 또는 개업수의사를 농가가 선택하여 수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의사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저감됨

## □ 착안사항

### ○ 국내 대비 젓소의 사폐율 낮음

- 질병치료보장이 실시되는 일본의 가축공제의 경우 국내 가축재해보험의 사폐사고율보다 낮음

- 젓소의 질병관리에 따른 폐사율 감소로 판단됨

### ○ 행위별 표준수가 적용에 따른 관리비용 소요

- 모든 처치활동에 따른 행위별 표준수를 적용함으로써 진료비 부과 및 청구가 복잡함

- 모든 처치활동에 따른 증빙이 필요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함

### ○ 증빙서류 필요

- 모든 처치활동에 따른 행위별 표준수를 적용함으로써 공제 운영자 입장에서 증빙서류가 필요

## 마. 이스라엘 Hachaklait

### □ 상품운영

#### ○ 젓소 축종에 대한 공제사업

- 젓소 축종에 대한 공제사업을 제공

#### ○ 모든 질병에 대한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제공

- 모든 질병에 대한 수의서비스 제공
- 정기(또는 응급)방문을 통한 예방활동, 검사 및 치료활동,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의약품 실비로 농가 구매(진료서비스만 제공)

### □ 운영구조

#### ○ 전 두수 가입

- 가입목장은 전체 두수를 공제보험에 가입

#### ○ 별도의 공제조합 운영

- 젓소 목장을 위한 공제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대부분 수의사로 구성됨)

#### ○ 소속 수의사 활용 및 응급진료체계 구축

- 공제보험 소속 수의사를 활용하여 진료서비스 제공
- 소속수의사에게 높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주말 및 야간에는 이웃 수의사와 당번제를 운영함으로써 응급진료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

#### ○ 수의사에 대한 교육 및 노하우 공유

- 농가들로부터 특정 수의사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장업무 수행하기 전 충분한 사전교육과 현장업무 수행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의사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됨

### ○ 농장의 데이터를 공유, 농장간 분석 제공

- 농장의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치료의 지름길
-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서 제공하도록 유도(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임을 교육과 설득)

### ○ 선임수의사 임명

- 수의사간 선임수의사를 임명, 업무 조율 등 조정 역할

### □ 착안사항

#### ○ 질병치료보다 예방에 중점

- 적은 수의인력으로 많은 젖소의 질병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의사 입장에서 질병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으로써 진료서비스 투입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질병발생률이 낮아야만 소속 수의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많은 농장에 수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예방이 동 사업의 근간(질병관리가 최우선)

#### ○ 단순한 진료비 청구 시스템 및 관리비 절감

- 농장 규모에 따라 가입 젖소 두당 일정 진료비 청구(월별 두수에 따라 청구)
- 진료비 청구시스템이 단순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관리비용이 최소화됨

#### ○ 입증 및 증빙서류 불필요

- 행위별 진료비 청구가 아니라 두당 진료비를 청구함에 따라 진료증빙서류 불필요
- 축산농가의 요청에 따라 농가가 요구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입증 불필요

#### ○ 계약진료 농가에 의한 수의사 호불호

- 축산농가는 수의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호불호를 나타낼 수 있음

## 2. 시사점

### 가. 상품운영 측면

#### □ 대상축종

- (정부정책 효과 제고) 보험을 통한 정부정책의 실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소축종의 가입율을 가축질병보장을 통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체관리에 따른 효과 제고) 충남진료비 지원사업, 서울우유 유우진료소를 통한 계약진료, 이스라엘 Hachaklait 사례는 개체관리에 따른 사전 예방 및 진료효과가 높은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축공제(질병 및 폐사 보장)가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젓소가 90% 이상 높은 가입률을 나타냄으로써 동 공제보험이 가축의 위험관리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 대상질병

##### ○ 모든 질병에 대한 공제사업

- 소축종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지원사업, 계약진료, 일본 및 이스라엘의 공제제도 모두는 모든 질병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음
- 질병예방 및 관리라는 목적하에서는 당연히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한 질병 공제(보험)사업이 운영되어야 함
- 다만, 폐사의 경우 살처분 등 정부가 보상하는 영역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 진료 범위

##### ○ 우선 질병예방, 후에 적절한 질병치료 시스템이 효과적

- 가축질병은 발생 후에는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질병 발병 이전에 예방에 중점을 둬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 필요

- 가축질병(공제)에 투입한 수의인력이 제한적인 경우 질병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질병발생률이 낮아야만 소속 수의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따라서 예방이 동 사업의 근간(질병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충남진료비 지원사업은 사전예방기능이 부족)

### ○ 수의서비스 제공은 정기방문을 통한 예방활동, 검사 및 치료활동 제공, 응급 진료 및 축산농가에 컨설팅 수행이 가능해야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모든 예방·검진·처치 서비스 제공(All in one)
-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진료비 부과방식(수의서비스 양 평가 및 관리비용의 trade off 관계)

#### ○ 단순한 진료비 청구 시스템 및 관리비 절감

- 이스라엘 사례와 같이 농장 규모에 따라 가입 젖소 두당 일정 진료비 청구 (월별 두수에 따라 청구)를 함으로써 진료비 청구에 따른 수의사 및 농가의 업무를 줄일 수 있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 서울우유 파주유우진료소의 경우에도 산과 질병위주의 계약진료를 시행하고, 유대의 일정비율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소요됨

#### ○ 행위별 표준수가 적용에 따른 관리비용 소요

- 반면, 일본의 사례와 충남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모든 처치활동에 따른 행위별 표준수가 적용함으로써 수의서비스 제공량에 의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모든 처치활동에 따른 증빙이 필요하고, 진료비 부과 및 청구가 복잡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함

## □ 진료비 수가 산정

### ○ 표준진료비 수가 설정

- 충남진료비 지원사업에서와 같이 수의사의 적정한 수의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진료비 수가가 산정되고 축산농가로부터 인정(축산업단체의 합의 형식)될 수 있어야 함

### ○ 표준진료비 수가에 야간 진료 등 반영

- 야간진료 등 응급상황에 의한 왕진 등에 대하여는 진료수가 추가 반영으로 적절한 보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보장수준

### ○ 축산농가가 수용하는 수준까지 치료

-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유우진료소나 이스라엘 사례는 처치비용에 상관없이 모든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일본 공제는 축종별 연간급부 한도액 한도내에서 모든 치료를 제공하나 초진료는 제외하고 보상함
- 두당 진료비 형태를 취하는 경우 진료한도는 일반적으로 없으며, 진료행위별 치료의 경우 진료한도액이 설정됨

### ○ 처치 및 약제에 대한 농가 자기부담금

- 충남진료비 지원사업은 농가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진료비지원사업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농가가 100% 부담해야 함
-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유우진료소는 난산과 유열을 제외한 일체의 번식관계 검사와 처치에 대하여는 기타의 경우에는 농가가 부담함
- 이스라엘의 경우 약제비는 농가가 100%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초진료를 보상하지 않음

## □ 보험료 계산

### ○ 축종별·연령별(성우·육성우) 위험에 따른 보험료 부과

- 가축재해보험 또는 일본 가축공제는 축종을 구분하고 있고, 소의 경우에는 성우와 송아지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경우 성우 및 육성우를 구분하지 않고 두당 공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 과주 유우진료소는 유대의 일정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착유우에만 계약진료비를 부과하는 형식이나, 성우와 육성우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 성우와 육성우를 구분하는 실익은 크지 않음

#### ○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른 보험료 부과

- 이스라엘의 경우 농가 규모에 따라 두당 공제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

#### ○ 축산농가의 경험과 기술에 따른 차이 반영

- 일본의 경우 축산농가의 경험에 따라 질병발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별 손해율에 의한 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반영이 필요

### 나. 운영구조

#### □ 전체(지역) 가입 또는 일부 가입

##### ○ 질병예방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전두수 가입이 일반적

- 계약진료에 의한 가축질병 진료 또는 공제(일본, 이스라엘)의 경우 전두수 가입이 일반적임
- 다만, 이는 언더라이팅 상 반영할 부분이며, 강제적으로 전두수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음

##### ○ 전체가입 또는 일부 가입

- 서로 다른 축산농가가 동일 위험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모든 농가에 가입을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만, 축산 단지 등 동일 위험지역의 경우 방역관리상 전부가입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에는 언더라이팅상 전체 가입을 유도하고, 전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유도

#### □ 질병보장과 폐사보장 동시 운영

##### ○ 가축질병관리에 따른 폐사위험 감소

- 일반적으로 가축에 대한 질병예방, 검진 및 처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응급시 수의사에 의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 질병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며, 이에 따른 폐사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일본 가축공제 가입절소의 폐사율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30% 가축공제 폐사율보다 낮은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료 할인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의 폐사위험 감소에 따라 가축재해보험료 할인이 가능

### 다. 기타

#### □ 소속수의사 활용 또는 (개업)수의사 지정

##### ○ 소속 수의사 활용의 문제

- 이스라엘, 일본, 파주유우진료소 사례와 같이 소속 수의사를 활용하여 진료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축산농가는 수의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호불호를 나타낼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수의사 호불호에 대한 해결은 운영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 ○ 수의사 지정 및 농가의 선택

- 공제 또는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복수의 개업수의사를 지정하고 축산농가가 수의사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수의사에 대한 농가의 호불호 문제는 해결됨
- 다만, 이 경우 수의사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의사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증빙서류 간소화 및 입증책임의 문제

##### ○ 기본진료 또는 'All in 1'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계약진료 대상이거나 'All in 1'의 경우에는 수의사와 계약농가간 당연히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로 이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가 불필요

##### ○ 입증 불필요

- 아울러, 축산농가의 요청에 따라 농가가 요구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입증도 불필요

## □ 교육 및 노하우 공유, 수의사간 상호 지원

### ○ 선임수의사 임명

- 수의사간 업무 조율 등 리드

### ○ 수의사에 대한 교육 및 노하우 공유

- 농가들로부터 특정 수의사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전 충분한 사전교육과 현장업무 수행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의사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됨

### ○ 이웃 수의사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 주말 및 야간에는 이웃 수의사와 당번제를 운영함으로써 응급진료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

## □ 컨설팅 지원

### ○ 농장의 데이터를 공유, 농장간 분석 제공

- 농장의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치료의 지름길
-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서 제공하도록 유도(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임을 교육과 설득)

## 제3장

# 사업추진모델 개발

## 제1절 기본방향

### 1. 대상축종 선정 및 확대

#### 가. 검토방향

- 질병공제(보험)의 도입으로 질병치료비 비중이 높고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가 높은 축종부터 도입 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 국내 축산업의 중요도를 고려, 대상 축종에 대한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가 높은 축종을 우선 도입
- 아울러, 국내 일부 지자체의 진료비 지원사업, 일부 우유협동조합의 우수 진료사업소의 내용, 일본 등 해외에서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효과가 좋은 축종을 우선 고려함

#### 나 대상가능 축종

##### 국내 대상가능 축종 생산액(2014년 기준)

-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국내 연간 가축 총 생산액은 약 18조 2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축종별로 연간 생산액은 돼지, 소, 가금의 순임
- 연간 돼지 및 소(우유생산액 2조 2천여억원 포함)의 생산액은 6조 6천여억원, 가금 4조 9천여억원(계란생산액 1조 8천여억원 포함)으로 나타남

- 기타 축종의 경우에도 산양 1천여억원, 사슴 200여억원, 토끼 100여억원 수준임

< 3 - 1 > 2014

축종		생산액(억원)
돼지	계	66,151
소	한우	40,255
	육우	2,597
	젖소	22,806*
	계	65,658
가금	닭	38,310*
	오리	10,578
	계	48,888
기타	산양	958
	사슴	205
	토끼	95
	계	1,258
가축 합계		181,955

주) 젖소 및 닭의 경우 우유생산액 22,380억원, 계란생산액 18,072억원이 각각 포함됨  
출처 : 통계청

#### □ 국내 축종별 방역치료비 개산(2015년)

- 돼지의 방역치료비는 2015년 사육비의 3.0% 수준으로 돼지 1두당 9,231원으로 1만원 이내이며,
  - 젖소의 방역치료비는 사육비의 2.1%로 1두당은 149,993원 수준임. 송아지를 포함한 번식우는 사육비 대비 1.4%으로 3~4만원 수준이고, 육우 및 한우 비육우는 3만원 수준임
  - 산란계의 방역치료비는 사육비의 1.3%로 1수당 39원 수준이며, 육계의 경우 사육비의 2.3%로 1수당 46원 수준임
- 사육비 대비 축종별 방역치료비 비중은 돼지(2.9%), 육계(2.3%), 젖소(2.1%), 번식우(1.3%), 산란계(1.1%), 육우(0.8%), 한우비육우(0.5%) 순임
  - 돼지 및 육계는 생산비 중 방역치료비 비중이 높으나 주로 농장단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 젖소, 번식우, 육우, 한우비육우는 생산비 중 방역치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두당 규모가 크고 개체별로 질병예방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3-2 >

구분		2015년			2011-2015년		
		생산비 (원)	방역 치료비(원)	비율	생산비 (원)	방역 치료비(원)	비율
돼지	비육돈	307,077	9,231	3.0%	323,036	9,354	2.9%
소	젖소	7,248,049	<b>149,993</b>	2.1%	6,973,319	146,128	2.1%
	육우	4,580,671	<b>33,922</b>	0.7%	4,729,589	35,998	0.8%
	한우번식우	2,353,883	<b>32,144</b>	1.4%	2,365,519	29,617	1.3%
	(송아지)	3,236,021	<b>44,688</b>	1.4%	3,236,661	41,051	1.3%
	한우비육우	6,867,510	<b>32,355</b>	0.5%	6,763,855	31,414	0.5%
가금	산란계	3,045	39	1.3%	3,293	37	1.1%
	육계	1,843	45	2.5%	1,958	46	2.3%

출처 : 축산물생산비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 통계청

- 한편, 축종별 사육두수(돼지 및 닭은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총방역비 규모를 계산하는 경우 돼지 소는 1,516억원, 돼지(도축기준) 1,468억원, 닭(도축기준) 437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 3-3 >

		사육(도축*)두수	방역치료비(원)	방역치료비(억원)
소	젖소	411,342	149,993	617
	육우	115,246	33,922	39
	한우	2,676,425	32,144(한우번식우)	860
	계	3,203,013		1,516
돼지		15,906,502*	9,231(비육돈)	1,468
닭		966,964,527*	45(육계)	437
합계				3,422

주) 돼지 및 닭은 도축두수 기준

- 돼지와 소는 생산액규모, 방역치료비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닭은 상대적으로 생산액 규모 및 방역치료비 규모가 작은 편임.

## 다. 국내외 사례

### □ 일본 사례

- 질병치료비 보장이 도입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짓소의 가입율은 91.0%, 비육소는 68.9%, 비육돈은 21.6% 수준임
- 이는 짓소의 병상사고율이 가축공제 가입금액의 6.0%로 타 축종에 비하여 높아 질병치료의 효과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3-4> 가 (2012)

구분	짓소	비육소	종돈	비육돈
사육두수	1,423,000	2,642,000	9,685,000	
가입율(%)	91.0	68.9	25.6	21.6
(사폐, 병상사고) 금액피해율	(6.58, 6.00)	(2.17, 2.90)	(2.74, 1.72)	(11.46, -)

주) 금액피해율은 공제가입금액대비 피해액의 비율임

### □ 국내 운영 사례

#### ○ 진료비 지원사업 및 계약진료

- 국내의 일부 지자체의 진료비 지원사업은 소에 대한 질병치료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파주 유우진료소 등은 소에 대한 계약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임. 이는 주로 개체치료가 가능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축종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아울러, 돼지 및 가금에 대하여는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등도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 가축재해보험 가입율

- 국내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사폐사고가 높은 돼지, 가금의 경우 높은 가입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사폐율이 낮은 소의 경우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lt; 3-5 &gt; ' 15 가 가

(단위 : 호, 천두, %, 백만원)

축종	사육두수	농가수	가입두수	가입률
소	3,195	4,169	219	6.8
돼지	10,142	3,845	8,769	86.5
가금	226,680	3,629	210,940	93.1
말	26	567	0.9	3.5
기타	2,364	72	11	0.5
계	242,407	12,282	219,940	90.7

자료 :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회의 자료, 농식품부

**라. 이해관계자 의견(설문조사 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 ○ 축산농가(단체)

- 개체단위의 질병관리가 가능한 젃소 등 소 축종에 우선 도입. 다만, 타 축종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 &lt; 3-6 &gt;

내용	한우 협회	낙농 협회	한돈 협회	양계 협회
축종의 점진적 확대 필요	●			
개체단위 관리가능 축종부터 우선 도입 가능			●	
가축공제제도 내에 가금분야를 포함시키기를 바람				●

- 양돈의 경우 난산 등 농가 처치가 대부분으로 수의사에 의한 처치는 많지 않음

## ○ 수의사

- 대동물 수의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젃소·한육우, 돼지, 가금 순서로 도입하는 의견이 대다수임

## &lt; 3-7 &gt;

( )

내용(도입순서)	응답수	응답률
1. 젃소, (한)육우	12	92%
2. 돼지	12	100%
3. 가금(육계, 산란계)	12	92%



## 마. 대상축종 선정 및 확대

### □ 우선도입 선정

- 국내의 일부 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협동조합 단위에서 질병치료에 대한 계약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질병치료비 보장이 이미 도입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젓소 및 육우에서 가입률이 높으나, 돼지 및 가금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축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동물의 경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나, 소동물의 경우 축사단위 관리가 일반적이므로 수의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체관리 축종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폐사를 보장하는 국내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돼지 및 가금의 경우 매우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입률이 저조한 소 축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균형화될 것으로 판단됨

### □ 단계적 확대

#### ○ 돼지, 가금은 소 축종의 도입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 돼지, 가금류는 개체별 질병관리는 아니나, 축사단위의 질병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하고, 일부 정부가 질병컨설팅 지원사업<sup>6)</sup>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소 축종의 도입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란계/종계의 경우 축산 농가와 지정수의사와 협업, 약품공급을 전제로 컨설팅을 하는 사례가 있고, 육계의 경우 연간 6회전 내외로 계열화사업이 운영(위탁사업 사육비 지급)되고 있으며, 지정수의사가 농장관리(예찰활동 위주, 진료활동 없음, 영양제, 면역증강제 중심 처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6) 2014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양돈 농가(360농가=40개\*9시도)에 대한 질병컨설팅이 국가(50%)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양돈과 양계분야에서도 동 질병치료공제(보험)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2. 상품운영

### 가. 대상질병

#### □ 검토 방향

- 질병공제(보험)의 대상질병은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법정전염병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 다만, 장기적으로 포함여부는 고려할 필요는 있음

#### □ 검토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전염병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함

구분	< 3-9>가 (가 2 ) 종류
제1종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게곡열, 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종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3종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저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표시
-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 따라서 법정전염병에 대한 처치는 동 공제(보험)에서는 제외할 수 밖에 없음

< 3-9> 가 (가 15 )

<b>제15조(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3-10> 가 (가 19 )

구분	종류
제1종	<b>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b>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종 가축전염병) 오염우려물품을 격리·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li> <li>2. (제1종 가축전염병)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li> <li>3. (제1종 가축전염병)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li> <li>4.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li> </ol> <p>② (제1종 가축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음</p> <p>③ (제1종 가축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음</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p>
제2종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제3종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 3 - 11 > 가

구분	종 류
제48조 (보상 금등)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li> <li>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li> <li>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li> <li>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li> <li>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li> </ol> <p>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 □ 이해관계자의 의견

### ○ 축산농가(단체)

-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전체적인 보상제도가 필요함을 제시. 다만, 정부의 지원과 공제(보험)제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성을 제시

< 3 - 12 >

구분	내용	한우 협회	낙농 협회	한돈 협회	양계 협회
질병의 범위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공제제도에 포함	●			
	법정전염병 및 일반질병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제도가 필요			●	
	서코바이러스 감염, PRRS, 오제스키병 등은 국가방역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여 예산 및 방향을 조정할 필요			●	
	소모성질병(예대장균증, 호흡기질병등)이나 난계대질병(아데노바이러스, 뉴모바이러스 등)등 대부분의 질병까지 포함 되어야함				●
	현재1종법정전염병인 AI등 특정질병에 한해 적용할 경우 농가에서 이중부담이 될 수 있어 호응을 얻기 힘들다. 질병의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농가들의 참여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양계의 법정전염병에 대한 보상이 가축공제 제도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				●

- 아울러, 양돈의 경우 주기적인 예방접종은 근로자 또는 외주 백신컨설팅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비 성격(출하시까지 8-10회 접종 실시)으로 인식하고 있음(보장대상에서 제외 의견)

### ○ 수의사

- 일반질병에 대한 가축질병공제(보험)의 적용은 대부분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수의사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질병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함

&lt; 3 - 13 &gt;

( )

대상질병	응답수	응답률
제1종 법정전염병	6	33%
제2종 법정전염병	6	33%
제3종 법정전염병	5	28%
일반질병	16	89%

## □ 도입방향

- 질병공제(보험)의 대상 질병은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법정전염병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질병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예찰 및 예방활동은 전염병 발병 이전에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예방접종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법정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검진 등 정부 정책과 동 질병공제(보험)이 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 등 활동을 공제(보험) 수의사가 수행하는 경우 정부 부담(질병공제(보험)은 부보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나. 진료 범위

### □ 기본 방향

- 대상 질병에 대한 예찰활동, 치료활동, 전체를 진료범위로 설정할 것인지 또는 일부 치료활동을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
  - 질병관리는 예찰활동을 통하여 시작되므로 예찰활동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일부 농가의 선택 가능한 치료활동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설정

### □ 검토 내용

#### ○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기방문 예방관리, 검진 및 처치

- (예방관리) 예방접종은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포함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처리(질병공제(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할인 가능)

- 단기적으로 우사관리, 임상 영양학에 기반한 가축건강 프로그램 적용 등 영양관리는 이스라엘 Hachaklait 사례와 같이 추가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

### ○ 약제비용 포함(수의사 처방에 의한)

- 약제비는 수의사 처방에 의한 비용만을 인정(농가가 자체 판단에 의한 약품 구매는 불인정)하되, 과도한 약품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약제비에 대한 일정비율(예 : 30%)로 자기부담제를 실시

< 3 - 14 > 2016

구분	세부 내역	2016 사업비		
예 방 주 사	공통	구제역(전업농)	38,860,000	
		구제역(영세농)	14,133,743	
	소	탄저·기종저	65,340	
		진염성비기관염	417,380	
		유행열	1,174,600	
		아까바네병	1,441,800	
		설사병	2,909,100	
		부제병	801,000	
	돼지	돼지열병·단독	6,400,512	
		일본뇌염	498,000	
		유행성설사병	1,484,026	
		PCV-2	21,600,000	
	닭	뉴캐슬병(부화장)	6,776,958	
		뉴캐슬병(농가)	3,310,516	
		마이코플라즈마	457,210	
	계		100,330,185	
	검 진	소	젖소결핵(PPD)	278,073
			한·육우 결핵(거래가축)	3,573,460
			브루셀라(MRT)	30,202
브루셀라(RB)			932,776	
돼지		오제스키병	172,490	
닭		추백리(평판)	13,702	

- 7) 돼지의 경우 주기적으로 접종(근로자 또는 백신건설팀(외주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성돈의 경우 8-10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됨(동 예방접종비용은 경상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인식)







< 3 - 17 > ( , )

질병명	백신 종류	분만돈		
		분만		
		1	2	3
FMD	사독			
돼지열병	생독			
일본뇌염	생독			
과보	사독			
전염성 위장염	생·사독			
로타	생·사독			
유행성설사	생독			
대장균성설사	생독			
오제스키	사독			
단독	생독			
위축성비염	사독		○(2차)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흉막폐렴	3종혼합		○(2차)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대장균증, 단독	4종혼합	○(1차)	○(2차)	
유행성폐렴	사독		○(2차)	
글래씨씨병	생독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축산 농가(단체)

- 폐사 뿐만 아니라 질병 보장도 되는 공제(보험) 도입이 필요.
- 예방접종 및 예찰활동이 포함되어야 함

< 3 - 18 >

구분	의견	한우 협회	낙농 협회	한돈 협회	양계 협회
폐사 +질병 치료	가축의 폐사에 적용되는 보험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도 보상되는 가축공제제도를 시급히 도입.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에 의한 폐사와 질병치료가 보상되는 효율적인 가축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	●			
	재해보험의 주계약에 폐사에 대한 보상과 질병치료를 보장하고 농민의 필요에 따라 분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질병에 대한 공제가 포함될 경우, 공제금을			●	

	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신고를 제대로 하게 될 수 있음				
예방 접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공제제도에 포함하여 실시	●			
예찰	대규모목장뿐만아니라,소규모의목장도정기적으로예찰할수있는제도를마련	●			

- 일부 양돈 및 양계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농가(360농가=40개×9시도)에 대한 질병컨설팅 사업을 국가(50%) 및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 ○ 수의사

- 대동물 수의사들은 정기방문을 통한 예찰·진료활동·응급진료, 약제비용, 질병관리 컨설팅이 보장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제시함

< 3 - 19 >

( )

진료활동의 범위	응답수	응답률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기방문 예찰활동 및 백신처방, 응급진료	15	83%
약제비용(수의사 처방에 의한)	16	89%
질병관리컨설팅	16	89%

#### □ 도입방향

##### ○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기방문 예방관리, 검진 및 처치

- 농가가 선택한 수의사가 농장을 정기적으로(사육규모에 따라 차별화 가능) 방문하여 가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농가는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질병에 대하여만 보장을 요구할 수 있음
- (예방관리)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sup>8)</sup> 포함(정부가 지원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처리(질병공제(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할인 가능))

8) 돼지의 경우 주기적으로 접종(근로자 또는 백신컨설팅팀(외주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성돈의 경우 8-10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됨(동 예방접종비용은 경상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인식)

## - 검진(채혈 포함) 및 처치(정기방문)

구분	검진 및 처치(정기방문)
방문 주기	1주일간 2-3시간 방문(사육두수가 많을수록 방문주기 단축)하고, 사전에 방문계획을 통보하여 해당 농가가 정기방문진료 준비
업무	예방접종, 분만 5-14일 암소(BCS조사, Bolus 주입, 아목시실린 주입, 케토시스 검사), 아픈 소의 치료와 검사, 저유생산 소 또는 사료 섭취량이 낮은 소, 번식장애 소 검사와 치료, 분만 40-60일에 BCS조사, 분만 50-90일에 발정을 보이지 않는 소 검사와 치료, 저수태우 3번의 인공수정, 공태기간 150일 이상의 암소 검사와 치료, 임신진단(수정 후 40-50일), 재임신진단(건유 전 BCS조사), 발정증상을 보이는 임신우, 목표치 미달 소 검사와 치료, 전염병과 생산성질병 예방, 송아지 우사 확인, 유방 검사와 건강관리

- (응급방문 및 처치) 365일 응급대기 운영(타 수의사와 연계, 비상연락망 운영)

### ○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용 지급

- 공제(보험)사의 입장에서 수의사처방에 의하지 않은 임의 투약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제비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함

### ○ 질병관리 컨설팅(향후)

- 컨설팅 : 농가 대면상담 · 전문가협의
- 신뢰성 및 일관성을 가진 양질의 자료를 집적(동 자료가 농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농가가 인식)
  - 정기방문을 통한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
  - 인공수정자료 등 실험데이터 확보(기관 연계)
- 자료에 의한 우군관리 및 분석
  - 농가의 생산, 번식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파악, 농가에게 제공(연례 가축건강 보고서)
  - 가축 무리의 구조, 폐사, 생산할당량, 예방접종 등 분석
  - 모니터링 보고서(시간 경과에 따른 개별 이벤트의 횡수)
  - 통계 모델에 의한 결과(원인분석) : 분만, 번식, 우유 생산량, 우유의 질

## ○ 부가 기능(향후)

- 모든 연령의 폐사 후 부검, 실험실검사의 활용, 치료와 질병의 공제(보험) 사고 보고 등

## 다. 진료비 부과 방식

### □ 기본방향

- 동 공제(보험)의 예방 및 진료비용의 최소화, 공제(보험)운영 사업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절한 진료비 부과방식을 고려
  - 예방 및 진료행위에 따른 비용이 단순한 경우 수의사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 복잡한 경우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증빙서류, 행정처리 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제(보험)가입자 및 정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의사의 서비스량에 따른 보상을 왜곡시키지 않은 최소한의 범위로 예방 및 진료행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함

### □ 검토 내용

#### ○ 국내외 사례

- 이스라엘 및 파주 유우진료소는 사육두수 또는 원유생산량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각출하여 수의사의 보수로 지급
  - 이는 수의사의 서비스가 정형화되어 있고, 1인의 수의사가 수행하는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구조임
- 일본은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 기타 행위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농립수산대신이 정한 점수를 계산하고, 1점 수당 10엔을 부과(무상진료의 개념이 없음)

< 3 - 20 >                      가    9)

구분	진료 항목(107항목)	배점
제1진찰료	재진, 왕진, 체재진, 입회진	7-889
제2약치료	약치, 진료서, 검안서, 지도서	5-100
제3문서료	진료서, 검안서, 지도서	5-100
제4검사료	채혈,	6-849
제5주사료	피하주사, 근육내주사, 정맥내주사, 점적주사, 관 절공내주사, 수하공주사, 척추주사, 요추주사 등	5-329
제6처치료	투약, 세정, 등	5-759
제7지도료	지도	4-9657
제8수술료	안과수술, 정치, 발치, 기관절개 등	41-9657
제9입원료	입원	19-253

○ 고려사항

- 신규로 도입될 질병공제(보험)의 경우 수의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정확히 계산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응한 수의서비스 공급량도 불확실한 상황임
- 따라서 도입초기 동 공제(보험)의 수의서비스 수요량에 따른 수의공급량에 기초하여 수의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동 공제(보험) 도입에 따라 수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되는 경우 진료비용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축산농가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수의사 진료에 대한 수요가 축산농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축산농가별 진료수요가 적절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수의사

- 대동물 수의사는 진료비 부과방식에 대하여 일본이나 충남사례와 같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9) 세부 내용은 별첨 1 참조

&lt; 3-21 &gt;

( )

진료비 부과방식	응답수	응답률
행위별 수가를 적용(일본, 충남사례)	13	72%
기본진료비와 추가진료비 적용(서울우유사례)	5	28%
두당 관리비 적용(이스라엘 사례)	0	0%

## □ 도입방향

### ○ 진료비를 부과하는 방식

- 진료비를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예방 및 진료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 기본진료비와 추가진료비로 구성하는 방안, 진료행위별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는 방안(두당 진료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도입단계별 진료비 부과 방식

- (초기) 공제(보험)가입 대상목장과 대상 두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가의 수의사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의사의 진료서비스 공급에 따른 적정보수 지급과 축산농가의 진료서비스 수요량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예방 및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적용하고,
- (정착기) 경험이 쌓이고 안정화되는 경우 진료비 구조의 단순화를 고려하는 방향을 설정함

&lt; 3-22 &gt;

적용단계	진료비 적용	고려사항
도입단계	대안 1 진료행위별 구분	수의서비스 공급과 수요 불일치(적정 예측 곤란) 수의서비스 수요량에 따라 진료비를 부과 도입 초기 수의서비스 수요량 측정이 용이하지 않음
	대안 2 기본 및 진료행위별 구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젖소의 경우 산과질병)을 기본진료로 구성하고, 기타 질병은 진료행위별로 구분하여 진료비 적용
성숙단계	진료행위별 미구분	동일지역(시군구) 내 수의서비스 수요 예측 가능 예측된 수요에 대한 수의서비스의 공급을 적절하게 매칭 가장 단순한 형태인 두당 수의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가능





## □ 도입방향

- 도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표준진료수가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야간 또는 주말의 응급 진료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고려함

## 마. 보장수준 및 보험료 지원 차등화

### □ 검토방향

- 보장수준이 높을 수록 보험사고 발생시 축산농가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나,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공제(보험)료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필요
  - 아울러, 공제(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장수준에 따라 재정투입이 달라질 수 있으며
- 공제(보험)을 제공하는 공제(보험)사 입장에서도 가입자의 도덕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이 자기부담율을 운용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함

### □ 검토내용

- 기본 보장수준을 설정
  - 최초 정부의 보험료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율의 자기부담비율을 설정 (예 : 30%)
- 축산농가의 성과에 따라 보장수준 변경
  - 축산농가의 예방 및 질병치료 수요가 많은 축산농가는 자기부담비율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자기부담비율을 낮추어 적용

#### < 3 - 25 >

(단위 : 천엔)	젖소	비육소	말	종돈	비육돈
평균가액	384.3	421.6	1,779.1	73.5	11.8
평균가입금액	202.9	178.0	894.3	50.6	8.6
부보율(%)	52.8	42.2	50.3	68.8	72.7
평균보험료(엔)	17,017	7,611	-	2,128	1,015

## □ 이해관계자의 의견

### ○ 수의사

- 적절한 질병치료비 한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동물 수의사는 가축가액에 절반 수준이면 충분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3 - 25 >	( )	
위험구분	응답수	응답자 평균
가축가액 관계없이 무제한	18	47%
가축가액 100% 한도로		
가축가액 50% 한도로		
가축가액( )% 한도로		

## □ 도입방향

- 높은 보장수준은 높은 보험료부담으로 연계되므로 적정 보장수준과 적정 보험료부담의 조화
  - 축산농가는 높은 보장수준에 낮은 보험료부담을 요구 가능성
- 일본의 경우 및 수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을 제시하되, 농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수준을 제시
  - 질병치료비에 대하여 연간 두당 최대 가능금액을 최대한도로 보장금액을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
- 아울러 축산농가의 성과에 따라 높은 보장 수준을 제공 고려

### 바. 보험료계산1(위험구분)

## □ 검토방향

- 공제(보험)료 부담은 공제(보험)가입자의 예방 및 질병진료 구매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기본
  - 따라서 가장 위험이 유사한 위험군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적용할 필요

## □ 검토 내용

- 최근 5년간(2011-2015) 축종별 1두(수)당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두(수)당 방역치료비는 젖소가 가장 높아 146천원이 소요되었고, 송아지, 육우, 한우비육우, 한우번식우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돼지는 9천원, 닭은 육계 46원, 산란계는 37원인 것으로 나타남

< 3 - 27 >

구 분		2015년			2011-2015년		
		생산비	방역 치료비	비율	생산비	방역 치료비	비율
돼지	비육돈	307,077	9,231	3.0%	323,036	9,354	2.9%
소	젖소	7,248,049	<b>149,993</b>	2.1%	6,973,319	146,128	2.1%
	육우	4,580,671	<b>33,922</b>	0.7%	4,729,589	35,998	0.8%
	한우번식우	2,353,883	<b>32,144</b>	1.4%	2,365,519	29,617	1.3%
	(송아지)	3,236,021	<b>44,688</b>	1.4%	3,236,661	41,051	1.3%
	한우비육우	6,867,510	<b>32,355</b>	0.5%	6,763,855	31,414	0.5%
가금	산란계	3,045	39	1.3%	3,293	37	1.1%
	육계	1,843	45	2.5%	1,958	46	2.3%

출처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

- 보험료 부담을 위한 위험구분은 우선 축종별로 구분하고, 동일 축종 내에서도 사육목적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소 축종은 젖소와 송아지, 육우(한육우), 번식우를 구분
  - 돼지는 비육돈과 기타돈, 닭은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

## □ 이해관계자의 의견

### ○ 수의사

- 대동물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위험구분에 대한 설문에서 축종구분, 연령구분, 성별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lt; 3-27&gt;

( )

위험구분	응답수	응답률
축종 구분	14	78%
연령구분(성우, 송아지)	12	67%
성별구분(암소, 수소)	9	50%

### □ 도입방향

- 공제(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위험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그룹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절
  - 다만, 위험을 세분화하는 경우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는 조건에서 세분화가 필요
- \* 보험기술적으로 위험이 다른 경우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도록 보험업법 규정(법 127조)
- 축종별, 성별, 연령별(성우·착유우, 송아지)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도입

&lt; 3-28&gt;

위험구분	
소	젓소(착유우, 육성우)
	한우(성우, 송아지)
	육우(성우, 송아지)
돼지	비육돈, 모돈(기타돈)
가금	육계, 산란계

## 사. 보험료계산2(농가별 차등적용)

### □ 검토방향

- 공제(보험)료 부담은 공제(보험)가입자의 예방 및 질병진료 진료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기본(보험료계산1 과 동일)
  - 따라서 가장 위험이 유사한 위험군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 보험가입자별로 예방 및 질병진료 수요량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

## □ 검토 내용

###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등급 반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가축질병 관리수준 등급을 고려하여 보험료 차별화가 가능함

#### < 3-29 > 가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득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생산농가별 위험도 차이가 발생

- (보험가입실적에 따른 차등화) 공제(보험) 가입농가별로 납입공제(보험)료 대비 가축진료비 크기(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부담을 차등화
- 가축질병은 관리상태에 발생율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므로 가입자별 실태관리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
- 예) 최대  $\pm 25\%$ ,  $\pm 40\%$ ,  $\pm 50\%$ ,  $\pm 100\%$  차별화
- 다만, 관리실태에 따른 공제(보험)료 부담의 차이는 자료분석에 따라 결정할 필요
- 양돈 농가의 경우 성적(MSY : 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이 농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통상 MSY는 14-25두(통상 1모돈이 평균 12.2마리를 2회 출산하므로 24두가 기준)
- 아울러, 양돈 농가가 사육에 대한 전산기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사육규모에 따른 차등화) 일반적으로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방역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3-31 > 1 ( )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돼지	1,000두미만	8,787	8,157	6,534	6,491	7,380	7,470
	1,000~1,999두	8,308	8,114	7,575	8,291	8,235	8,105
	2,000~2,999두	8,942	7,391	8,451	8,882	9,011	8,535
	3,000두이상	13,748	10,080	9,179	10,061	9,901	10,594
	평균	10,984	9,006	8,365	9,183	9,231	9,354
젖소	40두미만	139,895	132,548	144,692	151,173	142,793	142,220
	40~59두	128,061	129,822	147,463	149,883	145,542	140,154
	60~79두	182,040	137,773	154,493	154,099	156,628	157,007
	80두이상	129,253	143,030	151,278	149,877	149,488	144,585
	평균	140,581	138,375	150,874	150,819	149,993	146,128
육우	20두미만	51,222	42,025	32,843	35,326	34,915	39,266
	20~49두	39,637	25,564	27,380	34,094	37,064	32,748
	50~99두	38,991	37,535	26,992	28,864	35,960	33,668
	100두이상	33,273	45,352	31,270	36,986	31,745	35,725
	평균	40,859	39,944	30,208	35,059	33,922	35,998
번식우	10두미만	32,471	32,938	30,718	32,585	41,406	34,024
	10~29두	26,522	25,895	26,669	33,584	32,410	29,016
	30~49두	30,537	24,585	23,676	25,252	24,422	25,694
	50두이상	31,152	28,890	29,591	29,008	32,823	30,293
	평균	30,149	28,027	28,287	29,477	32,144	29,617
송아지	10두미만	45,941	45,419	40,800	42,948	55,766	46,175
	10~29두	36,704	33,916	38,511	46,342	45,874	40,269
	30~49두	43,444	34,346	33,775	35,951	34,884	36,480
	50두이상	42,395	40,237	41,294	39,693	45,037	41,731
	평균	41,597	38,578	39,807	40,585	44,688	41,051
한우비육우	20두미만	36,376	34,857	37,265	43,023	44,063	39,117
	20~49두	32,655	32,669	28,014	33,615	36,754	32,741
	50~99두	27,617	35,073	26,608	23,968	28,476	28,348
	100두이상	33,831	31,693	25,214	26,247	27,828	28,963
	평균	32,916	33,360	28,404	30,037	32,355	31,414
산란계 10수	20,000수미만	388	407	331	406	419	390
	20,000~29,999수	366	386	231	317	375	335
	30,000~39,999수	397	334	308	327	341	341
	40,000수이상	428	388	289	382	391	376
	평균	415	385	290	377	389	371
육계 10수당	30,000수미만	451	388	476	478	508	460
	30,000~39,999수	589	422	531	530	485	511
	40,000~49,999수	535	462	487	483	423	478
	50,000수이상	409	447	436	467	448	441
	평균	458	437	459	477	452	456

- 실제 사육규모별 방역치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사육규모별로 증가하는 경향도 존재함(돼지)
- 따라서 사육규모별 공제(보험)료 부담의 차별화는 보험가입에 따른 경험 실적을 분석한 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축산 농가(단체)

- (사육규모에 의한 차등) 사육규모에 따른 질병관리활동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가입자별 할인할증) 가축질병의 가입실적(손해율=보험금/보험료)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 3-31 >

구분	내 용
한우 협회	- 현재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사육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가축의 관리가 잘 되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적게 수령한 목장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한돈 양계 협회	- 농가별로 성적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성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의사

- 대동물 수의사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보험료 차등화를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손해율에 의한 평가도 다수 있었으며, 보험료 차이는 ±25%가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3-32 > 가 ( )

위험구분	응답수	응답률
질병관리실태 평가	11	61%
손해율 평가	8	44%
보험료 차이(±10%, ±20%, ±30%, ±40%, ±50%, ±100% 등)	25%(평균)	

## □ 도입방향

- 질병관리실태 평가, 손해율 평가 등을 반영하여 축산 농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입
  - 질병관리실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항목 마련이 추후 필요하며,
  - 손해율에 의한 할인할증은 도입 이후 경험통계가 확보되어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도입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적용이 가능함
- 다만, 사육규모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는 방역치료비 통계 등에 비추어 효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도입 이후 관찰을 통하여 고려할 필요
  - 할인할증 규모는 도입 초기 이므로  $\pm 10\%$  이내에서 적용하고 향후 검토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아.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의 폐사위험 절감 반영(재해보험)

## □ 검토방향

- 축산농가에 대한 수의사의 질병예방 및 질병처치 등 질병관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병발생률의 감소 및 질병으로 인한 폐사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가 질병폐사위험을 보장받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폐사보험료의 절감을 반영할 필요

## □ 검토내용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에 따른 폐사보장을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폐사위험이 절감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 할인율은 실증실험의 결과 활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하고, 충분하지 않는 경우 도상연습 및 시범사업의 결과를 활용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수의사

- 질병관리에 따른 가축폐사위험 감소에 대하여 대동물 수의사는 평균 37%의 폐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3 - 33> ( )

위험구분	폐사감소율
질병관리실태 평가가축질병공제(보험) 도입에 따라 수의사에 의한 가축질병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폐사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수의사에 의한 질병관리가 없을 경우와 비교)	37%(평균)

**□ 도입방향**

- 질병관리에 따른 폐사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의 수의사가 예상하는 결과임
  - 따라서 폐사율 감소에 따른 가축재해보험요율 할인을 검토
- 다만, 가축재해보험 운영자(농협손해보험)의 경우 가축질병공제(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음

**3. 운영구조**

**가. 가입방식(전두수 or 일부)**

**□ 검토방향**

- 동 질병공제(보험)이 기본적으로 농가에 대한 수의사의 예방활동 및 정기 방문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전두수가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나,
  - 일부 농가가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 일부만을 가입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 검토 내용

- 동 가축질병공제(보험)은 폐사와는 달리 매년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크므로 충분히 가입할수록 축산 농가가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
  - 대상 축산농가의 대상축종 전두수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전제로 운영
- 따라서 축산농가의 대상축종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

#### □ 이해관계자의 의견

##### ○ 수의사

- 대동물수의사는 가축질병관리를 위해 전체두수 가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 3 - 34 > 가 ( or ) ( )

위험구분	응답수	응답률
전체 두수 가입	17	94%
일부 개체 선택 가입	1	6%

#### □ 도입방향

- 사적재산에 대한 처분을 강제화할 수 없으므로 해당 농가가 일부만 가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질병공제(보험)을 판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이는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원칙적으로는 전부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특정지역 전부 or 농가선택 가입 여부

#### □ 검토방향

- 동 질병공제(보험)이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수의사의 예방활동을 통하여 질병발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해당 농가의 손실을 경감시키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 특정 지역 전부를 가입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및 조기 탐지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

□ 검토 내용

- 가축질병 확산 우려에 따른 지역별 전부 가입 vs 농가별 선별적 가입 허용 문제
  - 전염병 등 가축질병의 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특정지역 전체가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방역관리상 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근 이웃 축산농가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일 지역 전체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동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단을 검토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축산농가(단체)
  - 방역관리상 동일지역(동일방역권)인 양돈단지는 전부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수의사
  - 대동물수의사는 축산농가별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가축 방역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 전체를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3 - 35>	or 가 가 ( )		
	위험구분	응답수	응답률
	특정지역 전체 가입	8	44%
	축산농가별 선택 가입	10	56%

## □ 도입방향

### ○ 축산농가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역전체 가입 유도 가능여부

- 사적재산에 대한 처분 강제화로 인한 위헌 소지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화보험)은 도입초기 4층이상 건물에 대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계약 의무화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음(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 ○ 방역관리와의 관계

- 방역관리상 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근 이웃 축산농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일 지역 전체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인센티브 제공

- 동일 위험지역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 일정율의 할인을 적용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예 5%)

## 다. 가축재해보험과의 연계 여부(폐사보험금 지급 여부)

## □ 검토 방향

###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의 종합적인 보장 제공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가 폐사보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여부

###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의 폐사보장 보험료 할인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의 폐사위험이 절감됨에 따라 폐사보장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되기 위하여는 폐사보장이 질병치료보장과 동일 상품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

## &lt; 3-36 &gt; 가 ( )

구분		보장내용
기본 담보	직접 손해	- 사망(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 - 긴급도축(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난, 행방불명. 다만 도난손해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관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도난손해)
	비용 손해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청구권,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소도체 결합 보장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이 경락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보상

## □ 검토 내용

- 폐사를 보장하는 가축재해보험과의 연계의 가능하도록 상품을 설계하고, 질병공제와 가축재해보험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 가축공제보험료 할인을 적용
  - 가축재해보험(Section I)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축재해보험에 가축 질병보장(Section II)을 추가하여 가입자가 재해보장과 질병보장을 모두 가입하거나, 각각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토록 설계

##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축산 농가(단체)
  - 폐사 뿐만 아니라 질병 보장도 되는 공제(보험) 도입이 필요.

## &lt; 3 - 37 &gt;

구분	의견	한우 협회	낙농 협회	한돈 협회	양계 협회
폐사 + 질병 치료	가축의 폐사에 적용되는 보험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도 보상되는 가축공제제도를 시급히 도입.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에 의한 폐사와 질병치료가 보상되는 효율적인 가축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	●			
	재해보험의 주계약에 폐사에 대한 보상과 질병치료를 보장하고 농민의 필요에 따라 분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질병에대한공제가포함될경우,공제금을받을수있으므로질병발생신고를제대로하게될수있음			●	

## □ 도입방향

- 가축질병공제(보험) 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간편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음
  - 가축질병공제(보험) 만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품운영상 큰 문제가 아님
-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가축질병공제(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예 : 실증효과분석 참고)

## 라. 보험 또는 공제

## □ 검토 방향

- 가축질병공제(보험)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로 운영되거나, 민영보험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제 또는 보험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 □ 검토 내용

-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동 질병공제(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동 사업을 실행

- 기존의 가축재해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한 보험 (재해보험처럼 농가에서 보험 개별 가입) 또는 기존 조직의 인프라를 이용한 공제 운용이 가능

- 다만, 동 질병공제(보험) 가입자의 폐사 등 추가보장 선택권 확보와 폐사보장 보험료 할인 등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자를 활용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 1차(2015.10.30.) 검토내용(시범사업 시행 주체,사업담당기관)

- 협회가 시행주체가 되기는 어려움(협회 공통)
  - 지자체가 시행주체가 되어야 지자체에서 소규모 농가 공제료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시·군이 시행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시·군)가 시행주체가 되는 것은 오히려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음(가입자 대상 수납·집행 등 관리업무 증가로 담당자 부담 가중)
  - ※ (대안) 인적구성이 갖추어진 일부 지부(한우 완주지부)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회가 나누어서 시행하는 방안이 현실적
- 장기적으로 별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이상적임. 다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은 시간적·경제적 여건상 무리

#### ※ 농협 : 시범사업 시행 주체 희망

-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시행 주체로서 공공성 등에서 사업시행 주체로서의 조건에 부합됨
- 다만, 지역 병원(수의사)의 협조(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 예상됨
  - ※ 일선 동물병원(수의사)는 지역축협 등에서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진료를 불신(진료의 질 저하, 전문성 부족 등)하고 있으며 경쟁관계로 인식, 농협이 사업 수행 시 적극적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 참여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음

#### □ 도입방향

- (기존 보험사) 가축재해보험 판매사인 농협손보는 기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질병보장을 추가하여 보장함으로써 종합적인 손해보장을 제공

-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기타 조직) 가축질병관리에 강점이 있는 수의사회 또는 수의사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 또는 제3의 조직을 구성하여 가축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법은 가능

- 별도의 법률제정 및 별도의 조직 구성에 따른 비용 추가 소요

###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2014〉

#### 1) 공제도입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분리하여 「(가칭)가축질병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해에 의한 가축의 폐사의 보상과 함께 질병에 걸린 가축의 치료를 포함한 공제제도를 운영

- 운영은 독립적인 가칭 ‘가축보험공단’과 같은 조직을 설립, 보험의 인수사업과 폐사나 도태와 관련된 보험료 지급 및 질병치료비 지급을 담당. 공단에는 중앙가축보험공단, 도가축보험공단, 시군가축보험공단을 두어 필요업무를 수행

- ‘가축보험공단’ 소속으로 전국적으로 시군에 가축진료소를 둘 수 있음

\* 가축진료소 수의사는 공제가입 가축의 병상사고 진료, 생산 지원(인공수정 등), 손해방지사업, 가축공제 인수검사와 평가, 가축공제제도의 홍보와 가입 추진, 정부의 각종 가축방역업무를 비롯한 축산시책에 협력, 기타(연구, 기술연수)에 종사

#### ○ (장점)

- 국가의 방역체계와 연계된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운영하고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전문화된 [가축보험공단] 산하의 [가축진료소]를 통하여 국가의 가축방역업무를 보조하고 가축질병 피해예방사업을 실시

- 연간 200여만건의 가축질병의 치료와 보험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가축보험공단]과 같은 가축질병에 대한 전문조직이 필요

#### ○ (단점)

- 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판단

- 가축보험공단과 가축진료소의 설립에 많은 예산이 요구



## ○ (도입예산, 보험료 보조예산 제외)

구분	내용	기간	예산
설립	중앙, 도, 시군공단	1년차	419억
	가축진료소(30개)	1년차	300억
운영	중앙, 도, 시군공단 운영비	매년	314억
	가축진료소 운영비	진료수입으로 충당	0원

## 2) 보험 운영

- 가축재해보험에 질병치료를 보험의 주계약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축재해보험법을 개정, 가축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보험)제도 도입
  - 운영조직으로서 '(가칭)가축보험공단'을 설립(→보험사 운영 대안)하여 운영하며 가축진료를 담당할 진료 조직은 특별법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
- (장점) 법령의 개정만으로 기존의 보상 범위에서 가축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보다는 수월한 접근법으로 판단
  - 보험사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조직 운영 불필요
- (단점) 농업재해보험법에는 가축재해보험과는 다른 농작물재해보험과 임산물재해보험을 포함하고 있어 가축의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에서는 운영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
  - 가축질병공제제도를 국가의 가축방역체계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에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체계 내에서도 연간 200만여 건에 달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가축보험공단과 가축진료소의 설립이 필요
  -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축질병 피해방지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도입예산, 보험료 보조예산 제외)

구분	내용	기간	예산
보험사 사업비	보험사 사업비	영업보험료의 18%	
	가축질병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	

## 마. 수의사 활용(지정수의사, 가족진료소 등)

### □ 검토 방향

- 본 질병공제(보험)의 중심에는 수의사의 진료활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 진료활동에 따른 적절한 보수 제공이 필요
  - 수의사의 예방 및 진료활동에 따른 보수는 예방 및 진료활동량에 따라 그 보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
- 따라서 수의사의 진료활동에 따른 보수가 제공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

### □ 검토 내용

- 축산농가의 수의사 선택권
  - 수의사마다 질병치료에 대한 역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수의사의 선호 문제 및 수의사의 적절한 보수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가족질병공제(보험) 사업자는 가입자가 위치하는 지역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동 공제(보험) 수의사로 위촉하고, 수의사의 정보를 가입자인 축산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축산농가는 제공된 수의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및 질병진료에 대한 수의사를 선택하고 수의사는 이에 따른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호 문제를 해결
- 수의사의 수의서비스 제공금액에 의한 보수 지급
  - 앞에서 검토한 표준진료수가에 따라 수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량에 따라 공제(보험) 사업자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분배문제를 해결
  - 동일 지역 수의사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간 협력이 가능함

###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수의사
  - 대동물수의사는 공제(보험)에서 수의사를 지정하고, 축산농가가 선택하여

-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 제시하였음
- 공제(보험)에서 수의사를 고용(가축진료소 포함)하고 농가가 선택하도록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음

< 3 - 38 > ( )

위험구분	응답수	응답률
공제(보험)에서 수의사 고용(가축진료소), 농가 선택	5	28%
공제(보험)에서 수의사 지정, 축산농가 선택	10	56%
기타	4	22%

#### 도입방향

- 가축진료소는 현재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대안이 아니므로 공제(보험)에서 수의사를 지정하여 축산농가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수의사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 및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4. 기타

### 가. 처치시스템 운영(증빙서류 간소화 및 입증강화)

#### 검토 방향

- 수의서비스 제공에 따른 번잡성이 존재할 경우 축산농가 및 질병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수의사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축질병공제(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질병예찰 및 진료활동에 따른 입증 및 관련서류가 간소화되어 운영될 필요
  - 일선 수의사들의 의견질병관리활동에 따른 서류 및 입증자료들이 처방 시스템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운영의 효율성이 도모될 필요

#### 검토 내용

-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이용함으로써 수의사들의 예찰 및 치료활동의 모니

터링을 통하여 입증 및 증빙서류를 간소화

- 일선 수의사들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련 시스템을 탑재하고, 처방시스템 등을 통하여 집적되게 함으로써 입증 및 증빙서류를 간소화

○ 아울러, 동 처방시스템의 실시간 분석을 통하여 질병현황의 실시간 체계적 파악 및 대응도 가능

-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입증강화를 위해 처방시스템적 운영 등 관련 인프라 마련 및 실행이 필요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수의사

- 처방시스템 활용을 통한 증빙서류 간소화 및 입증강화를 주로 제시하였으며, 동 시스템을 통한 질병현황의 실시간 체계적 파악과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제시함
- 일부 소수의견으로 이미지정보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 3 - 39 >

( )

위험구분	응답수	응답률
처방시스템 활용(증빙서류 및 입증 강화)	12	67%
처방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질병현황의 실시간 체계적 파악 및 대응	4	22%
기타	2	11%

**□ 도입방향**

○ 치료행위별 진료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처방시스템을 통하여 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청구되고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

- 동 진료비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 일선 수의사들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 축산농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어야 하며, 입증이 쉬어야 함

-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련 시스템을 탑재하고, 처방시스템 등을 통하여 집적되게 함으로써 입증 및 증빙서류를 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미지 정보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을 통하여 질병현황의 실시간 체계적 파악 및 대응도 가능
  - 다만,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입증강화를 위해 처방시스템적 운영 등 관련 인프라 마련 및 실행이 필요

## 나. 질병처치 심사평가

### □ 검토 방향

- 현재 국민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처치행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질병공제(보험)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수의사의 예방처치활동에 대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

### □ 검토 내용

- 수의사의 허위진료활동, 과도한 진료활동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정한 수의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수의사의 수의서비스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운영될 필요
- 제공 수의서비스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의사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음
  - 수의서비스 심사에 대한 주체, 내용, 방법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불필요한 불신을 감소시킬 필요

###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수의사
  - 수의사의 가축질병처치와 관련하여 심사평가 필요성이 있음을 대부분의 수의사가 동의함



## 제2절 상품설계

### 1. 기본방향

#### □ 현 가축재해보험에 질병치료비 보장을 부가

- (축산농가 의견 반영) 현재 축산농가는 축산농가가 가지는 종합적인 위험보장을 선호
  - (한우협회) 가축의 폐사에 적용되는 보험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도 보상되는 가축공제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함.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에 의한 폐사와 질병치료가 보상되는 효율적인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
  - (낙농협회) 재해보험의 주계약에 폐사에 대한 보상과 질병치료를 보장하고 농민의 필요에 따라 분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험료부담 경감) 가축폐사와 질병에 대한 예찰 및 치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짐
  - (가축재해보험료 경감) 가축질병치료가 보장되는 축산농가의 폐사가 감소됨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음
- (기본방향) 가입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가축질병보장과 가축재해보험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 2. 상품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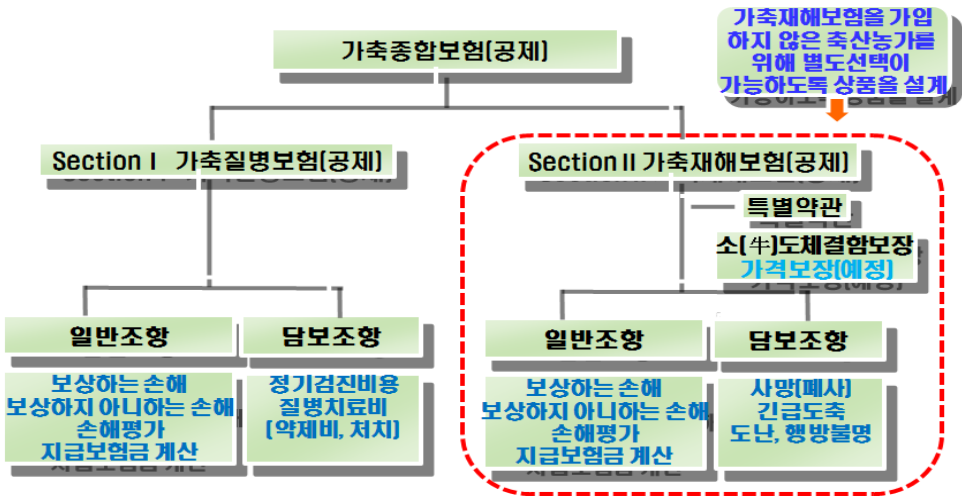
#### 가. 상품구조

##### ① 가축재해보험과의 연계 여부(폐사보험금 지급 여부)

- 가축재해보험보험과의 연계 또는 독립적 질병보험(공제) 운영 여부
  - 가축질병공제(보험)(Section I)에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별도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축재해보장(Section II)을 구성하여 가입자가 질병보장과 재해보장을 모두 가입하거나, 질병보장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

< 3-1>가 ( )



○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보장 제공

- 예방·치료를 통한 질병의 발생 및 확대 방지기능과 폐사에 따른 피해 보상 기능간 조화와 더불어,
- 가축재해·질병보장 외에 가축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 보장하는 상품도 도입 검토(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비육우 및 번식우수입보장 보험 도입 검토(2014, 2015))

**나. 보험목적의 범위(대상축종)**

□ 가입대상 축종

○ (가입대상 축종) 가축재해보험 대상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16종\*)을 대상으로 하되,

- 개체별 질병관리가 가능한 소축종을 우선 도입

\* 소 가축(「축산법」) 20종의 80% 【제외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병공제(보험)에서도 전부가입을 원칙으로 설정함(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

< 3-41 > 가

구분	소			돼지	말	가금	기타가축
	I (송아지)	II (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 ~13세 미만 (젓소는 8세 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정부 지원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정부지원 제한사항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가축보험 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제출(필수)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기준

#### 1. 허가대상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 아래 사육시설 면적 초과 시)

- '15.2.22 이전 : 소 600㎡ 초과, 돼지 1,000㎡ 초과, 닭 1,400㎡ 초과, 오리 1,300㎡ 초과
- '15.2.23~'16.2.22 : 소 300㎡ 초과, 돼지 500㎡ 초과, 닭 950㎡ 초과, 오리 800㎡ 초과
- '16.2.23 이후 : 소·돼지·닭·오리 50㎡ 초과

#### 2. 등록대상 : 11개 축종

- 소·돼지·닭·오리(4개 축종) : 허가대상 사육시설 면적 이하인 경우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7개 축종)

#### 3. 등록제외 대상 : 16개 축종

- 등록대상 가금 중 사육시설면적이 10㎡ 미만은 등록 제외(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조, 지렁이(9개 축종)

- \* 보험목적물 소재지와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상 소재지 및 축사 소재지는 일치해야 함
- \* 축사 임대능기는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첨부시 정부지원 가능

- 단,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한 등록제외대상은 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보험료 정부지원 가능)

○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 '축산 계열화사업자'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임

**1** 같은 법 제30조에 의해 시·도지사의 계열화사업 증명을 받은 자 및 '13.3.23 이 법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  
 \* 부칙 제3조 「가축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참조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

**3** 시·도에서 현황조사 결과 축산계열화 사업자로 보고한 자  
 \* 농식품부에서 매년 말 기준 축산계열화사업자 현황 파악 및 보험사 통보, 시·도는 신규업체 지정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통보  
 \*\* 보험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가입포함)로 확인된 경우 지원된 국비 및 지방비 보험료가 환수됨을 계약자에게 청약시 사전에 통지

**「가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말함
  - "축산계열화사업자"란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적용대상 규모 :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리수가 돼지: 5천마리 이상, 육계: 33만마리 이상, 토종닭: 12만마리 이상, 산란계: 6만마리 이상, 오리: 15만마리 이상, 염소: 1천2백마리 이상인 경우
  - \* 연간계약생산 사육 마리수 : 계약생산 사육 마리수×연간 회전수(돼지: 2.5, 육계: 5.5, 토종닭: 3, 산란계: 1, 오리: 5, 염소: 2)

### 다. 보장범위

#### ○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기방문 예방관리, 검진 및 처치

- (예방관리)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sup>10)</sup> 포함(정부가 지원하는 농가의

10) 돼지의 경우 주기적으로 접종(근로자 또는 백신건설당팀(외주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성돈의 경우 8-10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됨(동 예방접종비용은 경상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인식)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처리(질병공제(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할인 가능))

< 3 - 42> 가 (가 2 )

구분	종류
제1종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리프트게곡열, 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종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3종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저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 검진(채혈 포함) 및 처치(정기방문)

- (응급방문 및 처치) 365일 응급대기 운영(타 수의사와 연계, 비상연락망 운영)

○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용 지급

○ 질병관리 컨설팅

- 컨설팅 : 농가 대면상담 · 전문가협의

○ 기타

- 치료와 질병의 공제(보험)사고 보고 등

## &lt; 3 - 43 &gt;

구분	검진 및 처치(정기방문)
방문 주기	1주일간 2-3시간 방문(사육두수가 많을수록 방문주기 단축)하고, 사전에 방문계획을 통보하여 해당 농가가 정기방문진료 준비
업무	예방접종, 분만 5-14일 암소(BCS조사, Bolus 주입, 아목시실린 주입, 케토시스 검사), 아픈 소의 치료와 검사, 저유생산 소 또는 사료섭취량이 낮은 소, 번식장애 소 검사와 치료, 분만 40-60일에 BCS조사, 분만 50-90일에 발정을 보이지 않는 소 검사와 치료, 저수태우 3번의 인공수정, 공태기간 150일 이상의 암소 검사와 치료, 임신진단(수정 후 40-50일), 재임신진단(건유 전 BCS조사), 발정증상을 보이는 임신우, 목표치 미달 소 검사와 치료, 전염병과 생산성질병 예방, 송아지 우사 확인, 유방 검사와 건강관리

**라. 보장수준**

## ○ 보장한도액

- 가축재해보험 약관의 보험가액 산정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 가축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최대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한 금액

## ○ 보장한도액 산출(Historical Data)

- (자료 속성) 충남아산시 진료자료는 진료비 지원예산이 소진시까지의 자료로 연간자료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실제 치료비보다 과소 평가될 가능성 존재)
- 한우

## &lt; 3 - 44 &gt;

( )

year	2014	2015	2016	합계
개체수	961	261	268	1,490
max	480,000	410,000	500,000	500,000
min	20,000	20,000	20,000	20,000
mean	96,643	90,632	109,515	97,905
stdev	66,525	54,013	76,600	66,704
90% percentile	170,000	150,000	180,000	170,000
95% percentile	230,000	200,000	246,500	230,000
97% percentile	252,000	234,000	379,100	260,000
99% percentile	400,000	304,000	433,300	400,000
99.5% percentile	406,000	317,000	473,250	430,000
99.9% percentile	470,400	386,600	497,330	485,110

- 쪼소

< 3 - 45 > ( )

year	2014	2015	2016	합계
개체수	905	112	247	1,264
max	710,000	250,000	760,000	760,000
min	6,000	30,000	30,000	6,000
mean	99,123	83,036	95,182	96,927
stdev	72,357	35,204	78,579	71,275
90% percentile	200,000	120,000	160,000	180,000
95% percentile	250,000	154,500	247,000	250,000
97% percentile	290,000	173,400	281,000	281,100
99% percentile	350,000	244,500	436,200	367,400
99.5% percentile	400,000	250,000	465,400	413,700
99.9% percentile	646,720	250,000	688,660	691,590

○ 보장한도액 산출(분포 적합)

- (자료 선택) 2015년 자료는 축종분류의 오류가 많아 사용이 어렵고, 2016년 자료는 1년간 통계자료가 아니므로 또한 사용이 곤란하므로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포를 적합
- 적합된 분포는 Weibull 및 Gamma이며, 2014년 자료를 기초로 예측된 것을 감안하여 물가수준을 고려함
- 한우

< 3 - 46 > ( )

percentile	적합 분포		물가 상승률	물가반영	
	Weibull	Gamma		Weibull	Gamma
90.00	182,032	185,561	103.3%	188,105	191,752
95.00	214,024	225,315		221,165	232,832
97.00	235,792	253,746		243,659	262,212
99.00	278,838	313,201		288,141	323,651
99.50	303,959	349,849		314,100	361,521
99.90	357,840	433,193		369,779	447,646
99.99	427,125	549,589		441,376	567,926

- 족소

< 3 - 47 > ( )

percen tile	적합 분포		물가 상승률	물가반영	
	Weibull	Gamma		Weibull	Gamma
90.00	189,647	195,650	103.3%	195,974	202,178
95.00	224,076	239,843		231,552	247,845
97.00	247,595	271,584		255,856	280,645
99.00	294,290	338,232		304,109	349,517
99.50	321,644	379,459		332,375	392,119
99.90	380,542	473,514		393,239	489,312
99.99	456,672	605,376		471,909	625,574

○ 보장한도액(안)

- 보장금액(1두당) :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등

< 3 - 48 >

한우 (송아지 포함)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젓소 (송아지 포함)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70만원

○ 자기부담액

-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비율 설정

- 자기부담비율 : 10%, 20%, 30%

**마. 보험기간 : 1년**

○ 가입 시기 : 연중 가입 가능

## 바. 진료항목 및 수가

### □ 진료항목 설정

#### 1) 행위별 수가제 및 포괄지불제

- 보험제도 운영 시에 진료수가의 적용은 질병별로 포괄수가를 적용하거나 진료행위별 수가를 더하여 적용할 수 있는바, 두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행위별 수가제
  - 어떤 서비스의 수가,약품, 재료 등에 항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지불보상방식임
  - 가장 일반적인 지불방법이자 “시장의 거래관행에 가장 가까운”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사람의 의료서비스는 이 방식을 지불보상의 기본 틀로 하고 있음
  -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도 지불보상의 단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즉, 어떤 행위를 ‘기본행위’라고 분류하고 동일한 수가를 지불하기로 했을 때 이 안에 어떤 행위가 어떤 양만큼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 방식도 단일하지 않아서, 공정수가라 하더라도 단일한 수가만을 정할 수도 있고,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정수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자가 정할 수도 있고, 보험자와 제공자 사이의 협상 결과일 수도 있으며, 또 이 두 과정을 모두 거쳤을 수도 있음
  - 또한 이 수가는 실제 가격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점수로 표현될 수도 있음.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단가를 점수에 곱하여 실제 가격을 계산하며, 실제 가격으로 표시되는 수가는 가격이 변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반면에, 점수제는 점수당 가격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행위별 수가제에서 적정 수가 수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흔히 ‘원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으나, 원가 산정의 기술적 어려움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가 원가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음.



- 제공자는 서비스의 양을 최대한 늘리고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한 반면에 일정한 시간 안에 행위의 수를 최대한 늘리려면, 단위 시간은 가능한 한 줄이고 질적 수준이 낮은 인력에게 업무를 위임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음. 이 경우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관리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비용지불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임. 제공자 입장에서는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지불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감독과 모니터 과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임

### ○ 포괄지불제

- 포괄지불제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서비스 항목 하나 하나가 아니라, 환례(case)에 기초를 두고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례당 정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진단과 관계없이 환례당 정액을 지불하는 방식과 진단명에 따라 서로 다른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나뉨
- 시간이나 방문, 환례당 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함. 환자의 종류나 투입된 자원의 다과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진료비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임
- 그러나 진단명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같은 수가를 받는 환례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잘 알려진 분류체계가 치료목적의 입원환자에 대해 사용하는 '진단명 기준 환자군'(Diagnosis-related groups, DRGs) 체계임.
- 포괄지불제의 수가수준은 미리 정해진 집단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비용이 수가보다 더 많이 든다면 공급자는 손실을 입는 것이고, 더 적게 든다면 이익을 보게 될 것임
- 포괄지불제는 운영이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자별로 증상의 중증도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론적으로는 포괄지불제는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인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센티브를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투입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
- 그러나 환례당 투입비용(사용하는 시간과 재료, 인력 등)을 줄이려는 동기가 발생하므로 질이 낮아질 수 있음. 질 관리나 감시 등으로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음. 행위별 수가제에서의 심사나 청구 등이 없어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질 관리 등으로 인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여 행정비용의 감소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임

## 2) 운영사례

### ○ 대한수의사회

< 3 - 49 > 가 ( )

진단(처치)명	진료수가	진단(처치)명	진료수가
1위식체	60,000	자궁세척	20,000
1위절개술(성우)	300,000	자궁염전교정	150,000
1위절개술(송아지)	200,000	자궁탈	150,000
1위천공술	150,000	자궁탈수술	150,000
4위식체(내과치료)	80,000	제각	100,000
4위전위(대망막고정술)	200,000	제왕절개	400,000
4위전위(맹봉합술)	100,000	직장탈	100,000
고창증내과치료(성우)	60,000	질탈	100,000
고창증내과치료(송아지)	50,000	질파열	100,000
골절(송아지)	100,000	허니아수술	150,000
관절굴건증	100,000	회음열상봉합	100,000
난산처치	100,000	회음절개술	130,000
요도형성술	200,000	후산정체	40,000
유두외상	120,000		

### ○ 충남수의사회

< 3 - 50 > 가 ( )

진단(처치)명	진료수가	진단(처치)명	진료수가
1위식체	60,000	알러지	55,000
4위전위(대망막고정술)	250,000	야간진료	20,000
간기능저하	70,000	열사병	55,000
고창증내과치료(송아지)	60,000	오연성폐렴	60,000
골절(척고제거)	50,000	위궤양	80,000
골절(송아지)	100,000	유도분만	40,000
과산증	80,000	유두외상	120,000
관절굴건증	100,000	유방염	80,000
관절염	55,000	음낭염	50,000

진단(처치)명	진료수가	진단(처치)명	진료수가
교상치료	120,000	자궁세척	20,000
근이영양증	60,000	자궁탈	150,000
기관지염	50,000	자궁탈수술	200,000
기립불능	60,000	잠복고환수술	100,000
난산처치	100,000	장고창증	60,000
난소낭종	60,000	장출혈	70,000
대사성산증	60,000	저칼슘혈증	70,000
맹장염전	300,000	전두동염	100,000
무발정우	50,000	전해질검사	30,000
발굽치료(기본)	50,000	절대술	200,000
방선균증	80,000	제왕절개	400,000
버짐(윤선)	40,000	직장탈	90,000
부제병	70,000	질탈	80,000
부제병(1신발추가)	90,000	케토시스	70,000
비출혈	55,000	케톤체검사	20,000
빈혈	80,000	티저블수술	350,000
뿔 골절	70,000	패혈증	90,000
산과호르몬처치	60,000	폐렴	60,000
설사(장염)	50,000	피부염	50,000
소화불량	50,000	허니아수술	150,000
수송열	60,000	회음열상봉합	100,000
수액	60,000	후산정체	70,000

○ 전국 20개 동물병원

- 동물병원 시도별 분포

< 3 - 51 > 가

시도	동물병원수	시도	동물병원수
강원	3	전남	3
경기	6	전북	1
경남	2	충북	4
경북	1	합계	20

## - 동물병원 진단(처치별) 진료수가(단위 : 천원)

진단(처치)명	가				
	최대	최소	평균	최빈값	최빈값 (충남)
1위식체	67	80	50	60	60
1위절개술(성우)	322	400	250	300	300
1위절개술(송아지)	203	250	150	200	200
1위천공술	148	200	80	150	150
4위식체(내과치료)	78	100	50	80	80
4위전위(대망막고정술)	265	300	200	250	250
4위전위(맹봉합술)	144	150	100	150	150
간기능저하	76	100	60	80	80
고창증내과치료(성우)	74	120	60	70	70
고창증내과치료(송아지)	64	100	50	60	60
골절(석고제거)	53	150	30	50	50
골절(송아지)	103	150	10	100	100
과산증	83	100	70	80	80
관절굴건증	97	150	60	100	100
관절염	67	100	50	60	60
교상치료	108	150	10	100	100
근이영양증	61	80	50	60	60
기관지염	65	100	50	60	60
기립불능	91	120	60	100	100
난산처치	124	200	100	100	100
난소낭종	56	80	30	50	50
대사성산증	81	120	60	80	80
맹장염전	284	300	250	300	300
무발정우	52	80	30	50	50
발굽치료(기본)	61	100	50	50	50
방선균증	79	100	50	80	80
버짐(윤선)	51	70	30	50	50
부제병	78	100	70	70	70
부제병(1신발추가)	88	100	70	100	90
비출혈	63	100	50	60	60
빈혈	81	100	60	80	80
빨 골절	109	800	50	70	70
산과호르몬처치	56	80	30	60	60
설사(장염)	68	120	50	60	50
소화불량	65	100	50	60	60
수송열	66	100	50	60	60

진단(처치)명	최대	최소	평균	최빈값	최빈값 (충남)
수액	71	80	50	80	80
알러지	63	100	50	60	60
야간진료	30	50	20	<b>20</b>	<b>20</b>
열사병	77	100	60	70	70
오연성폐렴	67	100	50	60	60
요도형성술	214	300	150	200	200
위궤양	81	100	70	80	80
유도분만	54	80	40	50	50
유두외상	124	200	100	100	100
유방부종	61	80	50	60	60
유방염	74	100	50	80	80
음낭염	58	80	50	50	50
자궁세척	38	60	20	50	50
자궁염전교정	165	200	100	150	150
자궁탈	163	300	100	150	150
자궁탈수술	197	300	150	200	200
잠복고환수술	123	250	30	100	100
장고창증	70	100	50	60	60
장출혈	73	100	60	<b>60</b>	<b>70</b>
저칼슘혈증	81	120	60	70	70
전두동염	89	100	60	100	100
전해질검사	31	40	30	<b>30</b>	<b>30</b>
절태술	200	200	200	200	200
제각	49	80	30	50	50
제왕절개	392	500	350	400	400
직장탈	98	150	70	100	100
질탈	100	150	80	100	100
질과열	101	150	70	100	100
케토시스	82	100	70	<b>80</b>	<b>70</b>
케톤체검사	19	20	10	<b>20</b>	<b>20</b>
티저블수술	309	400	250	<b>300</b>	<b>350</b>
패혈증	94	130	60	100	100
폐렴	72	100	60	70	70
피부염	53	70	50	50	50
허니아수술	161	250	100	150	150
회음열상봉합	106	200	50	100	100
회음절개술	118	150	100	100	100
후산정체	68	100	50	70	70

### 3) 진료수가(안)

- 조사대상이 된 74개 질병은 현 시점에서 수의사가 진단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병들이며, 보험제도의 운영 시 발생이 많아지는 질병이 있을 경우는 매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74개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은 비슷한 진단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질병에 준하여 진료수가를 임시적으로 적용한 후 보험제도운영위원회(가칭)와 같은 조직에서 추후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진료수가도 보험제도 운영 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에 보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진료(진단처치) 수가
  - 전국 20개 동물병원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표준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표준수가의 대푯값은 평균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장 많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최빈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수의사회 의견임
  - 다만, 충남 동물병원의 수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남수의사의 표준수가를 반영한 최빈값을 진료수가 표준안으로 선정
- 예찰 방문수가
  - 통상 예찰방문과 진료활동은 연계되나, 진료항목별로 최소 5만원 이상(전해질·체스톤검사 및 야간진료 추가비용 제외)이므로 예찰방문시 처치행위가 없거나 진료수가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적용함
- 야간·주말 수가
  - 야간(일몰 후~일출전까지) 및 주말(토·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상기 진료비에 10,000원 추가함(과주 사례 참고)
- 질병관리 컨설팅
  - 통상 진료활동을 수행하면서 질병관리 컨설팅이 연계되므로 질병관리 컨설팅에 대한 수가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3) 약제비

#### ○ 수의사 처방 약제비

-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 구입비용을 지급

### 사. 보험금 지급

- 보장금액을 한도로 보장내용에 기술된 예방관리, 검진 및 처치, 응급방문 및 처치,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자기부담금 제외), 질병관리 컨설팅, 기타 사항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 3. 위험률 산출

### 가. 산출방법

#### 위험구분:

#### ○ 축종별 방역치료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

- 성우와 송아지를 구분하고, 성우의 경우 젖소·한우·육우를 구분하는 것으로 검토

#### 연간 진료비(젖소, 한우, 육우, 송아지(젖), 송아지(한)) 추정

#### ○ 연간 치료비

- (젖소)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유우진료소의 연간 두당 진료비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
- (약품비) 파주유우진료소의 연간진료비에는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체 진료비 대비 약품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기타 축종) 젖소 이외의 축종에 대한 연간진료비는 통계청 축종별 방역관리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 보험가입금액(k)별 연간 총치료비

- 충남 진료비 지원사업의 진료비 분포를 이용하여 보험가입금액별 연간 총 치료비를 추정

## 나. 사용통계

## ○ 사육두수 통계(파주)

< 3 - 53 >			( )				
농가번호	2014	2015	2016	농가번호	2014	2015	2016
1	61	72	68	29	113	95	103
2	114	109	110	30	36	41	43
3	105	107	106	31	122	109	108
4	293	231	253	32	184	177	125
5	53	88	87	33	220	226	211
6	65	69	65	34	136	123	129
7	70	79	80	35	94	127	131
8	69	67	86	36	68	75	79
9	37	43	33	37	68	68	68
10	156	150	157	38	132	128	128
11	97	108	99	39	63	57	62
12	232	233	230	40	67	62	58
13	72	72	72	41	134	125	112
14	118	109	91	42	51	47	50
15	37	42	35	43	62	61	65
16	147	146	138	44	78	80	77
17	89	92	92	45	112	96	86
18	62	79	61	46	135	129	117
19	39	40	30	47	143	132	129
20	79	77	52	48	100	92	99
21	44	41	31	49	57	73	79
22	62	66	59	50	57	52	45
23	72	74	68	51	57	55	65
24	80	78	76	52	64	75	70
25	85	88	97	53	160	161	160
26	110	105	100	54	53	65	63
27	139	133	114	55	52	59	58
28	91	91	78	56	52	59	54
29	64	56	56	57	151	167	141
				합계	5,563	5,561	5,339



## ○ 두당 진료비(응급)(파주)

&lt; 3 - 55 &gt; 2014 2015

농가 번호	2014년 및 2015년 평균 진료비(응급)			농가 번호	2014년 및 2015년 평균 진료비(응급)		
	연양 두수	진료비	두당 진료비		연양 두수	진료비	두당 진료비
1	136.5	8,531,000	62,498	29	74.5	3,347,000	44,926
2	221.0	10,006,000	45,276	30	142.5	8,940,500	62,740
3	114.0	8,215,000	72,061	31	78.5	2,410,000	30,701
4	212.5	15,592,000	73,374	32	126.5	4,335,000	34,269
5	504.0	14,370,000	28,512	33	112.0	23,406,000	208,982
6	124.5	5,863,000	47,092	34	255.0	14,692,500	57,618
7	158.0	5,266,000	33,329	35	157.5	14,044,000	89,168
8	134.0	7,272,000	54,269	36	191.5	4,586,000	23,948
9	154.0	22,399,000	145,448	37	144.0	5,945,000	41,285
10	144.5	20,436,000	141,426	38	195.0	1,265,500	6,490
11	78.0	4,554,000	58,385	39	156.0	5,047,500	32,356
12	306.5	18,934,000	61,775	40	179.0	4,643,000	25,939
13	206.0	4,126,000	20,029	41	210.0	1,436,000	6,838
14	321.0	5,431,000	16,919	42	259.5	12,165,000	46,879
15	258.0	15,079,000	58,446	43	123.0	10,304,000	83,772
16	464.0	38,375,000	82,705	44	239.5	38,326,000	160,025
17	148.5	2,462,000	16,579	45	175.5	9,059,000	51,618
18	248.0	5,625,000	22,681	46	255.5	11,404,000	44,634
19	144.0	1,250,000	8,681	47	116.0	4,201,000	36,216
20	141.0	10,027,000	71,113	48	119.5	2,975,000	24,895
21	213.5	5,927,500	27,763	49	116.0	1,860,000	16,034
22	142.0	5,033,000	35,444	50	124.5	4,011,000	32,217
23	441.5	9,452,000	21,409	51	203.0	5,789,000	28,517
24	78.0	1,674,000	21,462	52	313.0	9,059,000	28,942
25	288.5	32,875,000	113,951	53	80.5	4,003,500	49,733
26	182.5	8,417,500	46,123	54	224.0	23,071,000	102,996
27	140.5	5,760,000	40,996	55	103.0	4,346,000	42,194
28	136.0	2,190,000	16,103	56	331.5	16,375,000	49,397
29	268.0	7,851,500	29,297	57	97.5	7,395,000	75,846
				합계	11,012.0	561,435,000	50,984

## 다. 위험률 산출안

### ○ 위험구분

- 2015년 두(가금 10수)당 방역치료비는 젖소(착유우) 150천원, 송아지 45천원, 육우 34천원, 한우(번식우·비육우) 32천원 정도이고, 돼지는 9천원, 닭(10수)은 400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 축종별로 방역치료비가 달리 나타나므로 위험구분은 축종(소, 돼지, 가금)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되, 소의 경우에는 젖소(착유우)와 송아지, 육우 및 한우(번식우 및 비육우)가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우농가의 경우 착유우와 육성우가 통상 일정한 비율로 사육되고 있으므로 이를 단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진료통계 이용가능성에 따라 구분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3 - 55 >

축종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소	젖소	140,581	138,375	150,874	150,819	149,993	146,128
	육우	40,859	39,944	30,208	35,059	33,922	35,998
	한우번식우	30,149	28,027	28,287	29,477	32,144	29,617
	송아지	41,597	38,578	39,807	40,585	44,688	41,051
	한우비육우	32,916	33,360	28,404	30,037	32,355	31,414
돼지	비육돈	10,984	9,006	8,365	9,183	9,231	9,354
닭	산란계(10수)	415	385	290	377	389	371
	육계(10수)	458	437	459	477	452	456

- 아울러, 대동물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축종구분(응답률 78%), 연령구분(성우, 송아지) 구분(응답률 67%), 질병구분 (응답률 50%)로 나타나 축종구분, 연령구분, 성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3 - 56 >

( )

위험구분	응답수	응답률
축종 구분	14	78%
연령구분(성우, 송아지)	12	67%
성별구분(암소, 수소)	9	50%

○ 연간 진료비(젖소, 한우, 육우, 송아지(젖), 송아지(한)) 추정

- (응급진료비) 연간 총진료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유우진료소 자료가 이용가능함.
- 동 유우진료소 자료 중 일부인 58개 목장에 대한 응급진료 자료(2014년 및 2015년)를 제공받음. 이들 목장에 대한 응급진료비는 아래와 같음

< 3 - 57 >

위험구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응급진료비	50,984	6,490	208,982

- (방역치료비) 전국 착유우의 방역치료비는 유대의 1.6% 수준이며, 일부 협동조합 전체의 방역치료비는 유대의 0.9%이나, 계약진료를 시행하는 유우진료소의 방역치료비는 유대의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약품비) 진료비 대비 약품비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전체로는 2014년 51.2%, 2015년 44.6%이며, 이들의 평균은 48.1%로 나타나 진료비 대비 절반 가량이 약품비인 것으로 나타남(유우진료소는 약품비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 - 58 > 2014                      2015                      (                      ,                      )

구분	2014						
	전국 (통계청)		서울우유		유우진료소(일부)		
	호당	일평균	호당	일평균	호당	일평균	
생산유량	354,652.1	971.6	397,717.7	1,089.6	480,463.8	1,316.3	
유대(A)	370,512,574	1,015,103	435,445,425	1,193,001	528,922,451	1,449,103	
방역 치 료	약품 진료	5,973,941	16,367	1,320,467	3,618	594,477	1,629
				2,560,443	7,015	10,799,114	29,587
비(B)	합계			3,880,910	10,633	11,393,591	31,215
비율(B/A)		1.6	1.6	0.9	0.9	2.2	2.2
구분	2015						
	전국 (통계청)		서울우유		유우진료소(일부)		
	호당	일평균	호당	일평균	호당	일평균	
생산유량	371,892.3	1,018.9	400,406.3	1,097.0	471,437.8	1,291.6	
유대(A)	389,276,572	1,066,511	437,258,439	1,197,968	518,933,943	1,421,737	
방역 치 료	약품 진료	6,062,717	16,610	1,160,869	3,180	653,521	1,790
				2,601,660	7,128	10,242,921	28,063
비(B)	합계			3,762,529	10,308	10,896,442	29,853
비율(B/A)		1.6	1.6	0.9	0.9	2.1	2.1

- (두당 방역치료비) 상기 방역치료비 자료를 호당 평균 두수(전체 39.61(2014), 40.42(2015), 계약진료가 시행되고 있는 파주유우진료소 96.4(2014), 93.5(2015))를 고려하여 두당 방역치료비로 추정하는 경우 착유우 및 육성우를 포함 1두당 12만원 내외임.
- 이 중 진료비는 2014년 및 2015년 각각 11만원 내외의 수준임.
- 서울우유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는 2014년 34.0%, 2015년 30.9%이며, 이들의 평균은 32.4%이며, 유우진료소의 약품비 비중은 2014년 5.2%, 2015년 6.0%이며, 이들의 평균은 5.6%로 나타남
- 대동물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진료비 중 진단처치와 약품비 비중은 72% : 28%로 서울우유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3 - 59 > 2014                      2015                      (                      )

구분	2014년				
	전국 (통계청)		유우진료소(일부)		
	호당	두당(착유우)	호당	두당(착유우+육성우)	
생산유량	354,652.1	8,953.6	480,463.8	4,983	
유대(A)	370,512,574	9,354,016	528,922,451	5,485,368	
방역 치료	약품 진료	5,973,941	150,819	594,477	6,165
				10,799,114	111,996
비(B)	합계			11,393,591	118,161
비율(B/A)	1.6	1.6	2.2	2.2	
구분	2015년				
	전국 (통계청)		유우진료소(일부)		
	호당	두당(착유우)	호당	두당(착유우+육성우)	
생산유량	371,892.3	9,200.7	471,437.8	5,043	
유대(A)	389,276,572	9,630,791	518,933,943	5,550,995	
방역 치료	약품 진료	6,062,717	149,993	653,521	6,991
				10,242,921	109,568
비(B)	합계			10,896,442	116,558
비율(B/A)	1.6	1.6	2.1	2.1	

< 3 - 60 >                      (                      )

위험구분	평균	응답자
진단처치	72%	17
약품비(예방접종 포함)	28%	

- (방역치료비) 최근 2년간 유우진료소의 진료비에 약품비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방역치료비를 추정함

&lt; 3 - 61 &gt; ( , )

구 분	진료비 (약품비 제외)	약품비 비율	전체 (약품비 포함)
젖소 (송아지 포함)	2014년	111,996	51.6%
	2015년	109,568	44.6%
	평균	<b>110,782</b>	<b>48.1%</b>
			<b>164,106</b>

### ○ 축종별 위험보험료 추정 및 농가부담보험료 예시

- (방역치료비) 최근 2년간 축종별 방역비는 아래와 같음. 송아지를 포함한 젖소의 방역치료비는 전국 경산우 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lt; 3 - 62 &gt;

구분	2014	2015	평균	상대도
젖소(송아지 포함)	104,125	104,402	104,264	1.000
젖소(송아지 제외)	150,819	149,993	150,406	1.443
송아지	40,585	44,688	42,637	0.409
육우	35,059	33,922	34,491	0.331
한우번식우	29,477	32,144	30,811	0.296
한우비육우	30,037	32,355	31,196	0.299

&lt; 3 - 63 &gt;

구 분	2014년	2015년
젖소	411,342	430,678
경산우	233,254	248,248
경산우비율	56.7%	57.6%

자료 : 한우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보고서 각년도, 농식품부·젖소개량사업소

- (축종별 위험보험료) 축종별 위험보험료는 젖소의 방역치료비를 기준으로 축종별 방역치료비 상대도를 곱하여 계산함
- 자기부담금을 30% 적용하는 경우 젖소(송아지 포함) 1두당 114,874원이 되며, 송아지를 제외한 젖소는 165,712원, 송아지는 46,976원이 됨. 한우비육우와 번식우는 구분하지 않고 계산함
- (축종별 영업보험료) 축종별 영업보험료는 손해사정비용과 사업비 등 부가 보험료(2016년 가축재해보험 적용 사례)를 반영하여 계산함

- (농가별 부담보험료) 축종별 부담보험료는 축산농가가 영업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는 가정을 반영하여 계산함

< 3 - 64 > ( ) 가

구분	방역관리비 상대도 (2년 평균)	추정 위험 보험료	영업 보험료 (자기부담금 30%)	농가부담 보험료 (자기부담금 30%)
젖소(송아지 포함)	1.000	164,106	140,822	70,411
젖소(송아지 제외)	1.443	236,731	203,143	101,572
송아지	0.409	67,108	57,587	28,794
육우	0.331	54,287	46,585	23,293
한우번식우	0.296	48,495	41,875	20,938
한우비육우	0.299	49,101		

- 주) 1. 영업보험료는 추정위험보험료에 2016년 가축재해보험에 적용된 손해사정비용, 부가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함  
 2. 농가부담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3절 국가재보험 운영방안

### 1. 국가재보험의 역할

#### □ 민간 인프라를 이용한 정부정책 실행에 대한 정부의 보완

##### ○ 거대재해를 담보하는 민영시장 형성의 어려움

- 민영보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거대재해<sup>11)</sup>(catastrophe risk)를 담보하는 보험종목인 경우,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매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가격 또한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또한 민영보험시장이 형성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민영보험시장에 위임할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분산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국가가 직접 판매·보상·운영하는 거대재해담보 보험제도는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국가가(산하기관 포함) 보험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보험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실패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 멕시코와 브라질의 농작물보험이 매우 좋은 사례로, 브라질 농작물보험은 1980년대 정부 주도 시 손해율 429%였으나 1997년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한 이후 2004~2007 농작물보험 손해율이 109%<sup>12)</sup>로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브라질은 2007년까지 모든 공공보험 운영에서 민영보험사가 참여토록 결정함<sup>13)</sup>.
- 멕시코도 1980년대 정부주도시 손해율 318%였으나 2003~2007년 보험Pool 운영 이후 손해율이 73%로 낮아졌음<sup>14)</sup>. 이는 정부가 보험료 보조, 국가재

11) 거대재해라 함은 통상재해가 아닌 이상재해를 이야기하며, 이는 민영보험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나 민영보험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태풍·허리케인·홍수·지진·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 테러 등의 인적재해, 거대 환경오염재해가 여기에 속함

12) World Bank. 2009. Government Support to Agricultural Insurance. Appendix E. p.31

13) World Bank. 2009. Government Support to Agricultural Insurance. p.131

보험 제공 등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 결과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 공공-민영 파트너십 구축

- 재해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과 거대재해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려는 민영보험사가 상호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이 공공-민영 파트너십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시장실패 확률을 줄이고, 시장의 연속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완적인 장치 마련<sup>15)</sup>을 통해 보험사업자 손익의 변동성을 제한해 줌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음

### □ 국가재보험의 기능

#### ○ 거대재해위험 담보 유인

- 매년 거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국가재보험 제공 등으로 사업자의 손실변동을 제한함으로써 민영보험회사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
- 국내 환경오염사고와 같이 특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위험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시장진입을 꺼릴 경우, 국가재보험을 도입하여 시장참여를 유인하는 역할을 함.

#### ○ 안정적인 위험관리 수단 제공

- 정부가 국가재보험을 제공함에 따라 정책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시장논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보험자 역할을 함으로써 민영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함

※ 국내 농작물재해보험은 2002년 거대손실로 2003~2004년 국내외 보험사가 원수보험사(농협손보)에 담보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2005년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담보력을 제공함

※ 미국 홍수보험도 대규모 재해로 홍수기금 고갈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사업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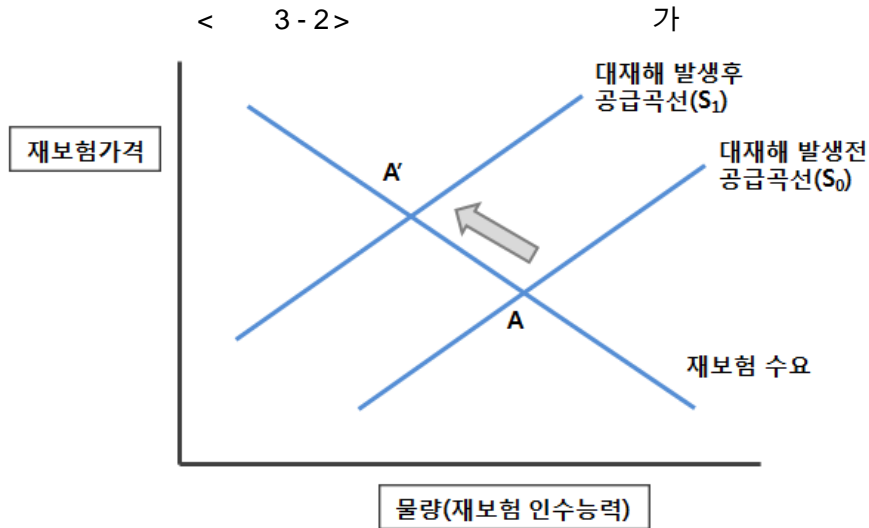
14) World Bank. 2009. Government Support to Agricultural Insurance. p.131

15) 해외에서는 거대재해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점차 민영과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거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한데, 이들 역할 중 국가재보험은 제도의 발전에 가장 이상적인 정부 역할로 인정되고 있음



○ 보험가격 안정(보험요율 인상제한)에 순기능 제공<sup>16)</sup>

- 보험요율 또한 경제논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거대재해 발생 이후 재보험시장은 동일한 수요조건에서 공급곡선이 좌상향(S0→S1)으로 이동하므로 일시적인 재보험 공급의 부족 및 급격한 재보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보험가격 또한 급격한 상승요인(A→A')이 발생함



- 국가재보험이 도입으로 재보험이 제공되면, 급격한 상승요인을 완화하고 재보험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원보험가격 또한 인상폭을 줄일 수 있음
- 동일한 담보 제공시 국가재보험은 자금규모와 조달비용에 있어서 민영재보험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

※ 대재해발생시 민간재보험시장에서는 공급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재보험료의 급등은 연쇄적으로 보험계약자 부담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 선진국에서는 대재해에 대해 국가재보험 제공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다양한 상품공급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

- 거대재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민영보험시장에서 스스로 만들기는 매우 곤란하며, 또한 다양한 상품군을 고객(계약자)에게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움. 만약 국가가 국가재보험을 통해 거대손실을 부담한다면 이러한 거대재해

16) 보험개발원. 2012.10. 국가재보험요율 재산정 및 지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연구. pp.2~3

위험을 담보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공급이 훨씬 수월할 것임

- 국가재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은 ① 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과 ② 국고(예산)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금 방식이 상대적으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

## 2. 국내외 사례

### 가. 국내사례

#### 1) 국내 자연재해보험 개관

##### ○ 자연재해보험은 통상 정책보험으로 도입

- 자연재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 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특히 재해에 취약한 산업과 계층에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이 자연재해 특성상 민영보험만으로는 운영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공적보험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높은 손해율로 효율적인 보험제도 운영이 어려우므로 보편적으로 공공-민영 파트너십 협력체제를 갖춘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 즉, 보험운영은 민영보험회사가 맡은 대신, 정부는 보험시장이 성립되도록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영보험회사에게는 국가재보험제도 운영으로 거대손해시 민영보험사의 손실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국내 자연재해보험 국가재보험

- 자연재해보험 국가재보험은 2005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도입되었음

## &lt; 3 - 65 &gt; (2015 )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sup>17)</sup>
근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도도입	2001	2008	1997
보험사업자	농협손보	수협중앙회	농협손보, KB컨소
보험목적물	농작물 45종(시설포함)	양식수산물 19종(시설포함)	가축 16종(축사포함)
대상재해	자연재해, 병충해 등	자연재해, 적조, 수산질병 등	화재, 질병, 자연재해 등
보험료지원	위험보험료 50%, 운영비 100%	위험보험료 50%, 운영비 100%	위험보험료 50%, 운영비 50%
국가재보험 (적용손해율)	있음 (150~180%)	있음 (140%)	없음 (-)

## 2) 농작물재해보험

## □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 ○ 보험원리를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상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정책보험으로 도입됨
- 2001년 사과·배 2품목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품목이 증가하여, 2015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45개의 품목이 있음.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구분됨<sup>18)</sup>

## &lt; 3 - 66 &gt; (2015 )

구분	특정위험방식 <sup>19)</sup>	종합위험방식 <sup>20)</sup>
본 사 업	고위험군(3)	뽕은감, 고구마, 콩
	중위험군(12)	사과, 배, 단감, 대추, 옥수수, 자두, 매실, 참다래, 가을감자, 가을양파, 고추, 시설토마토

17) 가축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과 달리 국가재보험 제도가 없음. 이는 1945년부터 가축공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험통계를 축적하였고, 태풍 "루사"나 "매미"때에도 손해율이 130%를 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임. 가축은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화재피해가 큰데, 법정전염병은 가축재해보험에서 면책임(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별도로 보상)

18) 다년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이관되는 구조임

구분	특정위험방식 <sup>19)</sup>	종합위험방식 <sup>20)</sup>
저위험군(15)	감귤	밤, 봄감자, 마늘,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참외·꽃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과프리카), 농업용 시설
시범사업(15)		배(종합), 단감(종합), 사과(종합), 벼, 포도, 복숭아, 인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복분자, 오디, 차, 시설작물(부추·시금치·상추)

□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 2005년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

-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2001년)과 동시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거대재해 손실 이후 2005년에 도입되었음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도입배경**

2002 태풍 루사로 인한 거대손실로 민영보험사들의 손실이 매우 컸으므로 2003년 보험요율의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농업인 대상 정책보험 특성상 보험요율 인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2003 원수보험사인 농협손보를 제외한 국내외 민영보험사 모두 재보험에 불참함에 따라 농협손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함. 태풍 매미로 인해 농협손보 또한 큰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2004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합동TF가 운영되었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많은 농업보험 선진국이 국가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2005 2004년말 법개정(2005.1.1 시행)을 통해 국가재보험 기금이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운영중

○ 국가재보험 적용방식

- 2005년 국가재보험 도입시 비비례재보험 방식 중 Stop Loss 방식 채택
- 국가재보험 적용손해율은 2005~2012년 180%로<sup>21)</sup> 적용하였고, 태풍 불라벤 이후 2013년 150%로 한시적으로 낮추어 적용되었음. 2014~2016년 적용손

19) 특정위험방식 : 주계약(태풍·우박), 특약(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피해보상)

20) 종합위험방식 : 병충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재해(벼는 일부 병충해 보장)

21) 2004년 보험개발원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국가재보험 적용손해율을 200%로 제안하였으나, 실제로는 180%가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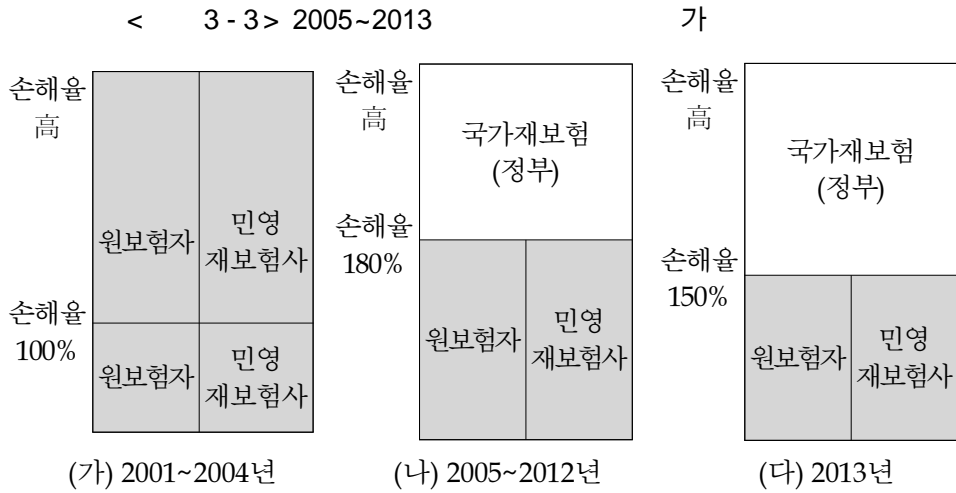
해율은 위험군별로 150%~180%까지 차등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 국내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은 국가가 "재보험사업자 인식"을 갖도록 보험사업자가 국가에 국가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국가재보험료는 2005~2013년 위험보험료의 5.5%에서, 2014~2016년은 위험군별로 위험보험료의 5.5%~7.0%까지 차등납부하고 있음
- 많은 국가에서 국가재보험은 국가재보험료는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국가재보험료를 받고 있음

#### ○ 국가재보험 구조 변경 (200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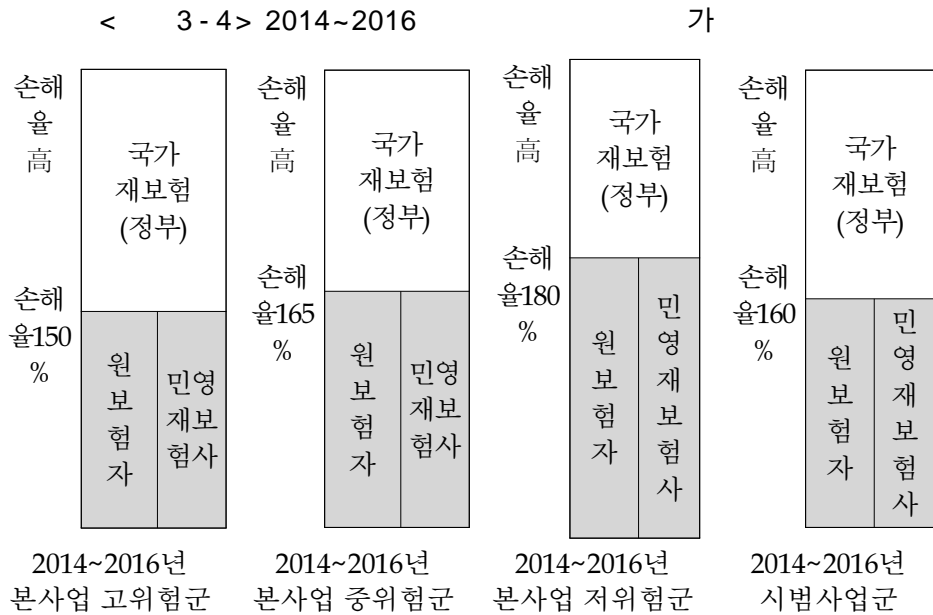
-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분산은 아래 그림 (가)와 같이 2001~2004년까지는 원보험자와 민영재보험자만 위험을 분담하였으나, 2005년 이후 아래 그림 (나)와 같이 원보험자, 민영재보험자 및 국가가 보험책임을 분담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음
- 2005년 국가재보험 도입에 따라, 원보험사(농협손해보험)는 통상손해율 이하의 손해는 민영재보험자(국내외 보험사·재보험사)에 비례재보험방식 (Proportional) 중 Quota Share 방식으로 출재하고, 통상손해율을 초과하는 손해는 비비례재보험(Non-Proportional) 방식 중 Stop Loss 방식으로 국가재보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국가재보험 형태는 단일 Stop Loss 방식으로 일반적인 유형임<sup>22)</sup>

22) 일본은 통상재해와 이상재해를 구분하고, 이상재해시 국가가 전부 손실을 떠맡는 구조가 아니라 이상재해 손실의 90%만을 부담하고, 민영보험사(농업공제조합과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10%를 부담하는 구조임



○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분산 구조(2014~2016년)

- 2014년부터는 3개년 단위로 국가재보험 약정을 맺게 되었는데, 국가재보험을 단일 Stop Loss 방식에서 위험군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게 되었는데, 위험군은 총 4개로 본사업(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 3개와 시범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 2002년은 태풍 루사로 원수손해율 433.5%, 2003년은 태풍 매미로 원수손해율 290.8%, 2012년은 태풍 블라벤으로 인해 원수손해율 357.1%를 시현하였으며, 최근까지의 누적(2001~2014) 원수손해율은 103.9%를 기록하고 있음.

&lt; 3 - 67 &gt;

가

23)

(단위: 백만원)

연도	원수손해율	국가재보험료 (A)	국가재보험금 (B)	국가재보험 손해율 (C=B/A)
2001	45.7%			
2002	433.5%			
2003	290.8%			
2004	42.3%			
2005	43.5%	2,982		-
2006	36.6%	3,612		-
2007	110.4%	3,194		-
2008	45.0%	3,175	583	18.4%
2009	105.8%	3,598	336	9.3%
2010	104.6%	4,959	2,891	58.3%
2011	119.5%	6,222	22,820	366.8%
2012	357.1%	8,032	260,588	35,244.4%
2013	21.0%	11,814	10,866	92.0%
2014	66.9%	13,553	12	0.1%
합계	103.9%	61,141	298,096	487.6%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요

## ○ 보험원리를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상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가 정책보험으로 도입되었음

23)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업재해보험연감. p.159, p246.

-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품목이 증가하여, 2015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19개의 품목이 있음. 본사업 품목과 시범사업 품목으로 각각 구분되며, 다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이관되는 구조임

< 3 - 68 > (2015 )

구분	본사업(5)	시범사업(14)
육상수조식	넙치	뱀장어, 강도다리, 송어, 돌돔
해상가두리식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연승수하식	굴	멍게, 미역, 홍합, 다시마
부류식 지주식		김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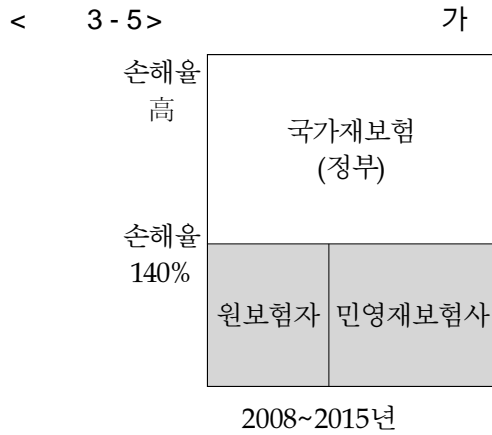
### ○ 2008년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국가재보험이 도입되었으며, 국가재보험 적용 손해율은 2008년 농작물재해보험 180%보다 낮은 140%로 결정됨
-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적용손해율보다 낮은 것은 양식수산물재보험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육상수조식과 해상가두리 뿐만 아니라 연승수하식, 부류식·지주식 등의 양식하는 방식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하여 사업자의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특성을 고려함

### ○ 2008년부터 국가재보험 구조 유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위험분산 구조는 농작물재해보험 초기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위험분산은 원보험자(수협)는 비례방식(Quota Share)으로 민영재보험자에게 출재하며 통상손해율을 초과하는 책임은 비비례방식(Stop Loss Ratio)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초과손해율 수준은 140%로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낮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실적

- 2008~2010년은 양호한 기상상황에 따라 국가재보험금 지급이 없었으나, 2011년 이후 손해가 심해져 2012년에는 태풍 불라벤 등 연속 3개의 태풍으로 인해 국가재보험 손해율이 25,504%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적조 등으로 손해상황이 좋지 않아 2008~2014년 국가재보험 누적손해율은 3,677%를 기록하고 있음.

< 3 - 69 > 가 24)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재보험료	5	23	32	57	125	391	670	1,303
재보험금	-	-	-	974	31,880	11,985	3,076	47,915
재보험손해율	-	-	-	1,709%	25,504%	3,065%	459%	3,677%

24)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업재해보험연감. p.246

## 나. 해외사례

### 1) 미국 농작물보험

#### □ 개요

##### ○ 1938년 농작물재해보험 세계 최초로 도입

- 1938년 연방농업작물보험법<sup>25)</sup>을 제정하고, FCIC(연방농작물보험공사)<sup>26)</sup>를 설립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보험제도로 1939년 밀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처음 도입됨
- 1980년 농업인에게 보험료를 보조(30%)하고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가입률을 향상시켰고, 기존 각종 재해지원프로그램을 보험제도로 통합하면서 일부 재해(named peril)만 보상하던 것에서 다양한 재해(multi peril)를 보상하는 구조로 변경됨
- 1994년 FCIC에 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함
- 1996년 연방농업개발개혁법<sup>27)</sup>을 제정하여 연방농작물보험공사(RMA)<sup>28)</sup>를 설립하고, 수입보장보험(Revenue Product)을 도입함
- 2000년 농업위험방지법<sup>29)</sup> 제정, 2008·2014년 농업법<sup>30)</sup> 개정을 통해 정부 보조율, 보장 범위, 대상 작물 등을 확대함

##### ○ 공공-민영 파트너십(PPP)으로 운영

- 공공-민영의 역할분담이 잘 배분되어 있는데, 민영보험사는 판매·보상을 담당하고, 정부는 전반적인 제도운동을 지원함
- 보험시장의 지속유지를 위해 정부는 보장범위 확대와 보험가입자에 대한

25) 1938. Federal Agricultural Crop Insurance Act

26) Federal Crop Insurance Cooperation

27) 1996. 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 Reform Act

28) Risk Management Agency : 농업보험 관리감독, 상품·요율 개발, 손해사정 인력양성 등 담당

29) 2000.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민영보험사 상품개발 허용(RMA 상품개발 금지)

30) 2008. Farm Bill. 대상범위 확대(유기농 작물, 양식수산물, 바이오디젤 등 에너지 작물)

보험료 보조 확대로 가입률을 크게 향상시켰고,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민영보험사 손실을 제한해줌으로써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3 - 70 >

31)

기관명	역할
RMA (직원 ≒540명)	- 농작물보험 관련 제도 제정·개정 - 신규 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현 프로그램 모니터링·개선 - 정부 및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위험관리법 연구 및 교육 - 보험사와 협조하여 통계 및 인수정책 수립
FCIC (RMA산하 Paper Company)	- 농작물보험 확대 관련 정책수립 - 민영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재보험 담보 제공 - 보험요율, 보험기간 및 조건 설정 - (수입보장보험 대상) 예상시장가격 결정
민영보험사	- 농작물보험 컨설팅 및 보험모집판매(보험료 거수) - 손해평가인 교육, 손해평가 실시 및 보험금 지급

## □ 국가재보험 운영방식

### ○ 국가재보험 계약(SRA)<sup>32)</sup>

- RMA에 속한 FCIC와 농작물재해보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영보험사<sup>33)</sup>간 국가재보험 계약(SRA)을 맺는데, 2015년에는 19개 보험사가 계약을 맺음
- 민영보험사는 우선 SRA 계약에 따라 일부 위험을 보유하며, SRA 적용 후 보유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국내외 재보험자에게 자유로운 재보험 출재가 가능
- SRA 계약은 3단계로 이루어짐

31)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업재해보험연감. pp.598~599

32)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로 1998-2004년, 2005-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SRA 계약이 있음. RMA 웹페이지(<http://www.rma.usda.gov/pubs/ra/>) 참고

33) SRA 계약을 맺는 민영보험사를 AIPs(Approved Insurance Providers) 또는 SRA Holder로 지칭

## &lt; 3 - 71 &gt; SRA

구분	내용
1단계	FCIC와 민영보험사간 위험군별 비례적(Proportional) 재보험 <sup>34)</sup> 적용
2단계	1단계 적용이후 민영보험사 보유분에 대해 비비례적(Non-Proportional) <sup>35)</sup> 재보험 적용
3단계	2단계 적용이후 나온 손익에 대해 일정비율로 비례적 재보험(Net book Quota Share) 적용

## ○ 국가재보험 기금(Fund)

- 농작물별 위험도가 다른 만큼 위험군별로 국가재보험 기금을 운영하는 체계로, 보험사는 해당 작물을 판매후 30일 이내 위험군별 국가재보험 기금을 선택해야 함
- 위험군별 국가재보험 기금은 2010년까지 고위험기금(Assigned Risk Fund), 중위험기금(Development Fund), 저위험기금(Commercial Fund)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2011년 이후 중위험기금이 없어져서 고위험기금과 저위험기금만 운영되고 있음
- 고위험기금의 경우 손해율 변동성이 큰 작물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유율을 낮게 하고, 국가재보험 적용 손해율을 낮게 하여 보험사의 손실을 크게 제한하고, 반대로 저위험기금의 경우 손해율이 양호한 작물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많이 보유하여 이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함

34) 재보험은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이 있으며, 비례적 재보험은 Quota Share와 Surplus 등이 있는데, 1단계에서는 Quota Share를 적용

35) 비비례적 재보험은 XOL(Excess of Loss)방식과 Stop Loss 방식등이 있는데, 2단계는 누적 Stop Loss 방식을 적용

## 2) 일본 농작물보험

### □ 개요

#### ○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농작물 공제 도입

- 1947년 논벼와 맥류를 대상으로 농작물 공제를 도입하고, 1948년 밭벼를 추가
- 농작물공제 도입 이후, 가축공제(1947, 소·말)와 과수공제(1968), 원예시설공제(1974년), 전작물공제(1974) 등이 도입되었음<sup>36)</sup>

※ 국내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본의 농작물공제(식량작물), 과수공제, 원예시설공제, 전작물공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가축공제만 제외)

#### ○ 공공-민영 파트너십(PPP)으로 운영되나, 보험보다는 공제중심 운영구조

- 정부는 보험가입자(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보조와 보험사업자에 대한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을 지원하여 손실을 제한하고, 민영은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하는 공공-민영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민영보험사의 역할은 일본 특유의 (지역)농업공제조합(지역단위)과 농업공제연합회(중앙단위)가 운영하는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공제조합과 농업공제연합회, 정부 모두가 위험을 공유

< 3 - 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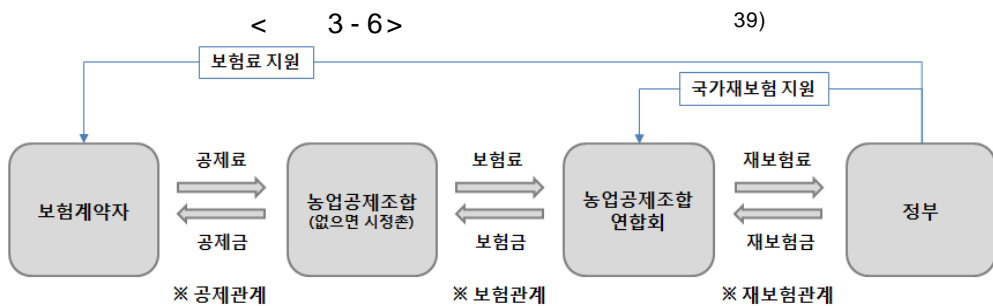
조직명	조직 역할
농업공제조합 (지역단위)	- 공제사업을 운영 - 읍면단위 1개 설치가 원칙. 조합이 없으면 시정촌(市町村)에서 취급 - 공제계약인수(U/W), 공제료 수납, 손해평가, 공제금 지급 등 원보험자 기능 수행
농업공제연합회 (중앙단위)	- 보험사업을 운영 - 전국 47개 도도부현 단위에 설치·운영(연합회별 손해평가인 70명) - 단위조합차원에서 지급할 수 없는 대재해손해를 보험으로 인수하여 공제조합의 위험을 분산
중앙정부	- 재보험사업을 운영 - 연합회에서 인수한 위험을 인수하여 최종적인 담보력 제공하고, 연합회의 손해평가결과를 재검토하여 최종적인 지급공제금을 결정

36) 최경환 외 9인. 2004.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험개발원. pp.88~90

## □ 위험분산 및 국가재보험

### ○ 운영구조 및 위험분산

- 보험계약자는 농업공제조합에 공제를 들고, 농업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험분산을 위해 농업공제연합회(중앙단위)에 보험을 가입<sup>37)</sup> 하고, 농업공제연합회는 정부에 국가재보험을 가입
- 농업공제조합이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출재하는 비율은 일정비율<sup>38)</sup>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성 장관이 결정함



### ○ 국가재보험 운영 방식

- 일본은 통상재해와 이상재해로 구분하여 통상재해 손해는 농업공제조합과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손해의 100%를 농업공제조합과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보유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이상재해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농업공제조합과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부담하는 구조<sup>40)</sup>
- 국가재보험을 적용하는 손해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과거 피해율 통계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나, 2003~2005년 평균 125%<sup>41)</sup>라는 연구가 있음

37) 농업공제조합(지역단위)에서는 공제료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 농업공제연합회에 보내는데, 일종의 재공제 개념이며, 보험형식을 빌리면 Quota Share 재보험으로 손해율에 따라서 농업공제조합과 농업공제연합회가 손해를 각각 분담하는 구조임

38) 보험개발원. 2012.10. 국가재보험요율 재산정 및 지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연구. p.17

39) 보험개발원. 2012.10. 국가재보험요율 재산정 및 지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연구. p.16

40)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업재해보험연감. pp.616~617

41) World Bank. 2009. Government Support to Agricultural Insurance. APPENDIX E. p.128

### 3) 스페인 농작물보험

#### □ 개요

○ 1978년 통합농업보험체계법<sup>42)</sup> 제정으로 1980년 농업보험 도입

- 1980년 이전에는 민영보험사에서 우박보험<sup>43)</sup>만 판매하였으나 높은 손해율로 보험요율이 높았고, 그에 따라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태였음
- 1980년 농업보험전문회사인 Agroseguro를 설립하였고, 이후 정부의 보험료 보조와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제도가 발전함

○ 세분화된 공공-민영 파트너십(PPP)으로 운영

- 정부 역할분담이 더 세분화되어 있는 구조로, 농림부 산하 ENESA(농업보험청)<sup>44)</sup>와 재무부 산하 DGS(국가보험국)·CCS(보험보상협회)의 역할분담이 잘 구성되어 있음
- 거대 자연재해 위험(CAT risk)을 보상하는 농업보험 특성상 국가내 모든 보험사가 참여하고 손익을 배분하는 Pool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Agroseguro를 설립하여 보험요율산정·보험모집·수납·손해평가·보험금지급 등 보험사업을 전담

< 3 - 73 >

구분		역할
농림부	ENESA (농업보험청)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업보험 전담기관 - 사업총괄계획 및 보험료보조 지원율을 재무부와 공동으로 결정
재무부	DGS(국가보험국)	- 재무부 산하 보험감독조직 *한국 보험감독원과 유사
재무부	CCS (보험보상협회) <sup>45)</sup>	- 재무부 산하 국가재보험 운영기관 *농업보험 외 다른 보험종목도 담당
Agroseguro(농업보험회사)		- 민영보험사가 공동출자하여 만든 농업보험 전문회사 *출자비율 <sup>46)</sup> 에 따라 손익배분

42) Combined Agricultural Insurance System(1978)

43) 우박보험은 정부의 보험료보조나 국가재보험제도가 없는 순수 민영상품임

44) Entidad Estatal de Seguros Agrarios, 스페인 농림부 산하조직으로 미국 RMA와 유사한 역할 담당

- 매년 참여하는 민영보험사의 수와 민영보험사의 출자율은 달라지며, 정부가 최소 10%의 출자율을 갖고 있고, 만약 거대손실로 민영보험사 출자율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만큼을 정부 CCS에서 추가 출자하는 구조임

□ 위험분산 및 국가재보험

○ 3단계에 걸친 위험분산 구조

- 거대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보험종목인 만큼 3단계 걸쳐서 위험분산이 이루어짐

< 3 - 74 >

구분	내용
1단계 (보험 Pool)	민영보험사가 출자 <sup>47)</sup> 한 만큼 책임지는 보험 pool 제도
2단계 (민영재보험)	Agroseguro가 보유한 위험을 다시 해외재보험으로 위험분산
3단계 (국가재보험)	거대손실 발생시 국가에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

- 재무부 산하 CCS는 정부예산편성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CCS(국가)가 책임지는 위험의 일부를 또다시 해외 민영재보험사<sup>48)</sup>에 위험을 출재하였으나, 2013년 이후로 출재하지 않고 있음

○ 국가재보험 구조

- 본사업과 시범사업<sup>49)</sup>에 대한 국가재보험 구조가 다르며, 사업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본사업과 달리 시범사업은 국가재보험 기준손해율이 상당히 낮음

45) Consorico de Compensacion Seguro

46) 출자비율은 보험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무부 산하 DGS에서 결정하며, CCS도 Agroseguro에 일부를 출자하는데, 2013~2014년 기준으로 10%를 출자

47) 2008년 21개, 2013년 28개 보험사. Agroseguro의 여러 보험판매채널(은행, 보험회사) 중 하나로, 보험판매대리점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음

48) Swiss Re, Munich Re, Partner Re 등(retrocession contract)

49) 본사업(Lineas Viabes) : 손해율이 안정된 사업으로 충분히 보험운영이 가능한 작물과 담보위험이 대상 시범사업(Lineas Experimentales) : 손해율이 불안한 사업으로 위험도가 높은 작물과 담보위험이 대상



- 시범사업에 대해 국가부담이 더 큰 것은 보험사업자인 Agroseguro가 신상품개발, 신규 도입작물, 신규 위험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기 위함

### 3. 운영방안

#### □ 방역치료비 특성

##### ○ 거대 재해위험 작음

- 가축질병공제(보험)에서 전염병 등으로 인한 폐사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거대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 국내 가축 주요 축종의 최근 5년간 연간 가축방역비에 대한 변동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대부분 10% 내외)됨에 따라 전염병에 의한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거대위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3 - 75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표준 편차	변동계 수
젖소	140,581	138,375	150,874	150,819	149,998	146,128	6,131	4.2%
육우	40,859	39,944	30,208	35,059	33,922	35,998	4,414	12.3%
한우번식우	30,149	28,027	28,287	29,477	32,144	29,617	1,657	5.6%
송아지	41,597	38,578	39,807	40,585	44,688	41,051	2,313	5.6%
한우비육우	32,916	33,360	28,404	30,037	32,355	31,414	2,115	6.7%
비육돈	10,984	9,006	8,365	9,183	9,231	9,354	975	10.4%
산란계(10수당)	415	385	290	377	389	371	48	12.8%
육계(10수당)	458	437	459	477	452	456	14	3.2%

- 최근 20년간 일본 가축질병공제의 금액피해율의 변동성 역시 매우 낮음(개체 관리가 가능한 소(젖소, 육우) 및 말의 변동계수는 10% 내외)

< 3 - 77 > 가

구분	젖소	육우	말	종돈
평성4년	5.45	2.06	2.46	3.02
평성5년	5.84	2.20	2.47	3.08
평성6년	5.96	2.19	2.54	3.33
평성7년	6.19	2.23	2.63	3.33

구분	젓소	육우	말	종돈
평성8년	6.36	2.40	2.79	3.35
평성9년	6.26	2.47	2.82	3.30
평성10년	6.43	2.58	2.92	3.37
평성11년	6.55	2.68	3.03	3.35
평성12년	6.68	2.67	3.23	3.24
평성13년	6.43	2.67	3.04	3.35
평성14년	6.55	2.74	2.93	3.18
평성15년	6.69	2.80	3.02	3.39
평성16년	6.34	2.87	3.06	3.10
평성17년	6.25	2.93	3.07	3.00
평성18년	6.20	2.97	3.00	3.07
평성19년	6.14	2.96	3.14	2.84
평성20년	6.28	2.95	3.09	2.51
평성21년	6.30	2.98	3.07	2.14
평성22년	6.17	2.84	3.03	2.03
평성23년	6.00	2.90	2.81	1.72
평균	6.25	2.65	2.91	2.99
표준편차	0.29	0.30	0.23	0.50
변동계수	0.05	0.11	0.08	0.17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 □ 폐사/사고 보상금 등 재원 부족에 대비한 재보험금 운영 방안

### ○ 국가재보험 미운영

- 국가재보험을 운영할 정도의 거대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재보험은 운영하지 않음

### ○ 전염병에 의한 폐사 위험 보장시 국가재보험 고려

- 전염병에 의한 폐사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재보험 운영을 고려

## 제4절 사후 관리방안

### 1. 검토배경

#### □ 사업수행주체, 사업비 집행 및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

- 별도법인 설립, 생산자단체, 농협, 보험사 등 기존 기관 활용 시범사업 수행 주체별 장·단점 및 사업효과 비교 분석, 정부와 사업수행주체 등 운영체계 및 역할 분담 등 운영방안 마련
-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등의 사업시행지침을 모델로 한 가축질병공제 사업 시행지침(안) 마련
  - 동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집행 및 사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사업시행지침에 포함)

### 2. 시범사업 수행주체<sup>50)</sup>

#### 가. 공제와 보험의 정의

- 공제와 보험은 리스크 풀을 구성하여 리스클 분산시킴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들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수요에 대비하고자 위험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 내에서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된 일정한 금액을 미리 각출하여 만든 공동기금으로 약정된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면, 축적된 그 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sup>51)</sup>
  - 보험제도 외에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에는 유사보험제도가 있는데, 이는 보험제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보험제도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유사보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제임

50) 공제사업 등 생협의 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췌 정리

51) 박세민, 보험법, 2면.

- 공제란 다수의 경제주체가 단체로서 결합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가입자에게 화재나 사망과 같은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임
  -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공제는 보험과 유사함
  - 다만, 공제의 가입대상자가 일정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의해 한정되어 구성된다는 점에서 보험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함.
  -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여기에 속하며,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제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보험과 거의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있음

## 나. 공제와 보험의 특성

### □ 공제사업과 공제조합

-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짐. 공제조합은 주로 노동자 등이 질병·실업·부상·사망 등에 대비하여 조합에 가입하고, 미리 일정액의 부금을 각출해 적립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립금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여 사고로 인한 생활의 곤란을 덜어주는 조직임
  - 사망이나 재해 등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사전에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바로 공제사업임
  - 공제사업과 공제조합은 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주된 사업으로 한다는 점이고, '공제사업'은 조직이 '공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음

### □ 공제조합과 보험회사

-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므로, 공제사업의 특성은 공제조합의 특성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음.

## &lt; 3 - 77 &gt;

구분	보험회사		공제조합
	보험회사	상호회사	
법적근거	보험업법	보험업법	특별법 또는 민법
이념	자유평등, 영리추구	상호부조, 본주의 경제원리	상호부조, 집단우애
법인의 성격	영리법인	보험업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부처(신협은 금융위원회)
가입대상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특정 다수
법인의 구성	주주, 보험계약자	사원(=보험계약자)	조합원(=보험계약자)
의사결정구조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잉여금의 귀속	주주	사원	조합원
잔여재산청구권	없음	있음	있음
기업위험의 부담자	주주	사원	조합원
경제적 소유자	주주	사원	조합원
책임준비금 규제	법상 회사간 동일	보험회사와 동일	공제별로 다름

-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규제를 행하는 근거 법률이 상이함.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반면, 공제조합은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해서 규제됨
-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법인격 또한 영리법인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공제조합은 상호부조와 집단우애의 이념적 기초 아래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취하고 있음
-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와 잉여금의 귀속, 그리고 지배권의 행사의 주체에 관한 측면임. 보험회사의 지배권은 전적으로 주주에게 있는 반면,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구조, 잉여금의 귀속, 그리고 경제적 소유의 권한이 모두 조합원에게 있음. 공제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또한 영리추구의 목적에 기초하지 않고 조합원들 내의 공유된 이해 속에서 자조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사업요건 및 규제 주체

- 보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수협을 포함한 일반공제의 경우에는 중앙회와 조합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중앙회만이 공제규정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고 있음

○ 주무부서 및 감독

-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관장하며, 수협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서로서 그 업무를 관장함. 보험회사의 경우 감독과 검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시행하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함. 공제의 경우 공제사업에 관하여 각기 다른 주무부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감독 및 검사의 주체 또한 상이함

< 3 - 78 >

구분	민영보험	수협공제	새마을공제	신협공제
사업 주체	보험회사	수협중앙회 (조합)	새마을연합회 (금고)	신협중앙회 (조합)
사업 요건	종목별 허가 (엄격한 인적·물적 요건)	공제규정 인가	공제규정 인가	공제규정 인가
경영 여부	보험업(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경영금지, 타업무 경영 금지	공제업(손해공제, 생명공제, 제3공제) 경영 가능, 타업무 경영 가능	수협과 동일	수협과 동일
주무 부서	금융위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감독 및 검사	감독-금융위 검사-금감원	해양수산부 (금융위 검사 요청)	행정안전부(금융 위와 협의, 금감원 검사 요청)	감독-금융위 검사-금감원
감독 기준	금융위	해양수산부 (금융위 협의)	행정안전부(금융 위 협의)	금융위원회

## □ 지배구조

-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을 행하고 있는 모든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임원으로써 활동함

### < 3 - 79 >

구분	보험회사	수협공제	새마을공제	신협공제
임원의 범위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이사, 감사	이사, 감사	이사, 감사
다른 직업의 종사 제한	상근임원	상임임원, 간부직원	-	-
경업금지	(상법 적용)	상임임원, 간부직원	임직원	
사외이사 선임의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3명(전체의 1/2)이상	1명의 비조합원 이사 가능	임원 1/3이상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자	-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앙회, 조합	연합회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	2/3 이상이 사외이사 회계, 재무전문가 1인	3인 중 2인은 외부전문가	3인 중 2인은 전문이사	3인 이상 중 2/3 이상 전문이사
내부통제 기준	의무(법)	의무 (감독규정)	의무(법)	의무(법)
준법감시인	의무		의무	의무

## □ 민영보험, 우체국보험 및 공제

- 민영보험은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은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제는 조합원의 이익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들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lt; 3 - 80 &gt; ,

구분	민영보험	우체국보험	공제	
목적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보장	일반 국민의 경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조합원의 이익 및 복지증진	
가입범위	일반 국민	일반 국민	조합원	
감독 체계	정책 감독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 행자부(새마을금고) - 재경부(신협)
	일반 감독	금융감독원	없음	없음

자료 : 권순철, 유사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다. 공제와 보험의 장단점

### □ 장점

-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영리목적이 아닌 위험대비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우선 공제사업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위험을 공제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제사업의 내용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설계할 수 있음
  - 둘째, 조직된 조합원들의 위험에 기초하고 있는 협동조합 공제사업은 대량 생산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
  - 셋째, 이러한 조합원의 공동가입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운영비용을 전통적인 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넷째, 생활세계에 밀착되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 사이의 공동가입은 조합원들 간 도덕적 헤이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임

### □ 단점

-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음



- 공제조합은 보험과 같이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기 어려우므로, 더 적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공제사업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단점이 지적되고 있음. 자신이 포괄할 수 있는 위험의 규모에 의존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요금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보험회사보다 공제가입자들에게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
- 그 외에 공제사업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경우,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특성을 모호하게 하면서 탈상호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러한 탈상호주의 경향은 결국 공제사업의 존재가치를 위협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라. 가축질병공제(보험) 수행가능 조직

### □ 생산자단체(축협,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

- 가축질병공제를 영위할 수 있는 조직은 축종별 협회와 축협 등 농업협동조합임
  - 축종별 협회는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임
  - 협동조합으로는 축협이 있음.
- 현재 축협은 농협중앙회로 통합되어 있고, 농협중앙회는 기존 공제사업을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제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 수의사회

- 수의사회는 수의사로 구성된 단체로 가축질병공제(보험)이 수의사들의 예방활동과 진료활동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운영가능 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의사회는 축산농가들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므로 공제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다만, 수의사회가 공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공제를 구성하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축산단체가 공제를 구성하는 경우 수의사회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공제단체와 협약을 맺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보험사(가축재해보험 사업자) : 농협손보, KB손보, 동부화재, 한화손보

- 가축재해보험 참여 보험회사든 아니든 보험사는 가축질병공제(보험)에 참여할 수 있음
  - 참여하려는 보험사는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와 사업참여 약정을 맺어야 함
- 다만, 가축재해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운영경험이 있고, 가축질병공제(보험)을 병행하여 인수하는 경우 위험관리 및 가축질병 관리활동에 따른 폐사위험 절감을 반영하여 줄 수 있어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공제가 가축재해보험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해당 공제가 농어업재해보험법 가축재해보험 참여가능 사업자로 규정되어져야 함

### 마. 가축질병공제(보험) 수행 적절성

#### □ 인프라와 경험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공제(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인적조건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단체의 경우 공제(보험)사업을 위한 경험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가축재해보험 사업참여 보험회사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운영경험 및 물적·인적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가축재해보험 참여 보험회사는 동 가축질병공제의 접근이 공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

## □ 접근성

- 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가축질병공제는 회원을 대상으로 가축질병공제(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공제(보험)의 판매 접근성이 매우 높음
  - 반면, 농협을 제외한 보험회사는 개별 축산농가에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사업자단체 또는 농협손보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사업자단체 및 농협손보는 축산농가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 공제(보험)에 의한 정부정책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 책임분담

- 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가축질병공제는 그 보험운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공제의 구성원인 축산농가에게 결과가 돌아가므로 보험가입에 따른 도덕적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됨
  - 반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인 축산농가로부터 위험을 전부 인수함에 따라 축산농가는 보험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므로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도덕적위험의 경감은 가축질병공제(보험)의 건전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효율성 및 보험료 부담

- 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가축질병공제는 그 공제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도덕적 위험의 통제 뿐만 아니라 저렴한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공제기구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보험회사는 도덕적 위험과 사업비 부담의 증가 가능성도 병행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비용효율성은 낮을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사는 타보험 인수 및 지급경험이 충분하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가축재해보험과 질병공제(보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질병관리

활동에 따른 폐사위험 절감이 예상되며, 이 위험감소를 가축재해보험에 반영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부담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음

- 보험료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재해보험사업 참여 보험사가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음

## □ 감독

- 가축질병공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의 감독을 받게 되나, 보험사가 동 가축질병공제(보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됨
- 따라서 운영기관의 도덕적해이는 감독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의 구조상 보험사에 대한 감독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3. 가축질병공제(보험) 시행지침 마련

### 가. 개요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작물·가축·양식재해보험 등의 사업시행지침을 모델로 한 가축질병공제 사업시행지침(안) 마련
- 가축질병공제(보험)과 가장 유사한 가축재해보험의 사업시행지침을 기초로 사업시행지침(안)을 마련함

### 나. 가축재해보험의 주요 내용<sup>52)</sup>

< 3 - 82 > 가

구분	내 용
사업개요	① 목 적
	② 근거법령
	③ XX년 사업 예산
	④ 사업 운영
	⑤ 성과목표 및 지표
	⑥ 'XX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⑦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XX년 사업시행	① 사업대상자

52)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2.'2016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참조

구분	내용
주요 내용	<p>② 지원대상 및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지원 대상</li> <li>2. 정부지원 제한사항</li> <li>3. 세부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li> <li>(2) 사업실시지역 : 전국</li> <li>(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li> <li>(4)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li> <li>(5) 축종별 보장내용 : 시가의 80%~100%까지 지급</li> <li>(6) 보험기간 : 1년</li> <li>(7) 보험가입절차 등</li> <li>(8)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li> <li>(9) 보험료 납입방법</li> <li>(10) 보험가입금액의 산출</li> <li>(11) 손해평가</li> <li>(12) 보험금 지급심사</li> <li>(13) 보험금 지급</li> </ol> </li> </ol> <p>③ 지원대상</p> <p>④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p> <p>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p> <p>⑥ 보험상품 연구·개선</p> <p>⑦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p> <p>⑧ 기타</p>
표준프로세스(S 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신청단계</li> <li>②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li> <li>③ 자금배정단계</li> <li>④ 이행점검단계</li> <li>⑤ 성과측정단계</li> <li>⑥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li> </ol>

## 다. 사업시행지침(안)

### 1) 사업개요

#### ① 목 적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②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별도의 법령 제정시 변경)

#### ③ XXXX년 사업 예산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예산액(국비) : ○○○억원(전년 XXXX년 ○○○억원)
- 사업시행방식 : 보조(국고 ○○%, 자부담 ○○%) \* 총 보험료 기준
- 사업수혜자 : 보험대상목적물(가축)을 양축하는 농업인

#### ④ 사업 운영

- 사업총괄 :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공제)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예시) 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현대, 삼성, 동부), 한화손해보험
- 사업감독 : 금융위원회
-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 심의기구 :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별도 법령 마련시 변경)
- 운영체계

- ▶ (농식품부)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을 관장하면서 국고에서 보험료(위험 및 부가보험료) 지원
- ▶ (민간 보험사) 보험판매와 손해평가업무 등은 주도적으로 실시

**5 성과목표 및 지표**

- XXXX년 가축질병공제(보험)의 가입률 ○○%까지 제고

**6 'XX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률 : 가축가입두수/대상두수
- 가축질병공제(보험)증가율: 전년대비 가입농가수 증가율 및 가입두수 증가율

**7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 3 - 82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	-	-	XXX
보 조	-	-	-	-	XXX
자부담	-	-	-	-	XXX

**2) XXXX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예시)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질병공제(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2 지원대상 및 요건**

**1. 정부지원 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2. 정부지원 제한사항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제출(필수)
  - \* 공제(보험)목적물 소재지와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상 소재지 및 축사 소재지는 일치해야 함
  - \* 축사 임대농가는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첨부시 정부지원 가능
  - 단,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한 등록제외대상은 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공제(보험)료 정부지원 가능)
-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 ‘축산 계열화사업자’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임
- 축사특약은 가축 주계약에 최소가입금액 10만원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지원 제외
  -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 3. 세부 사업내용

(1)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가축 : 소

○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2) (시범) 사업실시지역 : (특정지역 또는) 전국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폐사)

\* 풍재·수재·설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조수(潮水) 등으로 인한 피해

(4)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3-83 > 가

구 분	소		
	I (송아지)	II (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주 ~12개월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 가축재해보험과 동일하게 유지	종모우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5) 축종별 보장내용 : 폐사의 경우 시가의 80%~100%까지 지급, 치료비의 경우 농가가 선택

○ 소의 폐사는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3 - 85 >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소	주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재·수재·설해, 화재) 등으로 인한 <b>치료비 및 폐사</b></li> <li>○ 부상(사지·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 도축하여야 하는 경우</li> <li>※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b>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b></li> <li>○ 소 도난에 의한 손해</li> <li>○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진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li> </ul>	-폐사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 70%, 80% 보상 중 선택
	종모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li> <li>○ 부상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li> <li>○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li> </ul>	-치료비 :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중 선택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핵(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li> </ul>	
축사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li> </ul>	-풍재, 수재, 설해 : 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li> </ul>	

(6) 공제(보험)기간 : 1년

○ 가입시기 : 연중 가입 가능

(7) 공제(보험)가입

○ 공제(보험)가입절차

- 공제(보험)가입안내(보험사, 공제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보험)료 수납(공제(보험)가입금액 및 공제(보험)료 산정) → 공제(보험)증권 발급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반드시 첨부(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축사특약 가입시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첨부(무허가인 경우 축사건물배치도 첨부)
- 법인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축종별 약관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공제(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시스템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 공제(보험)사, 공제의 대리점은 공제(보험)가입시 해당 시·군·구에 가입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청약서상 총공제(보험)료, 농가부담 공제(보험)료, 정부보조 공제(보험)료 이외에 시·도 및 시·군·구 지원 공제(보험)료도 명시

(8) 공제(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공제(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순공제(보험)료 중 위험공제(보험)료에 대한 공제(보험)요율은 요율산출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요율(참조요율)로 하고, 손해조사비율은 질병공제(보험)사 내부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내부자료가 없는 경우는 시장전체실적에 의한 통계자료 요율 사용
- 해당 축종의 참조 요율이 없거나 통계자료의 객관성·신뢰성 부족한 경우에는 질병공제(보험)사업자 경험요율 또는 비통계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공제(보험)료의 할인·할증

- (계속계약 할인)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동일한 공제(보험)계약자(피공제(보험)자)와 동일한 공제(보험)목적물의 위험에 대해 계속계약자 대상으로 축종별 적용요율의 5% 할인
- (손해율 할인·할증)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공제(보험)계약자(피공제(보험)자)의 최근 3년 공제(보험)사 통합 손해율에 따라 축종별 적용요율 적용 (50%까지 할인, 50%까지 할증)
- 할인·할증은 보험요율산출기관 할인·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공제(보

협)사업자간 공제(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약관, 청약서 등 변경을 통해 질병공제(보험)사업자간 공제(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률에 의한 사용 동의 등 사전절차 추진

(9) 공제(보험)료 납입방법

- 공제(보험)료 납입은 공제(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공제(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시 축산농업인 부담공제(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이상 분할 납부 가능
- 공제(보험)료 분납방법은 아래 기준을 따르거나 동일 금액으로 분할 납부 가능

< 3 - 85 > ( )

구분	납입시기	납입액
1회	공제(보험)가입시	축산농가 부담공제(보험)료의 60%
2회	공제(보험)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축산농가 부담공제(보험)료의 40%

(10) 공제(보험)가입금액의 산출

- 가축질병공제(보험) 약관의 공제(보험)가액 산정을 기준으로 공제(보험)기간 중 가축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최대 보유량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 공제(보험)계약자는 향후 가격 상승·하락 또는 사육두수 증가·감소가 예상될 경우 기준가액 기준으로 가액을 높이거나 낮춰 가입(통상 가입금액 기준 50~150% 한도)

(11) 손해평가

-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 전문성 강화, 이해관계인의 참여 배제, 손해평가 분야별 행동강령 마련·교육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손해평가 실시, 손해평가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됨

-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손해평가는 가축질병공제(보험) 약관의 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지급공제(보험)금의 계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 반드시 현장실사 추진
  - 손해평가인은 현장 방문 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자격증을 반드시 패용하고 현장조사 실시, 무자격자는 손해평가 실시 불가
  - 손해평가인은 조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청구서류를 지체없이 지급심사부에 송부, 누락된 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
  - 계약자 및 피공제(보험)자가 지역축협인 경우 해당 축협 소속 손해평가인의 자기손해평가 불가, 인근 지역축협 손해평가인 활용
  - 공제(보험)금 지급심사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수기작성 및 발급을 배제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된 서류 첨부(원칙)
  - 공제(보험)금 청구서류는 수익자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피공제(보험)자와 공제(보험)사고자 일치 여부, 질권설정 여부, 청구서류 위·변조 여부, 수의사 등 발급서류 기재사항 등 누락여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필수 기재사항 등 확인
-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제(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에 자체 수의사 참여를 배제하고, 시·군 공수의사, 타 지역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 실시

#### (12) 공제(보험)금 지급심사

- 공제(보험)금지급심사는 공제(보험)계약자 또는 피공제(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질병공제(보험)사업자가 직접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다만, 청구 공제(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준비를 대리점 등을 통해 제출받되 심사는 본사가 직접 실시)
- 소 등 청구건수가 많고 공제(보험)금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는 손해사정법인에 위탁심사 가능, 사전에 반드시 교육 실시 및 본사심사와 동일한 결제자가 결제
- 공제(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여부), 손해액 산정,

손해보상 방식(비례보상, 실손보상), 공제(보험)금 지급대상(수령자와 지급처 동일여부 확인) 등 심사

- 공제(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청구

○ 공제(보험)금 청구서류 및 공제(보험)금 지급 전 지급심사 강화

-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HACCP)와 연계한 축산물 정보공유(축산물품질평가원)

- 긴급도축시 ①현지조사서, ②수의사 진단서, ③도축장 정산서, ④도축대상 기립불능확인서(도축장), ⑤소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소 이력시스템에서 도축출하 등록 확인 후 출력), ⑥현장조사 및 사고목적물 사진(사고 가축 사진 증거 능력화를 위해 앞·측·뒤·전체 사진 첨부)

- 폐사시 ①현지조사서, ②수의사 검안서, ③소각 또는 매장증명서, ④도체결함에 대한 도축장 정산서, ⑤소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 서류 첨부(소 이력시스템에서 폐사 등록 확인 후 출력), ⑥현장조사 및 사고목적물 사진(사고 가축사진 증거능력화를 위해 앞·측·뒤·전체 사진 첨부), ⑦잔존물처리비용 증빙서류

- 공제(보험)금 지급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작성, 손해평가인 및 심사자가 적정여부 체크 후 서명하여 첨부

- 무자격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손해평가인 관리 철저 및 현지조사서, 소각 또는 매장증명서에 반드시 손해평가인(자격증 일련번호 기재) 및 공제(보험)가입자가 확인 서명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업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13) 공제(보험)금 지급

○ 공제(보험)대상 품목별 가입유형에 따라 가입금액 범위내 자부담을 제외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공제(보험)금으로 지급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시에는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

액에 대해 공제(보험)금 지급

- 자기부담금은 소·말·사슴·양 20%(경주마는 경기장의 30%, 경기장내 5·10·20·30% 중 선택), 돼지·닭·오리 등 가금·꿀벌·토끼·오소리는 5%
- 돼지, 가금의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및 폭염추가 특약은 100·200·300만원 중 선택
- 풍제·수재·설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50만원,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이 없음
-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가 공제(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할 공제(보험)금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다만, 공제(보험)금 청구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급된 서류에 한하며, 수기작성 서류는 불인정)
- 7일 경과시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하는 공제(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 《 공제(보험)금 지급절차 》

- 공제(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농가→공제(보험)사·공제) → 손해평가 및 지급 공제(보험)금 결정(통상 2주, 화재나 풍제·수재·설해로 축사 등 가축 수용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통상 4~6주) → 공제(보험)금 지급(지급공제(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 \* 재해피해 농가는 공제(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 공제(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공제(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공제(보험)금으로 지급

### ③ 지원대상

- 총 공제(보험)료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일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비)는 총공제(보험)료의 20~40% 추가 지원, 실제 자부담은 10~30%

### ④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공제(보험)료의 50%\*

## 보조

**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총공제(보험)료 : 순공제(보험)료 + 부가공제(보험)료
- 순공제(보험)료(위험공제(보험)료+손해사정비) : 질병공제(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질병공제(보험)에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업 관련 법인의 납입 공제(보험)료 지원
- 부가공제(보험)료(예정사업비, 공제(보험)사업자수수료 등 운영비) : 질병공제(보험)사업자가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⑥ 공제(보험)상품 연구·개선**

- 공제(보험) 운영사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축종별 재해피해 특성을 고려하고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도입상품 및 기존 상품에 대한 연구 추진
  - 분기별 또는 필요시 상품개선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 상품연구 시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 농식품부 및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에게 제출

**⑦ 공제(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개발 실시
-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 개발
-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지역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질병공제(보험) 판매·인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⑧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함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질병공제(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
  - 가축질병공제(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공제(보험)상품 및 공제(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서에 따름
-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및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초까지 시·도, 질병공제(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기 전 지자체, 공제(보험)사 등 관련 기관 및 축산농가 설문조사 등 사전 의견수렴 시행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위험관리점검회의 개최, 대농업인 가축질병공제(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8조)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사업계획을 근거로 공제(보험)요율, 공제(보험)약관 등 세부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지역 대리점, 농협, 낙·축협 영업점 등에 통보하여 축산농가에서 공제(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공제(보험)요율 및 공제(보험)약관 변경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②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질병공제(보험) 지방비 전산화에 따른 업무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고, 확정된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을 정하여 12월중순까지 시·도,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사업점검,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위험관리점검회의 개최, 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하여 홍보 철저
  - 연초 지자체 직원 및 각종 협회, 축산농가 대상 권역별 가축질병공제(보험) 설명회 개최 및 축산농가에 가축질병공제(보험) 홍보 팜플렛 배부, 지자체에 포스터 배부,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추진
- 가축질병공제(보험) 상품개선협의회는 현장간담회, 전문가 협의회를 분기별 또는 필요시 개최
-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 공제(보험)사 내부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시스템(농식품부의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보험요율산출기관의 할인·할증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철저
  - 다음연도 시·도 및 시·군·구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한도, 지원두수 한도 등 지자체 지원기준을 파악하여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에게 12월중순까지 통보,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12월말까지 내부시스템에 입력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비 지원기준을 변경 요청한 경우(지자체는 시행일 1주일전까지 농식품에 통보) 공제(보험)사 전산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제(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매월 지자체 가입실적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지자체 정산요청서 공문 통보시(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 지자체 예산잔액·미정산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보 및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 점검·관리

- 지원된 지방비 정산요청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현황을 관리하고, 지연된 시·도 및 시·군·구는 특별관리
-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정산 현황을 알기 쉽도록 매뉴 정상화 및 유지보수 관리 철저
-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의 월보 제출 실적, 지자체 매월 정산요청 내역과 시스템상 지자체 공제(보험)가입실적 합계, 지방비 잔액이 일치되도록 현황 관리
- 매월 월보와 정산내역은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의 가축질병공제(보험)공제(보험)료 지원금액 및 배분(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농가 자부담)의 적정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공제(보험)료 할인·할증 반영 등 사전 적정성 검증 후 농식품부 보고 및 지자체에 정산내역 통보,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폭염·폭설 등 재해, 방역 등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공제(보험)사고 접수현황(계약자, 축사소재지, 축종, 폐사두수, 추정공제(보험)금 등) 요청시 공제(보험)사 자료를 받아 매일 현행화하여 농식품부 보고,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는 가축질병보험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지역 대리점과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평가인 등 대상 교육, 홍보, 운영비 집행 등 세부계획 수립(분야별 월별 추진계획 포함) 후 농식품부에 보고(12월말)
- 가축질병공제(보험) 제도개선 사항 관련 축종별 단체, 지자체, 낙·축·농협, 수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설명회 개최
- 축협 등 대리점을 통하여 선착순 지원, 갱신계약시기 도래 등 사전 안내
- 손해평가인을 위촉하고 자격증 교부, 평가요령 및 응대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관리 철저
- 전체 영업점에 가축보험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부착·비치, TV 광고, 보도자료, 기획기사, 기고 등 홍보 실시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 대상가축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오소리]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8일까지 가축질병공제(보험) 축종별 및 시·도별 가입현황, 공제(보험)금 지급실적(계약건별 상세 내역 첨부),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별) 정산요청 및 정산처리실적 등 월보를 농식품부에 제출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가축질병공제(보험) 지방비 전산화를 추진하고 공제(보험)가입시 국비·지방비를 제외한 농가부담 공제(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부, 보험요율산출 기관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
  -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에 적정하게 가축공제(보험) 사업 운영 및 축협 등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경된 사업시행지침 사전 교육 실시
  - 축산농가에서 공제(보험)가입 요청시 축산업 등록증 등 지원제한, 지자체별 지원기준, 제외대상 등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지방비 지원 비율, 농가당 지원한도에 맞게 공제(보험)료 계산 및 지방비 배정
  - 지자체에서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처리를 위하여 전화 또는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부적격자 지원 취소 등 변경 요청시 즉시 확인하여 조치 후 3일 이내 회신
  - 지자체에서 정산 및 이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 시스템에 가입현황 등 정확한 자료를 1일 단위 업그레йд 실시
  -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완료하고 12월분은 이월하여 익년 1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현황, 자료 등 요청시 적극 협조
  -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발송한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입금하고, 예산 조기 소진 등 사유로 지자체에서 요청시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 후 예산으로 재사용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자체 시스템에 개인별·지자체별·영업점별 공제(보험)가입현황, 시·

도 및 시·군·구비 지원현황 및 환급·추징 등 계약변경현황 등을 관리하고 관련 자료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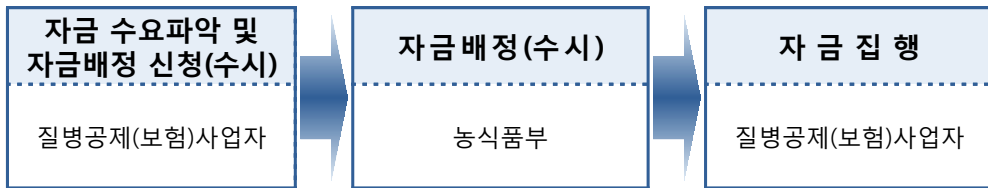
- 시스템상 송부한 자료와 매월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 송부한 월보가 일치되도록 현황 관리
- 농식품부, 지자체에서 지원된 보조금 정산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상 송부하는 자료 추가

### ③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의 가축질병공제(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 전년도 사업시행자의 공제(보험) 가입율과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월별 가입현황 및 자금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

< 3-7 >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의 질병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 검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의 정산결과 검토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및 자금 집행
  - 자금배정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자,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교부신청액 및 교부조건 등 포함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는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식품부(방역관리과)·손보사(정책보험팀)
  - (조사) 손보사(감사·SIU)
  - (수사) 경찰청(수사국 수사1과)·금융감독원(보험조사국 손해보험조사팀)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
  - 개최시기 : 분기별,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범위 : 농식품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등
  - 점검내용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가 ‘경계·심각단계’의 보험금 청구 건으로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가축질병공제(보험) 실태 점검·조사, 보험사고 혐의자 수사의뢰,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공제(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내용 : 공제(보험)계약 체결현황 및 보조금 등 자금집행실적 및 운영현황, 국고보조금 지원의 적합 여부, 부가공제(보험)료(사업운영비, 사업수수료) 세부항목별 집행실적과 사용내역, 공제(보험)사업 목적외 사용, 공제(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시행지침 이행여부, 자체세부사업계획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실시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분기별 위험관리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공제(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가 제시한 “공제(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는 실태점검 실시 또는 수사의뢰
  - 신호단계(공제(보험)금 청구횟수 및 지급액) : 관심→주의→경계→심각
  - 농가별 개인/법인, 지점별 구분, 위험단계 기준은 사고 발생수 및 공제(보험)금 지급액 동시 만족시 적용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공제(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중 경계·심각 신호단계의 공제(보험)금 청구가 있는 안건은 매 분기별 또는 필요시 위험관리 점검회의 상정

< 3 - 86 >

구 분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손해율	개인	100%~150%	150%~200%	200%~300%	300% 이상
조치사항				실태점검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는 사고발생횟수 및 공제(보험)금 지급액 초과로 경계이상 단계인 개인, 법인, 지점에 대하여 자체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분기 말까지 실태점검 실시
  - 자체 실태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 자체 실태점검이 미흡한 경우 또는 위탁심사를 추진한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 본사 서류점검 후 현장점검 실시

##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 농식품부는 공제(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가축질병공제(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

- 가축질병공제(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게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에 통보
  - 부당사유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허위 또는 가공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임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는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공제(보험)계약자(피해공제(보험)자)에 대하여는 공제(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공제(보험)사고 관련 해당 대리점·영업점과 공제(보험)계약자(피해공제(보험)자)에 대해서는 각각 수수료 감액조치 등의 제재를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 및 관련된 수의사 명단 등을 위험관리 점검회의 시에 농식품부에 제출
  - 공제(보험)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군·구 관할 전체 영업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⑤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실적 측정

### 《만족도 조사》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대상 : 사업기간 중 / 농업인 및 가축질병공제(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결과제출 : 10월말까지 조사결과 농식품부에 제출(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시행지침 통보 前 정책반영)

## ⑥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1. 원 칙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2. 사업평가 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식품부

- 평가기간 및 평가대상 : 매년 1월중 /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3.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1월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식품부에 제출(1월 1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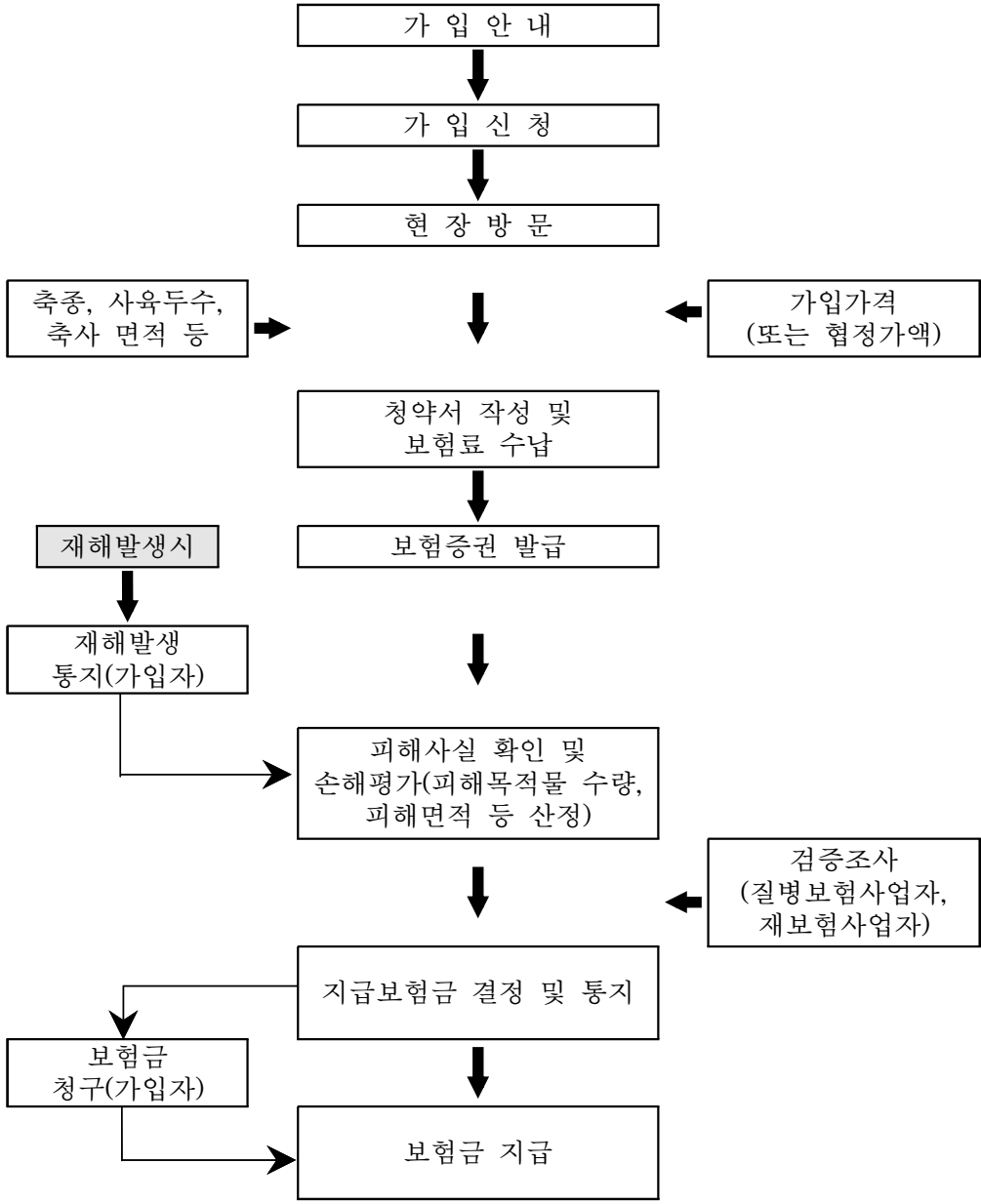
#### 4.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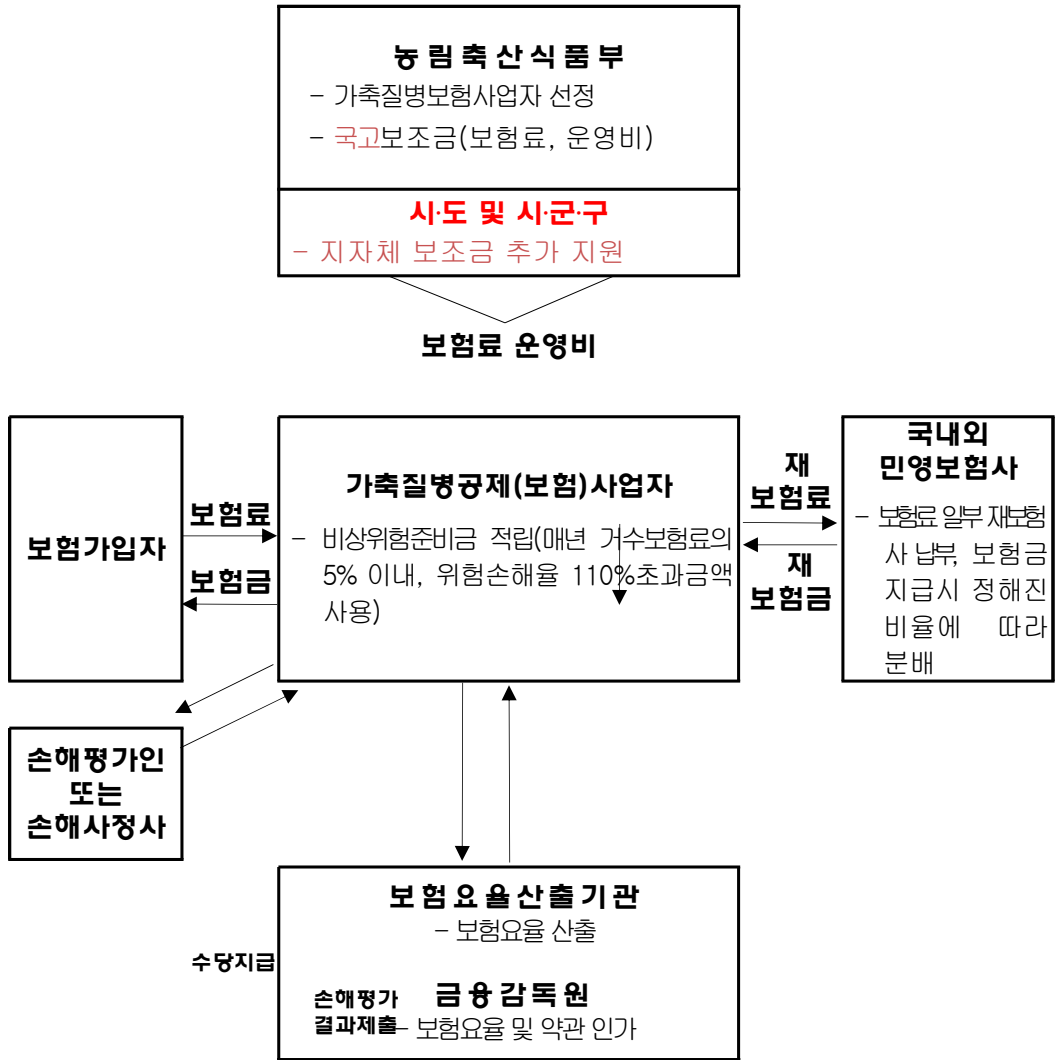
#### 《환 류》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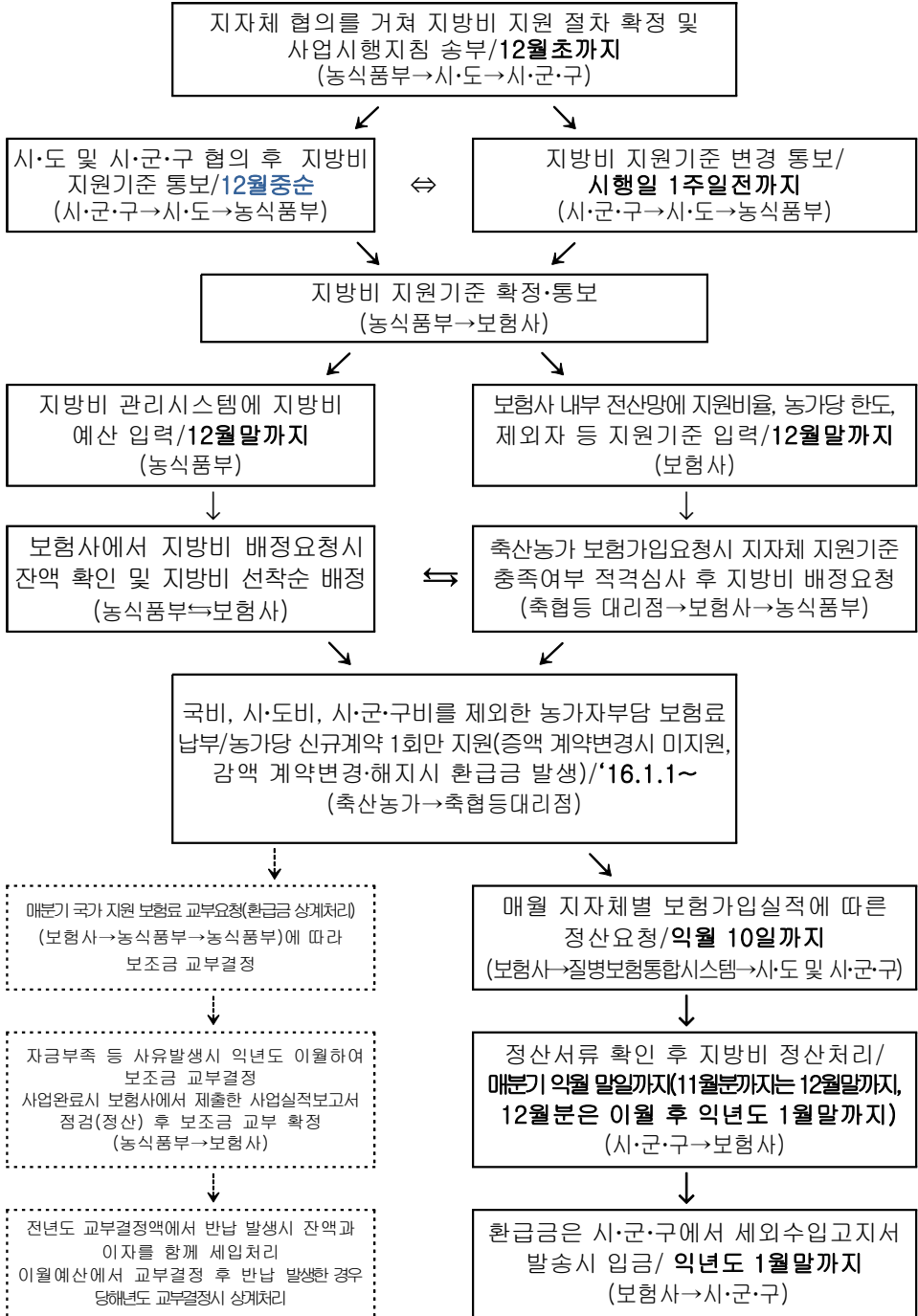
**붙임1** 가축질병보험 추진절차



**붙임2**    **가축질병보험 운영체계**



**붙임3 가축질병공제(보험) 지방비 지원 절차**



<b>붙임4</b>	<b>가축질병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b>
------------	-----------------------------

- (지방비 지원비율·한도) 시·도 및 시·군·구는 최근 가입현황 사전분석 및 상호 협의하여 예산에 적정한 지원비율 및 농가당 지원한도, 영세농만 지원, 제외자 명단 등 지자체별 지원기준 확정 후 농식품부로 12월중순까지 통보
  - 농식품부는 공제(보험)사에 12월중순까지 통보, 공제(보험)사는 12월말까지 시스템에 기준 입력
- (지원기준 변경 통보) 지원비율, 지원한도, 제외자 명단 등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에 시행일 1주일전까지 통보, 농가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은 최대한 자제(소급적용은 불가)
- (1~2월중 선착순 사전 홍보)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등 민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상회보, 보도자료, 각종 교육 등 홍보 철저
- (선착순 지원) 해당 소재지 지자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선착순 지원
  - 축협 등 대리점은 대상자 적격 여부 등 해당 시·군·구에 사전 확인
- (농가부담분만 납부) 축협 등 대리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제외한 농가자부담만 납부하고, 미수납된 지방비는 분기별로 지자체에서 정산 입금
- (신규 1회 지원) 연도내 최초 신규계약 1회만 지방비 지원,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 (증액시 미지원) 계약변경으로 공제(보험)료 증액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불가
- (감액시 환급금 발생) 계약변경, 해지로 공제(보험)료 감액시 시·도 및 시·군·구 환급금은 공제(보험)사에서 익년도 1월말까지 세입 처리
  - 농식품부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 및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시스템에 게시('16.1.10) -> 시·군·구에서 공제(보험)사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16.1.15) -> 공제(보험)사에서 입금 처리('16.1.31한)
  - (환급금 재사용) 예산소진 등으로 지자체에서 요청시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정산 요청시 환급금을 제외하고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 (추경예산)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우선 선착순 지원

- (부적격자 지원무효처리)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 정산 요청시 축산업 미등록, 축산계열화, 제외 통보자 등 지자체 기준에 부적격 대상자 포함시 공제(보험)사에 지원취소 요청 및 취소금액은 예산 잔액에 추가
- (잔액 일부 지원) 농가당 한도금액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잔액 일부만 우선 지원하고, 예산 추가 확보시 농가당 한도 부족금액은 추가 지원
- (시·군·구비 추가확보) 시·도비는 미확보, 시·군·구비만 추가 확보시 지원 비율은 당초 시·도 및 시·군·구 지원 비율을 합한 비율 그대로 적용
- (분기별 정산) 공제(보험)사에서 매월 정산요청내역을 익월 8일까지 농식품부 제출,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공문 및 가축질병공제(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익월 10일까지), 지자체는 대상자 적격여부, 적정 공제(보험)료 산정 등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조기 집행 등 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월보) 공제(보험)사에서 매월 시·도별 가입실적 등 월보를 정산요청내역과 함께 농식품부 제출, 정산내역과 일치여부 등 적정성 검증 후 질병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12월분 정산)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 입금,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은 익년도 이월하여 1월말까지 정산 입금
  - 정리 추정시 예상금액으로 명시이월하고, 익년도 1.10일까지 명시이월 금액 확정, 농식품부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 통보('16.1.10)시 확인 후 정산

## 제5절 운영기반 마련

### 1. 검토배경

#### □ 기존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근거 법령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작물 재해보험·수입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출기관 등의 인프라 활용방안 및 연계운영 가능성 검토
- 동 공제(보험)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 제정 방식과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운영방식 등 비교 분석

### 2. 기존제도 활용가능성 검토

#### 가. 공제(보험) 인프라

#### □ 기존 공제 또는 보험인프라 활용

- 가축재해보험의 상품운영, 계약인수, 손해사정 등 기존의 공제 또는 보험인프라를 활용하여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 가축질병공제(보험)에 상품운영은 약관작성과 보험요율 산출이 대표적임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사항과 보장하는 손해 등 보장내용으로 구분되며, 동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요율이 산출됨
- 가축질병공제(보험) 시행 초기에 공제(보험)사업자가 참고할 참조약관 산출과 이를 기초로 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동 공제(보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필요함
  - 참조약관은 국내외 운영사례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 참조순보험요율은 국내 유사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함



## □ 수의서비스 제공

- 동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의 핵심은 축산농가에게 가축질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 효과적인 가축질병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가축진료활동에 따른 표준진료수가 마련되어야 하고,
  - 가축질병관리활동에 투입될 수의사를 선정하여 농가에 알려줌으로써 농가가 수의사를 선택하여 수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
- 동 공제(보험)의 서비스를 위하여 수의사 관련단체와 협약을 맺어 적절한 수의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가 적절한 수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동 공제(보험)사업은 축산농가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임

## □ 진료기록 통합관리

- 수의사들의 예방·진단·치료 등 진료행위기록이 효과적으로 집적되고 가축질병공제(보험)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공제(보험) 운영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제(보험)의 진료기록을 수의사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함

## □ 보험전산망 이용한 진료기록 교환 및 심사

- 아울러 수의사들의 진료행위기록이 효과적으로 보험회사에 전달되어야 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가능해야 함
  - 수의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진료기록통합시스템을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전산망과 연계하여 보험회사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 가축진료행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험사와 수의사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함

## 나. 공제(보험)약관 작성

### □ 상품설계에 따른 약관 작성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가축질병공제(보험) 약관을 선택가능하도록 동 공제(보험)상품을 설계함
  - 종합보장과 가축질병치료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 설계 요청이 많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동 공제(보험)약관도 이에 부응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음

### □ 공통사항

- 공제약관을 가축질병보장(Section I)과 가축재해보장(Section II)로 구분하여 보장내용이 기술됨에 따라 공통사항을 두어 계약의 일반사항을 기술함

### □ 보장내용( Section I , II )

- 주계약으로 가축재해위험보장과 가축질병보장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상품 설계방안에 따라 가축질병보장(Section I)과 가축재해보장(Section II)로 구분하여 약관을 작성

## 다. 공제(보험)요율 산출

### □ 최초요율 산출

- 서울우유협동조합, 충남 진료비 지원사업 등의 유사 서비스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
  - 현재 국내에서 유사한 계약진료를 행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최초 위험률로 산출

### □ 보험요율의 검증 및 조정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최초 산출요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요율을 산출함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참조준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

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축질병공제(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공제(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상품개발 편의성을 제공함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책성보험의 요율을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험가입자와 공제(보험)사업자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

## 라. 수의사회

### □ (표준)진료수가(안) 마련

- 진료수는 수의사의 수의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댓가로 수요자인 축산농가(2차적으로 공제(보험)운영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진료수가(안)을 만들고 이를 축산농가와 공제(보험)운영사가 합의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의사회로 하여금 동 진료수가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축산농가의 대표와 공제(보험)운영사가 협의하여 보완한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동 확정된 진료수가를 적용함

## 3. 근거법령 마련

### 가. 농어업재해보험법 활용 방안

#### □ 농어업재해보험법

- (목적)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정의)

- " " . . 가  
 . . (鳥獸害) . ( " " )

· ( " )  
 " )  
 - " "

○ (재해보험의 종류) , , 가  
 . ,  
 가 ,

○ (보험의 목적) ,  
 가

-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상 가축재해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

< 3 - 87 > 가

구 분	소			돼지	말	가 금	기타 가축	축 사
	I (송아지)	II (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주~ 12개월미 만	한(육)우 12개월 ~13세미 만 (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 사육 건물 및 부속 건물
가입형태	포괄	포괄	개별	포괄	개별	포괄	포괄	포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 (보상범위)

가

< 3 - 88 >

( 8 )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을 말하며, 풍재·수재·설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조수(潮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함

○ (보험가입자)

가

가

- : 7 1

- : 7 1 2

-가 : 7 2 가

- : 7 3

○ (보험사업자)

「

」

, 「

」

, 「

」

○ (재정지원)

가 가

( " )

" )

가 가

가

##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가축질병치료비 보장 여부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를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로 구분하여,
  - 가 (鳥獸害) ·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가축의 질병을 대상으로 축산농가가 그 치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재산피해로 하여 가축질병치료보험의 운영이 가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질병을 고시하면 가축질병보험의 운영이 가능함

## 나. 가축질병공제(보험)법 제정 방안

###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가축(재해, 질병)보험을 독립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가축에 대한 폐사 및 질병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가축질병치료비를 포함하는 가축재해보험 운영 근거를 별도의 법률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 가축질병치료비 보장만을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별도의 법률을 운영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질병보장을 포함하는 가축재해보험법 또는 가축질병보험만을 별도로 보장하는 가축질병보험법으로 구분하는 경우 법률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가축재해보험(질병포함) 또는 가축질병보험은 전염병에 의한 폐사보장을 하지 않는 한 국가재보험을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해평가

역시 농작물재해보험 외에는 큰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음

< 3-89> 가 가 ( )53)

가축재해보험법(수정안) 제1장 총칙	가축질병보험법(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심의회)	제3조(심의회)
제2장 가축재해보험사업	제2장 가축질병보험사업
제4조(가축재해보험의 종류 등)	제4조(가축질병보험의 종류 등)
제5조(보험목적물)	제5조(보험목적물)
제6조(보상 범위)	제6조(보상 범위)
제7조(보험가입자)	제7조(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9조(보험요율의 산정)	제9조(보험요율의 산정)
제10조(보험모집)	제10조(보험모집)
제11조(수급권의 보호)	제11조(수급권의 보호)
제12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제12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제13조(업무 위탁)	제13조(업무 위탁)
제14조(회계 구분)	제14조(회계 구분)
제15조(분쟁조정)	제15조(분쟁조정)
제16조(「보험업법」의 적용)	제16조(「보험업법」의 적용)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제3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3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18조(가축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18조(가축질병보험사업의 관리)
제19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제19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제20조(시범사업)	제20조(시범사업)
제21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1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2조(보고 등)	제22조(보고 등)
제4장 벌칙	제4장 벌칙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53) 세부 법률안 내용은 첨부3 참조

## 제6절 IT기술과의 연계방안

### 1. 검토배경

#### □ 진료기록 및 보험금 청구 효율화

- 축산농가에 대한 수의사의 예방, 진료, 약품처방 등 질병관리활동이 시스템적으로 기록되어 공제(보험)운영사에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의사는 자신의 질병관리활동이 손쉽게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공제(보험)운영사도 그 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이를 위한 인프라가 IT기술과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 진료심사

- 수의사에 의한 진료활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진료심사 또한 필요함
  - 제3자에 의한 진료심사를 위하여는 진료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이 진료심사자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절차도 IT기술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2. 진료활동 시스템

#### □ 대한수의사회 수의처방시스템

##### 1) 개요

- 수의사처방제
  - 수의사 처방제란 임상 수의사의 처방으로 동물에 대한 항생제나 기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 하며, 적절한 투약으로 안전하게 소유 동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2013년 8월부터 시행되며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임상 수의사 진료 후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함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으로 새롭게 구축된 동물 의약품 처방 및 조회 가 가능함
- 수의사가 동물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품 판매업체에 내역이 전송되어 축산농가가 처방전을 통해 약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임상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자, 축산농가는 처방 및 판매, 구매 내역을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음

2) 시스템 구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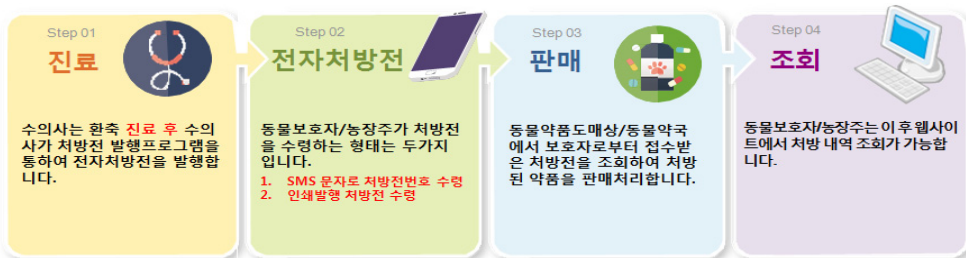
○ '13.8.2부터 항생제 및 호르몬제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의사처방제의 적기에 시행함과 안정적인 시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3 - 90 >

'13년 구축 내용	'14년 구축 내용	'15년 구축 내용
1. 처방전발행 및 중계시스템 - 사용자 공인인증 등 2. 판매기록 시스템 3. 처방기록 조회시스템 4. 모니터링시스템 5. 각종통계 및 보안관리 시스템	1. 처방전발행 및 중계 시스템 스마트화 2.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화 3. 동물병원 진료관리시스템 4. 동물약품정보관리시스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도입 및 운영환경 업데이트 동물약품 정보포털 추가 구현 관리자포털 기능 강화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 5. 교육/홍보 강화

○ 운용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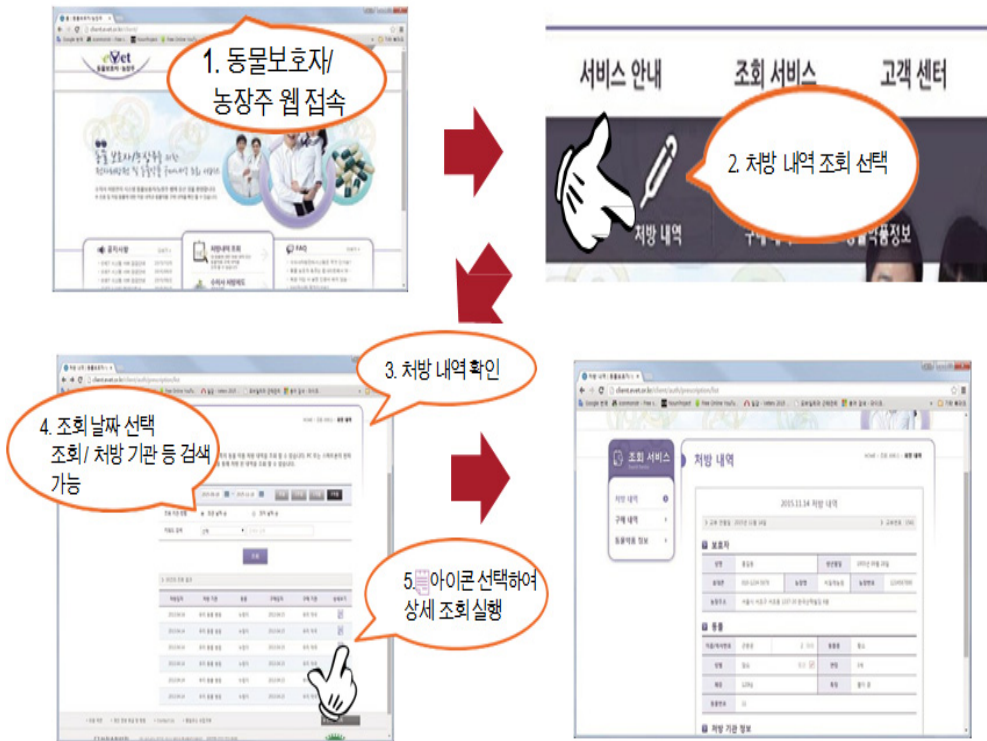
- 동물병원으로부터 처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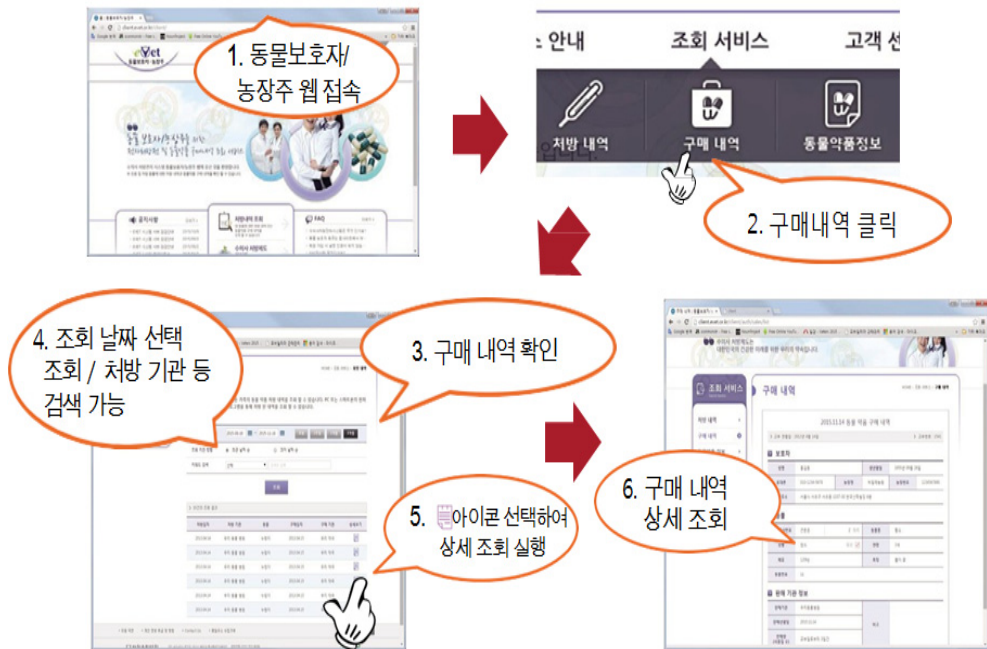
- 동물병원에서 투약 및 판매시



- 처방내역 조회



## - 구매내역 조회



## 3. 공제(보험) 사업자 연계

### 가. 요율산출기관 인프라 활용

#### □ 법률상 보험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전산망 운영기관

- 「보험업법」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험관련 정보(통계)의 수집·제공·전산망 운영기능을 수행하도록 설립목적과 업무 등 정보의 취급 전반에 대해 규정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 및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하여 설립(법 §176 ①)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수행하는 보험정보관련 업무에 대해 규정
  -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법 §176 ③ 2.)
  -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시행령

## §86 2.)

- 보험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의 공표(법 §176 ⑨ 2.)
- 보험요율산출기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시행령 §102 ③)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관리망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법 §7 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33 ②)

## □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물리적 조치 확보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02.10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확보·시행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금융위에 보고하고,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95.1월 이후 행안부 등록 및 관보 게재 조치를 이행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기술적 물리적 보안을 위해 다수의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
  - 외부Network 보안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웹방화벽, DDoS대응장비 운영
  - 내부보안을 위한 서버보안, 네트워크 접근제어, DB접근제어, 내부유출방지 시스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대응시스템 등을 운영
  - 전산기기실보호를 위한 정맥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운영

## □ 다수의 전산망 구축·운영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92년 보험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다수의 정보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보험회사·공제기관·정부기관·지방자

치단체 등과 연계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주관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국토부, 손보사, 육운공제,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이 연계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과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
- 환경부 주관의 환경책임보험 가입관리를 위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연계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구축과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등을 위해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사가 연계되어 있는 '보험정보망' 구축·운영
- 보험회사와 무역회사간 적하보험 청약과 증권발급을 위한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EDI시스템'을 구축·운영, 손보사, KNet(무역전산망)과 연계

## 나. 시스템 연계 사례

###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이라 함)에 따른 의무보험의 효율적인 가입관리를 위해 가입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은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보험회사, 수탁사업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02년부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을 위탁·운영 중
  -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운영하고, 시·군·구 등 지자체는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입관리시스템 운영 업무와 보장사업은 각각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손해보험협회에 위탁·운영

&lt; 3-91 &gt;

가

기관	역 할
국토교통부	-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
관할관청·지 자체장	- 등록 등 행정처분시 의무보험의 가입확인(자동차손배법 제42조제1항) - 상기 확인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자료의 송부(법 제7조제2항)
시장·군수· 구청장	- 의무보험 가입명령(법 제6조제3항) -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법 제6조제4항) - 미가입자동차 운행한 자에 대한 통고처분(법 제51조제1항) -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법 제48조제3항제1호, 제5항)
보험회사	- 계약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만기안내(법 제6조제1항) - 의무보험계약자료, 해지자료 및 미갱신자료의 시·군·구청 통지(법 제6조제2항)
보장사업자 (손보험회)	-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확인(법 제30조제1항) - 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의 통지(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 보상금 지급내역의 통지(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보험요율산 출기관	-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 운영 업무위탁 근거(법 제7조, 제45조제3항, 시행령 제35조제4항) - 의무보험 가입관리 관련 기초자료 집적/관리 -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료 추출 및 제공 - 의무보험 계약정보 제공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단속하는 사범경찰(경찰청)에게 의무보험 계약정보 제공 ·의무보험 만료 예정자, 만료 후 미갱신 5일 경과자 등에게 휴대 폰 문자안내를 통해 보험가입 관련 정보 제공
보험가입자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자는 관할관청에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별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시행규칙 제3조1항)

#### □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 사례

-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라 함)에 따라, 권한 및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해 ‘16년 의무보험 도입과 동시에 가입관리업무 수행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보험회

사 등의 역할은 다음 표와 같음

- 환경부는 제도를 운영하고, 시·도지사를 통해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

< 3 - 92 >

기관	역 할
환경부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제도 관리,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 운영 - 의무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6개월 이내)
시·도지사	-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영업정지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보험회사	- 계약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만기안내(법 제19조제4항) - 의무보험계약자료, 해지자료 및 미갱신자료의 인허가기관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 통지(법 제19조제5항)
보장사업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제급여의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등(법 제25조)
보험요율산출 기관	-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보험상품개발 및 시범사업의 실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
보험가입자 (시설의 사업자)	- 해당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법 제19조제3항)

### □ 가입관리 사례 비교에 따른 시사점

#### ○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가입관리 실현

- 의무보험 가입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산망 구축을 통해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인 가입관리가 가능

#### ○ 업무처리규정 마련을 통한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복잡한 업무협조 체계가 요구되며, 따라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사례에서와 같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역할을 구체화한 가입관리 업무처리규정이 필요

## 다. 진료기록 및 보험정보 연계방안

### □ 기 구축 전산망을 이용한 연계 개요

○ 지정수의사↔처방시스템(NDMS)↔보험전산망(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사 연계망 활용

- (대상정보) 수의사 진료활동(처방기록) ⇒ 대한수의사회(NDMS) ⇒ 보험 전산망관 ⇒ 공제(보험) 사업자
- (공제(보험)정보) 공제(보험) 운영사 ⇒ 보험전문기관 ⇒ 수의사회 ⇒ 지정 수의사

○ 기관별 역할

-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처방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공제(보험) 통보자료 오류체크 및 송부
- (보험전산망) 통계 layout(진료기록, 보험정보) 작성/유지보수, 오류체크 (Editing)
- (공제(보험)) 진료기록 접수, 보험계약정보 작성 및 제공

○ 고려사항

- 기 운영 중인 타 의무보험 시스템 연계 참고
- 수의사단체와 공제(보험) 운영사간 정보 공유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 □ 진료기록 및 보험정보 연계방안

○ (대상정보 관리) 가입대상 시설 및 업소에 대한 최신성 유지를 위한 관리 기능 구현

- (진료기록자료) 수의사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료기록을 입력, 수의사회는 진료기록의 오류여부를 체크하고 보험전산망에 송부
- (공제(보험)정보) 수의사가 수의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본계약정보를 공제(보험)운영사가 작성하여 보험전산망에 송부



- (연계기능)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가축질병공제(보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교환
  - (대한수의사회 연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와 연계하여 관련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 (공제(보험)운영사 연계) 가축질병공제(보험) 계약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그램 구현
- (정보집적) 가축질병공제(보험) 보험요율산출 및 도입효과 분석 등을 위한 필요 정보 집적
  - (처방기록) 수의사의 보험가입 축산농가 대상 가축에 대한 진료기록 정보
  - (보험계약정보) 가축질병공제(보험) 계약 및 사고 정보
- (시스템 관리) 가축질병공제(보험) 계약정보 및 처방기록 교환시스템 관리
  - 연계 처리 결과 확인
- (보안 대책) 가축질병공제(보험) 계약정보 및 처방기록 교환시스템 보안관리
  - 시스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적용

## □ 전문기관을 이용한 효율적 가입관리

### 1) 필요성

- 보험정보 수집·관리 업무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보험정보 처리 전문 지식과 인력, 조직,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이 효율적
  - 보험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보 오류 확인, 정정, 재수집 등 품질관리 업무는 보험정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

### 2) 보험관련 정보 취급기관의 법적요건

- 취급기관은 대한수의회와 공제(보험) 운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교환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공제(보험) 운영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법적 근거가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제 1항 제 2호, 제 21조 제 1항 제 1호

○ 따라서, 보험관련 정부 취급기관은 법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제 1항 제 2호, 제 21조 제 1항 제 1호  
가 가 가 가

3) 고유식별번호 처리 관련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 176조 제 3항 제 2호, 제 5항, 제 86조 제 2항, 제 102조 제 3항 제 54)  
< 3-8 >



54)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도적, 물리적 보안체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

## 제4장

# 실증실험 및 효과분석

### 제1절 실증실험

#### 1. 개요

##### □ 목적

- 수의사-축산농가를 연계하여 일정기간 질병관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개선 효과 분석

##### □ 조사대상 및 개체수 선정

- 사전질병관리활동이나 진료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지정하여 관찰
  - 사전질병관리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비교목장의 경우 번식지표

##### ○ 쫓소목장

- 질병관리활동 목장(처리목장) : 3개
- 질병관리활동을 하지 않는 목장(비교목장) : 1개

##### □ 실험기간

- 2016. 8.1 ~ 2016. 11.30

## □ 분석항목

- 폐사·도태율
- 번식 지표
- 우유생산 및 유질관련 지표(젖소)
- 질병발생률

## □ 분석방법

- (분석방법) 2 표본(가축질병공제(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에 대한 실험전·후 일정기간 관찰 값의 변화 차이 검증
  - 2집단에 대한 실험 전·후 반응(종속)변수의 변화율이 차이가 있는지 유무에 대한 검정을 통하여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
- (분석변수)
  - 설명(독립)변수: 예찰 및 가축질병치료서비스 제공
  - 반응(종속)변수: 질병발생률, 폐사·도태율, 번식지표, 우유생산 및 유질관련 지표(젖소) 등

## 2. 실증실험 결과

### □ 젖소목장

- 조사 기간: 2016.8.1. ~ 2016.11.30
- 조사 장소: 경기 파주, 강원 평창
- 조사 방법: 계약진료를 시행하는 목장과 그렇지 않은 목장을 선정하여 도태율, 번식지표, 유질관련지표를 조사함
- 조사 내용
  - (도태율) 이유전, 이유~분만전, 분만후
  - (번식지표) 첫분만개월수, 분만후 첫발정일, 분만후 첫수정일, 첫수정에 대한

수태성공률, 수태당수정횟수, 분만후 임신일, 공태일수, 유산율, 분만간격, 번식장애로 인한 도태율, 비유일수, 건유일수, 평균산차

- (유질관련지표) 평균유량, 체세포수, 세균수 20만 미만의 소의 비율, 월간 임상형 유방염 발생률, 연간 임상형 유방염 발생률, 유방염 도태율, 연간 유두 외상률

< 4 - 1 > 가

구분	처리목장	처리목장			비교목장
		목장1	목장2	목장3	목장4
처리 두수	경산우 두수	55	120	33	42
	미경산우 두수	44	91	68	53
도태 율	이유전	0	1	2/3	1
	이유~분만전	0	1	1/3	0
	분만후	2.5두/월	1.5두/월	0.25/월	2.0두/월
번식 지표	첫분만개월수	25	27	25	29
	분만후 첫발정일	50			70
	분만후 첫수정일	72	78	86	95
	첫수정에 대한 수태성공율	5%	31%	5%	8%
	수태당수정횟수	3회	2회	2.3회	2회
	분만후 임신일	180	202		215
	공태일수	201		229	217
	유산율	10두/년	4두/년	2두/년	10두/년
	분만간격	461일	530일	442일	436일
	번식장애로 인한 도태율	9두/년	2두/년	2두/년	8두/년
	비유일수	223	430		192
	건유일수	71	94		73
	평균산차	2.4	2.2	1.4	2.5
유질 관련 지표	평균유량	34	26		31
	체세포수	13.5만	11만		10.8만
	세균수 20만 미만의 소의 비율	80%	90%		90%
	월간 임상형 유방염 발생율%	28두/4개월	9두/4개월		7두/4개월
	연간 임상형 유방염 발생율%	50두/1년	25두/1년		30두/1년
	유방염 도태율	6두/1년	0두/1년		2두/1년
	연간 유두 외상율	0	0		0

○ 조사기간이 짧아 충분히 질병관리활동이 이루어진 목장과 그렇지 않은 목장 간 실험결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음

- 도태율은 이유전 처리목장인 목장3에서 2/3두(연간 2두), 비교목장에서 1두가, 이유-분만전 처리목장인 목장3에서 1/3두(연간 1두), 비교목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분만후 처리목장의 경우 월간 각각 2.5두·1.5두·0.25두로

- 비교목장(2두/월)보다 도태율이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번식지표의 대표지표인 분만간격은 처리목장의 경우 각각 461일·530일·442일로 비교목장(436일)보다 길었으며, 비유일수는 처리목장의 경우 각각 223일·430일로 비교목장(192일)보다 길었음
  - 유질관련 지표를 보면, 세균수 20만 미만의 소의 비율은 처리목장의 경우 각각 80%·90%로(1목장 미확보) 비교목장(90%)보다 높지 않았으며, 4개월 간 임상형유방염 발생두수도 처리목장의 경우 각각 28두·7두로 비교목장(9두)보다 낮지 않았음

### 3. 실증실험 한계와 분석 전환

#### □ 분석 한계

- 가축의 질병발생에 계절적인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4개월로서 제한)
  - 본 실증실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질병발생 자료는 목장의 전반적인 질병 발생 상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가축의 질병 발생 시 목장 자체에서 1차적으로 자가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에 의한 질병발생 조사는 전체 질병발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 분석 전환

- 실증실험분석이 관찰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대안적 방법으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약진료를 시행하는 젓소 사육농가와 계약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표를 분석하는 것으로 전환함
  - 분석은 2-3년간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함

## 제2절 실증실험 대안 분석

### 1. 분석 설계

#### □ 분석 내용

##### ○ 분석변수

- 설명(독립)변수 : 예찰 및 가축질병치료·관리서비스 제공
- 반응(종속)변수 : 번식지표, 질병치료비용, 폐사·도태율, 우유생산 및 유질 관련 지표(젖소) 등

##### ○ 반응변수

- 번식지표는 가임가능 가축의 번식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i) \text{ 번식지표} = \frac{\text{가임개체수합}}{\text{가임가능 관찰개체수}}$$

번식지표는 아래와 같이 연간 송아지 생산두수로 표현할 수 있음

$$i-1) \text{ 연간 두당 송아지 생산두수} = \frac{\text{연간송아지 생산두수}}{\text{경산두수}}$$

- 질병손실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손실을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ii) \text{ 질병손실} = \frac{\text{질병발생건수}}{\text{관찰개체수}} \times \frac{\text{질병치료비}}{\text{질병발생건수}}$$

질병손실은 아래와 같이 연간 두당 방역관리비로 표현할 수 있음

$$ii-1) \text{ 연간두당 방역관리비} = \frac{\text{방역관리비}}{\text{사육두수}}$$

- 폐사·도태율은 폐사 또는 도태로 인하여 상실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iii) \text{ 폐사·도태율} = \frac{\text{폐사·도태 발생건수합}}{\text{관찰개체수}}$$

폐사·도태율은 아래와 같이 연간 폐사율로 표현할 수 있음



iii-1) 연간폐사율 =  $\frac{\text{연간폐사두수}}{\text{연양경산두수}}$

- 젖소 사육의 궁극적 목적은 양질의 우유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산유량 및 납품가격이 평가되어야 함

산유량은 젖소의 우유생산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iv) 생산성(젖소) =  $\frac{\text{생산량합(유질불량미판매량 제외)}}{\text{우유생산관찰개체수}}$

이는 곧 연간 두당 산유량으로 표현할 수 있음

iv-1) 연간두당 산유량 =  $\frac{\text{연간 원유 판매량}}{\text{착유우두수}}$

- 양질의 우유생산으로 농가의 납품가격이 평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v) 연간 1당 평균 납품가격 =  $\frac{\text{연간 원유 판매액}}{\text{연간 원유 판매량}}$

- 젖소의 우유생산능력 및 유질에 따른 납품가격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iv + v) 젖소 연간 생산액 =  $\frac{\text{연간 원유 판매액}}{\text{착유우두수}}$

< 4-2> ( )

반응(종속)변수	조정변수
질병피해율(발생빈도×심도, 폐사제외) (전두수 기준)	연간 두당 방역관리비
폐사·도태율(경산우 기준)	연간 두당 폐사율
번식지표(경산우 기준)	연간 두당 송아지 생산 두수
우유생산(착유우 기준)	연간 산유량(납품)
유질관련 지표(착유우 기준)	연간 평균 유가(납품)

○ (효과분석) 두당분석

i) 연간 두당(전 두수) 방역관리비 증감액 =  $\frac{\text{방역관리비}}{\text{사육두수}}$

ii) 연간 두당(경산우) 폐사손익 증감액 = 두당 폐사율 차이 × 두당 순이익

×50%(연중양 폐사 가정)

iii) 연간 두당(경산우) 송아지 생산손익 증감액 = 두당 송아지 생산두수×송아지가격

iv) 연간 두당(착유우) 우유생산액 손익 증감액 = 두당 원유판매액 차이

- (젖소 전체 분석) 젖소 두당 총효과(방역관리비 증감액, 폐사손익 증감액, 송아지 생산손익 증감액, 우유생산 손익 증감액)에 해당 두수를 곱하여 젖소 전체 분석

□ 사용통계

○ (서울우유 파주지역 젖소농가) 최근 3년간 서울우유협동조합 젖소농가 중 파주유우진료소와 계약진료(최근 3년간 : 2013-2015)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이하 “계약진료목장”)와 그렇지 않은 농가(이하 “비계약진료목장”)를 비교하여 분석

- (농가가수) 2015년 말 계약진료목장 중 최근 3년간 관찰이 가능한 목장은 118개이며, 동일 지역의 동일 기간 동안 비계약진료목장은 평균 34개임
- (경산두수 및 착유두수) 계약진료목장의 평균 경산두수 및 착유두수는 50두 및 40두 내외이며, 비계약진료목장의 평균 경산두수 및 착유두수는 39두 및 30두로 10여두 차이

< 4 - 3 >

구분	농가수	경산두수	착유두수	평균 경산두수	평균 착유두수
<b>진료목장</b>	<b>354</b>	<b>17,828</b>	<b>14,461</b>	<b>50.4</b>	<b>40.9</b>
2013	118	5,844	4,784	49.5	40.5
2014	118	6,057	4,890	51.3	41.4
2015	118	5,927	4,787	50.2	40.6
<b>비진료목장</b>	<b>102</b>	<b>3,937</b>	<b>3,128</b>	<b>38.6</b>	<b>30.7</b>
2013	34	1,301	1,043	38.3	30.7
2014	34	1,334	1,063	39.2	31.3
2015	34	1,302	1,022	38.3	30.1
<b>전체</b>	<b>456</b>	<b>21,765</b>	<b>17,589</b>	<b>47.7</b>	<b>38.6</b>
2013	152	7,145	5,827	47.0	38.3
2014	152	7,391	5,953	48.6	39.2
2015	152	7,229	5,809	47.6	38.2

- (착유우 규모별) 비계약진료목장은 착유우 기준으로 주로 40두 미만의 목장이 가장 많고 60두 이상의 농장은 없으나, 계약진료목장의 경우 40두 미만의 목장이 가장 많고 60두 이상의 목장도 존재함

< 4 - 4 > ( )

구 분	농가수	경산두수	착유두수	평균 경산두수	평균 착유두수
<b>진료목장</b>	<b>354</b>	<b>17,828</b>	<b>14,461</b>	<b>50.4</b>	<b>40.9</b>
20두 미만	17	352	282	20.7	16.6
40두 미만	182	6,623	5,309	36.4	29.2
60두 미만	110	6,490	5,294	59.0	48.1
80두 미만	24	1,917	1,546	79.9	64.4
80두 이상	21	2,446	2,030	116.5	96.7
<b>비진료목장</b>	<b>102</b>	<b>3,937</b>	<b>3,128</b>	<b>38.6</b>	<b>30.7</b>
20두 미만	22	444	337	20.2	15.3
40두 미만	55	2,018	1,580	36.7	28.7
60두 미만	25	1,475	1,211	59.0	48.4
<b>전 체</b>	<b>489</b>	<b>22,724</b>	<b>18,301</b>	<b>46.5</b>	<b>37.4</b>

- (분만나이 및 산차) 계약진료목장의 평균분만나이 및 평균산차 각각 4.5세, 2.4산이며, 비계약진료목장은 평균 4.5세, 2.4산으로 동일함

< 4 - 5 >

구 분	농가수	경산두수	분만두수	평균분만나이	평균 산차
<b>진료목장</b>	<b>354</b>	<b>17,828</b>	<b>15,550</b>	<b>4.5</b>	<b>2.4</b>
2013	118	5,844	5,101	4.5	2.4
2014	118	6,057	5,247	4.5	2.5
2015	118	5,927	5,202	4.6	2.5
<b>비진료목장</b>	<b>102</b>	<b>3,937</b>	<b>3,321</b>	<b>4.5</b>	<b>2.4</b>
2013	34	1,301	1,060	4.4	2.4
2014	34	1,334	1,120	4.6	2.4
2015	34	1,302	1,141	4.6	2.4
<b>전 체</b>	<b>456</b>	<b>21,765</b>	<b>18,871</b>	<b>4.5</b>	<b>2.4</b>

## 2. 효과분석

### 가. 두당분석

#### ① 연간 두당 방역관리비 증감액

○ (젓소+송아지 1두당 연간 두당 방역비 증감) : 59,842원 증가

- 전국기준의 1두당 방역관리비는 최근 2년간 젓소 평균 150,406원, 송아지 42,637원, 젓소와 송아지를 합산하여 평균 104,252원이 소요됨
- 같은 기간 질병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계약진료목장(파주 118농가 중 33호 선정)에 대한 동 기간 방역관리비는 젓소와 송아지를 합산하여 164,106원이 소요됨
- 전국방역관리비와 파주 계약진료목장(33호)의 진료비 차이는 평균 59,842원인 것으로 추정됨

< 4 - 6 > ( , )  
(금액단위 : 원)

구 분	전국			파주(33호)			차 이
	2014년	2015년	평균	2014년	2015년	평균	
젓소	150,819	149,993	150,406				
송아지	40,585	44,688	42,637				
경산우비율	0.576	0.567	0.572				
두당진료비	104,125	104,402	104,252	169,754	158,457	164,106	59,842

#### ② 연간 두당 폐사손익 증감액(= 경산우 두당 폐사율 차이×두당 순이익×50%) : 16,616원(경산우 기준)

○ 두당 평균 폐사손익 증감액

- (젓소 1두당 제적우 비율 차이)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지역 젓소농가 중 계약진료목장과 비계약진료목장의 제적우 비율은, 계약목장의 경우 경산우 대비 31.1%, 착유우 대비 38.4%이며, 비계약진료목장의 경우 경산우대비

33.7%, 착유우대비 42.4%임

제적우가 경산두수 또는 착유우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진료목장과 비계약진료목장의 제적우 비율의 차이만을 그 효과로 추정하면, 경산우 대비 2.5% 감소, 착유우 대비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4-7> ( )

구분	농가수	경산 두수	착유 두수	제적우	제적우비율 (경산우대비)	제적우비율 (착유우대비)
<b>진료목장</b>	<b>354</b>	<b>17,828</b>	<b>14,461</b>	<b>5,547</b>	<b>31.1%</b>	<b>38.4%</b>
2013	118	5,844	4,784	1,514	25.9%	31.6%
2014	118	6,057	4,890	1,816	30.0%	37.1%
2015	118	5,927	4,787	2,217	37.4%	46.3%
<b>비진료목장</b>	<b>102</b>	<b>3,937</b>	<b>3,128</b>	<b>1,325</b>	<b>33.7%</b>	<b>42.4%</b>
2013	34	1,301	1,043	387	29.7%	37.1%
2014	34	1,334	1,063	360	27.0%	33.9%
2015	34	1,302	1,022	578	44.4%	56.6%
전체	456	21,765	17,589	6,872	31.6%	39.1%

- (젓소 1두당 연간 순수익) 전국기준의 젓소 1두당 연간 순수익은 최근 2년간 평균 2,615,650원으로 나타남

< 4-8> ( )

비목별	2014	2015	평균
총수입(A)	9,729,867	10,056,865	9,893,366
일반비(B)	6,150,362	6,112,944	6,131,653
비용합계(C)	7,307,384	7,248,049	7,277,717
소득(A-B)	3,579,505	3,943,921	3,761,713
순수익(A-C)	2,422,483	2,808,816	2,615,650

- (두당 평균 폐사손익 증감액)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지역 젓소농가 중 비계약진료 농가의 제적우비율(경산우 기준)과 질병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계약진료농가에 대한 제적우비율(경산우 기준) 차이를 두당 순수익을 곱한 금액은 두당 33,233원인 것으로 분석됨

< 4-9>

구분	1두당 폐사율 차이 (전체-대상)	1두당 순수익(원)	1두당 순이익 차이(원)
3년 평균	2.5%	2,615,650	33,233



## &lt; 4-11&gt; 가 ( )

구 분	초유떼기		분유떼기	
	암	수	암	수
2011	260	136	478	376
2012	146	48	341	251
2013	60	19	232	179
2014	77	21	272	200
2015	74	200	279	521
평균	123	85	320	305
(암수평균)	104		313	

- (두당 평균 폐사손익 증감액) 경산우 1두당 생산두수 차이를 송아지(초유 떼기) 가격에 곱한 두당 이익 차이는 두당 3,083원인 것으로 분석됨

## &lt; 4-12&gt;

구 분	두당 생산두수 차이	초유떼기 가격	두당 이익 차이
2년 평균	0.03	104천원	3,123원

## ④ 연간 두당 우유생산액 손익 증감액 = 착유우 두당 원유판매액 차이

## ○ 두당 평균유대 증감액

- (젖소1두당 평균유대 차이) 비진료목장의 착유우 1두당 평균유대는 최근 3년간 9,207천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병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계약진료 농가에 대한 동 기간 평균 두당 유대는 9,820천원으로 두당 612천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lt; 4-13&gt;

구 분	농가수	착유두수	두당 유대	차이 (진료-비진료)
<b>진료목장</b>	<b>242</b>	<b>9,776</b>	<b>9,951</b>	<b>601</b>
20두 미만	15	235	9,465	751
40두 미만	122	3,525	9,767	810
60두 미만	76	3,664	9,891	-268
80두 미만	15	967	9,928	-
80 이상	14	1,385	10,680	-
60두미만 합계	213	7,424	9,818	468
<b>비진료목장</b>	<b>85</b>	<b>2,456</b>	<b>9,350</b>	<b>-</b>
20두 미만	24	354	8,714	-
40두 미만	43	1,226	8,956	-
60두 미만	18	876	10,159	-

- (규모 고려) 목장의 규모가 클수록 두당 유대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므로 동일 규모를 대상으로 비진료목장과 진료목장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경우 진료목장의 착유우 1두당 평균유대는 최근 3년간 9,678천원으로 비계약 진료목장 대비 471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비진료목장의 두당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진료목장의 평균유대를 계산하면 9,650천원이며 이 경우 차이는 443천원임)

< 4 - 14 > ( )

구 분	농가 수	착유 두수	두당 유대	규모별 구성비	평균(비진료목장 구성비 적용)	차이
<b>진료목장</b>	354	14,461	<b>9,678</b>	100.0%	9,650	443
20두 미만	17	282	9,474	2.6%		
40두 미만	182	5,309	9,593	48.8%		
60두 미만	110	5,294	9,774	48.6%		
<b>비진료목장</b>	102	3,128	<b>9,207</b>	100.0%		
20두 미만	22	337	8,712	10.8%		
40두 미만	55	1,580	8,688	50.5%		
60두 미만	25	1,211	10,022	38.7%		

## 나. 젖소 전체 분석

### □ 젖소 1두당 손익 차이 분석

- (젖소 전체 분석) 두당 총효과(방역관리비 증감액, 폐사손익 증감액, 송아지 생산손익 증감액, 우유생산 손익 증감액)에 해당 사육두수를 곱하여 각각의 구분에 의한 손익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손익을 분석
- 동 공제(보험)의 도입으로 치료비가 246억 순증하지만, 폐사감소이익 38억원, 분만증가이익 7억원, 우유생산이익 810억원을 감안하여 총 612억원의 이익이 발생함
- 이는 젖소 사육두수(송아지 포함) 기준으로 1두당 15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lt; 4 - 15 &gt; 가 ( )

구분	대상	1두당 손익(원)	대상두수	손익(백만원)
방역치료비	젓소 전체	-59,842	411,342	-24,616
폐사손익	경산우	16,616	233,254	3,876
분만손익	경산우	3,123	233,254	728
우유생산손익 (규모고려)	착유우	601,000 (443,000)	182,922	109,936 (81,034)
합계 (규모고려)		561,650 (403,650)		89,924 (61,022)

주) 우유생산손익 중 규모고려는 수의사 진료목장 규모가 비진료 목장보다 커 규모에 따른 유대(유량(L) × L당 유가)의 자연증가분이 존재하므로 동일규모의 진료목장과 비진료목장을 비교하여 재계산한 것을 의미함

## □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손익 미반영

- 앞의 분석은 수의사에 의한 질병예방 및 치료서비스가 부가되었을 때의 증가되는 통상적인 폐사부분을 고려한 것이나,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이 사전에 통제될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 공제(보험) 도입으로 폐사율이 37%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 아울러, 이스라엘의 사례에서와 같이 수의사는 예방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질병발생 자체가 억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을 적절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 [참고1] 일본 가축공제진료 점수표(2014년 4월, 농림수산성)

## 목 차

### [고시]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와 그 외의 행위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점수 등을 결정하는 건(쇼화 30년 (1955년) 10월 농림성 고시 제778호)  
 일부개정 평성 26년 (2014년) 3월 농림수산성 고시 제466호

< 차 례 >

가축공제진료점수표 .....  
 약가기준표 .....  
 범례 .....  
 취급방법 .....  
   주사약 .....  
   제1부 내용약 .....  
   제2부 외용약 .....  
   제3부 주입삼입약(투입약) .....  
   제4부 그외 (평성 26년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 .....  
 약품명색인 .....

○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와 그 외의 행위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쇼화 30년 10월 농림성 고시 제778호)

-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쇼화 22년 농림성령 제95호)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와 그 이외의 행위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점수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쇼화 30년 3월 31일 농림성 고시 제279호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와 그 외의 행위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점수를 정하는 건)와 같

은 날짜의 농림성 고시 제280호 (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가축공제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진료와 그 외의 행위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종류에 상당하는 점수 등을 정하는 건)는 폐지한다.

1. 농림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으로 약칭한다) 제33조 제1항과 제3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와 그 이외의 행위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점수(점수표는 생략)
2. 규칙 제33조 제1항과 제34조의 3, 제1항의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일정의 가액 (가격) 10엔

일부개정 평성 26년 3월 27일, 농림수산부고시 제466호

○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쇼화 22년 농림성령 제95호) 제33조 제1항과 제3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쇼화 30년 10월 1일 농림성고시 제778호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와 그 외의 행위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점수 등을 결정하는 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평성 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의 가축공제진료 점수표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과 같이’는 생략하고, 그 관계 서류를 농림수산성 경영국 보험관리관과 도서부현청 (도서부현청)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축공제진료 점수표

번호 종별	점수		비고																								
	B종	A종																									
<b>(제1 진료비용)</b>			진료란, 병상의 식별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실시하는 병력청취 (문진), 망진, 촉진, 타진, 청진, 골경도 검사 및 일반적 검사를 말하며, 이화학적 검사와 현미경적 검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1. 재진	70	7	두 번째 진료 이후 간단히 진찰 만을 하는 것으로 약물치료, 검사, 주사, 처치, 지도와 수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왕진			<p>1. 왕진 거리는, 편도만을 계산하고, 한 농가에 2두 이상의 환축이 있는 경우는 왕진 1회로 한다.</p> <p>2. 두 농가 이상 연속하여 왕진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환축을 진료하기 위한 거리로 한다. 그러나 그 거리가 다음의 환축을 진료하기 위한 거리와 그 수의사의 진료 시설을 기점으로 한 거리와 비교하여 거리가 더 먼 경우에는 해당 수의사의 진료 시설을 기점으로 한 거리를 왕진 거리로 한다.</p> <p>3. 야간, 심야 또는 약천후 시의 왕진에 대해서는 B종에 다음 표의 점수를 더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15%;">500미터까지</th> <th style="width: 15%;">4킬로까지</th> <th style="width: 15%;">4킬로를 초과하는 경우 매 4킬로마다 곱함</th> </tr> </thead> <tbody> <tr> <td>야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d style="text-align: center;">67</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r> <td>약천후 시</td> <td></td> <td></td> <td></td> </tr> <tr> <td>심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67</td> <td style="text-align: center;">133</td> <td style="text-align: center;">23</td> </tr> <tr> <td>야간 약천후 시</td> <td></td> <td></td> <td></td> </tr> <tr> <td>심야 약천후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p>4.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심야 제외)를 말하며 심야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말한다.</p>		500미터까지	4킬로까지	4킬로를 초과하는 경우 매 4킬로마다 곱함	야간	33	67	12	약천후 시				심야	67	133	23	야간 약천후 시				심야 약천후 시	100	200	30
	500미터까지	4킬로까지	4킬로를 초과하는 경우 매 4킬로마다 곱함																								
야간	33	67	12																								
약천후 시																											
심야	67	133	23																								
야간 약천후 시																											
심야 약천후 시	100	200	30																								

500M 이내			5. 악천후 시란, 폭풍 또는 폭설을 말한다.
	84	16	
500M초과시	170	39	<p>1. 왕진 거리가 4킬로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2킬로미터까지는 4킬로미터의 그 배수를 곱하고, B종에 29점 A종에 10점을 더하고, 1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4킬로미터의 그 배수를 곱하고 B종에 30점 A종에 10점을 더한다.</p> <p>2. 악천후 시 또는 길이 험하여 부득이하게 걸어서 왕진한 경우에는 도보 거리가 1킬로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4킬로미터까지는 1킬로미터의 배수를 곱하고 B종에 66점을 더하고 4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킬로미터의 배수를 곱하고 B종에 11점을 더한다.</p> <p>3. 적설지역 (별표에 표기한 지역을 말한다)에서 적설기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왕진한 경우에는 B종 및 A종에 4점을 더하고 왕진 거리가 4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4킬로미터의 배수를 곱하고 B종과 A종에 더하여 4점을 더한다.</p>
3. 체재진	889	9	<p>1. 하룻밤에 대한 점수로 한다.</p> <p>2. 왕진한 심야를 포함하여 6시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p>
4. 입회진	517	8	
<b>[제2 약물치료 비용]</b>			
5. 약물치료			<p>1. 내복약, 선정약, 포대약, 도포(바르는)약, 살포약, 점안약, 주입약 및 삽입약 (원충 및 사상충 이외의 기생충의 구제약을 제외)을 축주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p> <p>2.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품가격 기준표에 준하여 점수를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p> <p>3.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의해 한 종류 이상의 의약품을 특정한 분량으로 특정한 용법에 적용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p>
조제를 필요로 하는 것	72	13	
조제를 필요로 하지	55	5	

않는 것			
<b>[제3 문서비용]</b>			동일내용에 대해서는 1회의 교부에 한한 점수로 한다.
6. 진단서	100	5	처방전 및 도축장법 시행 규칙 (쇼화 28년 후생성령 제44호) 제15조 제2항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7. 검안서	100	5	
8. 지도서	100	5	
<b>[제4 검사비용]</b>			검사재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그러나 혈액의 검사를 위한 채혈 및 도뇨 (카테터를 이용한 뇨 채취)에 의한 채뇨는 제외한다.
9. 채혈	67	8	
10. 유즙 간이검사	57	7	CMT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세포 수 검사, catalase, 염소량, pH, 전기전도도, 혈유 등의 검사를 말한다.
11. 유즙 케톤체 검사	60	26	유즙 중의 케톤체를 효소법에 의하여 간이 측정시험편 (strip)에 의해 측정한 경우를 말한다.
12. 유즙 현미경적 검사	156	45	1. 브리도법 (bleed법: 세균수와 체세포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한 세포 수 검사 등을 말한다. 2. 체세포 수 자동 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을 100점 A종을 41점으로 한다.
13. 유즙 이화학적 검사	138	34	NAGase활성, lactoferrin, endotoxin 등의 검사를 말한다.
14. 미생물 간이검사	109	38	무염색 및 보통염색의 현미경적 검사 (trichomonas, 피부진균증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5. 미생물 특수검사	182	41	특수 염색에 의한 현미경적 검사를 말한다.
16. 약제 감수성 검사	164	53	1. disk법 (직접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2. disk법 (간접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을 245점 A종을 79점으로 한다. 3. 임상형 유방염에 대해서 두 분방 이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한 분방별로 B종에 93점 A종에 32점을 더한다.
17. 세균분리배양 검사	252	86	1. 검체재료로부터 원인균을 순 배양한 균종을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임상형 유방염에 대해서 두 분방 이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한 분방별로 B종에 104점 A종에 43점을 더한다.

			<p>3. 균의 유무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B종을 92점 A종을 42점으로 한다.</p> <p>4. '3'의 경우에 임상형 유방염에 대해서 두 분방 이상 균의 유무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한 분방에 대하여 B종에 54점 A종에 24점을 더한다.</p> <p>5. 혐기성배양을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142점 A종에 81점을 더한다.</p>
18. 혈액 일반검사	95	12	<p>1. 비중, 적혈구삼투압저항, 혈구용적, 출혈 응고시간, prothrombin 시간, 부분 thromboplastin 시간 등의 검사를 말한다.</p> <p>2. 혈청 또는 전혈에 대한 평판응집반응에도 이 점수를 적용한다.</p>
19. 혈구 수 측정검사	75	21	<p>1. 혈구 수 자동 계수장치에 의한 혈구 수의 측정을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p> <p>2. 시계법 (눈으로 현미경을 보면서 측정하는 방법)에 의한 혈구 수의 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을 150점 A종을 19점으로 한다.</p>
20. 혈액 현미경적 검사	132	21	혈액상, 혈액기생원충 등의 검사를 말한다.
21. 혈액 생화학적 검사			<p>1. 시험지, 간이측정기, 분광광도계 등에 의한 혈액성분의 측정을 말한다.</p> <p>2. (2)부터 (4)까지의 검사를 두 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검사 중 가장 큰 기본 점수에 같이 실시한 검사에 증점 점수를 더한다.</p>
[1]총단백질 알부민 ZTT 혈 중 요소 질소 (BUN) Creatinine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유리지방산 혈청칼슘 혈청마그네슘	54	24	<p>검사는 각 종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가측으로부터 일회에 채취한 혈액을 이용하여 5종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회당 점수에 관계없이 검사의 종류수에 따라서 다음에 기술된 점수에 따라 산정한다.</p> <p>① 5종 이상 7종 이하 B종 270점 A종 120점</p> <p>② 8종 또는 9종 B종 324점 A종 144점</p> <p>③ 10종 이상 B종 378점 A종 168점</p>

혈청무기인 나트륨 칼륨 염소 혈청철분 AST (GOT) ALT (GPT) OCT Gamma-GTP LDH CK ALP Bilirubin 혈색소량			
[2]혈청단백질분획 혈장fibrinogen Mucoprotein Alpha1 산성당단 백 Lipoprotein Sialic acid	119	36	검사를 2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1종이 증가함에 따라 B종에 64점, A종에 24점을 더한다.
[3]Fibrin 분해산물 (FDP) Apolipoprotein 암모니아 혈중유산 -hydroxylactic aid 셀레니움 LDH아이소엔자임 글루타치온 peroxidase 가스트린 메트헤모글로빈 BSP시험	176	48	검사를 2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1종이 증가함에 따라 B종에 92점, A종에 31점을 더한다.  이물배설능검사를 말한다.
[4]비타민 A 비타민 E -카로틴 인슐린	268	137	검사를 2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1종이 증가함에 따라 B종에 174점, A종에 103점을 더한다.



Progesterone 혈액가스 Endotoxin			유즙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측정된 경우에도 이 점수를 적용한다.
22. 혈청학적 검사	242	26	시험관에 응집반응, 보체결합반응, 중화시험 등을 말한다.
23. 기생충 검사	135	24	내·외 기생충, 자충 또는 충란의 현미경적 검사 등을 말한다.
24. 직장 검사	186	7	1. 직장 안에 손을 넣어 소화기계, 비뇨기계 또는 생식기계의 모든 장기에 관한 내부 촉진을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2. 질 검사 (질경 검사, 질내진 검사)를 포함한다.
25. 천자 검사	249	33	골수, 임파절, 활액낭 등의 천자 또는 채취 재료의 검사를 말한다.
26. 생체조직학적 검사	493	52	간장 천자, 비장 천자, 심막 천자, 신장 천자 등 생체천자법에 의한 조직, 자궁내막, 종양 조직의 채취 또는 그 조직학적 검사와 자궁환류액, 폐포세정액 등의 세포검사진단을 말하며, 직장 검사를 포함한다.
27. 뇨 검사	44	10	1. pH, 단백질, albumose, 혈색소, 근색소, indican, 빌리루빈, urobilinogen, nitrite, amylase, 포도당, 비중, 인산염, 아세톤 등의 검사 및 암모니아 반응과 잠혈 반응의 검사를 말한다. 2. NAGase (N-acetyl-D-glucosaminidase)와 뇨침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종이 증가함에 따라 B종을 147점, A종을 33점으로 한다.
28. 위 내용액 검사	325	32	1. pH와 microflora의 검사를 말한다. 2. pH검사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을 189점, A종을 14점으로 한다. 3. 암모니아, nitrite nitrogen, 저급 지방산 (VFA)을 측정된 경우에는 B종을 605점, A종을 76점으로 하고, 2종 이상 측정된 경우에는 1종이 증가함에 따라 B종에 279점, A종에 45점을 더한다. 4. endotoxin을 측정된 경우에는 B종을 738점, A종을 209점으로 한다.
29. X-ray 검사 촬영	819	188	1. 소형 (휴대용 등)의 장치를 사용한 경우

투시	849	261	<p>로서 디지털영상을 포함한다.</p> <p>2. 중형 이상의 장치 (대동물 진료용 X-ray 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4절 필름을 사용한 경우, B종을 863점, A종을 232점으로 하고, 큰 필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B종을 902점, A종을 271점으로 한다.</p> <p>3. 필름의 장수에 관계없이 이 점수를 적용한다.</p> <p>촬영, VTR기록, 디지털영상 처리 또는 출력한 기록을 포함하며 검사부위 수 또는 기록 매수에 관계없이 이 점수를 적용한다.</p>
30. 심전도 검사	222	56	<p>1. 심전도 기계를 이용하여 순환기 장애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p> <p>2. 심음·심전도 기계를 이용하여 심음도·심전도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B종을 344점, A종을 195점으로 한다.</p>
31. 초음파 검사	253	87	<p>1.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 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p> <p>2. 고분해능 probe를 이용한 검사 또는 도플러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B종을 451점, A종을 285점으로 한다. 그러나, 복강 내 장기 (심장, 간장, 신장 등) 또는 말의 관절 (건 등의 주위 연부조직을 포함한다.)의 검사에 적용하며 번식장애의 검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32. 체강 내 이물 검사	60	7	<p>동물용 금속이물 탐지기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p>
33. 자궁 경관 점액 검사	138	24	<p>자궁 경관 점액을 채취 또는 현미경적 검사를 말한다.</p>
34. 난관 개통 검사	333	23	<p>직장 검사를 포함한다.</p>
35. 발굽병 검사	203	24	<p>1. 발을 들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p> <p>2. 두 다리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이 점수를 적용한다.</p>
36. 내시경 검사	334	67	<p>경성경, fiberscope 등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그러나 복강 내 검사 또는 관절 각내 검사를 실시한 경우 B종을 1030점, A종을 399점으로 하고, 복강 내 검사에 대해서는 직장 검사를 포함한다.</p>
37. 검안 해부한 경우 소·말	800	62	

중돈 해부하지 않은 경 우	495 273	62 6	
(제5 주사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회에 대한 점수를 말하며 동일 종류의 주사약을 필요양에 따라 주사기를 2개 이상 경우에도 1회로 한다.</li> <li>원충 또는 사상충 이외의 기생충에 구제약의 주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li> <li>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점수를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요추경막외마취 또는 요천추부경막외마취를 위하여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하지 않는다.</li> <li>혈청 등에 대해서는 치료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며,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상 또는 수술의 경우에 실시하는 과상풍 혈청 주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li> </ol>
38. 피하 주사	64	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회의 주사량이 1000 mL를 넘는 경우에는 B종에 32점을 더한다.</li> <li>수액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25점을 더한다.</li> </ol>
39. 근육 내 주사	64	12	
40. 정맥 내 주사	92	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회의 주사량이 1000 mL를 넘는 경우에는 1000 mL를 넘을 때마다 B종에 32점을 더한다.</li> <li>수액관을 사용한 경우 (점적 주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B종과 A종에 25점을 더한다.</li> <li>유치침 (고정 테이프, 연결관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27점을 더한다.</li> <li>생후 60일령 이내의 송아지의 정맥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13점을 더한다.</li> <li>동맥 내 주사에도 적용하고, B종을 218점으로 한다.</li> </ol>
41. 점적 주사	275	5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적 장치에 의한 지속적인 정맥 내 주사를 말한다.</li> <li>1회의 주사량이 1000 mL를 넘는 경우에</li> </ol>

			는 1000 mL를 넘을 때마다 B종에 32점을 더한다. 3. 유치침 (고정 테이프, 연결관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27점을 더한다.
42. 관절강 내 주사	210	14	
43. 척수강 내 주사	329	74	지주막강에 도달하는 주사를 말한다.
44. 요추 주사	270	74	1. 요추의 경막 외강에 도달하는 주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2. 전요추 경막의 마취와 요천추 경막의 마취에 대해서는 개복술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B종에 63점을 더한다.
45. 미추 주사	155	14	미추의 경막외강에 도달하는 주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46. 난소 직접 주사	271	16	난소 실질 내 직접 주사 또는 난종 내 직접 주사를 말하며, 직장 검사를 포함한다.
(제6 처치 비용)			
47. 투약			1. 원충 또는 사상충 이외에 기생충 구제약의 투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3. 조제하여 투약한 경우에는 B종에 16점, A종에 10점을 더한다.
위 카테터를 사용하지 않는 투약	58	5	
위 카테터를 사용한 투약	135	7	1. 위 카테터를 이용하여 위 내 가스를 제거한 경우에는 B종에 57점을 더한다. 2. 카테터를 이용하여 초유를 투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8. 세척			약액을 사용한 세척을 말한다. 눈 세척에는 점안투여를 포함한다.
눈 세척·누관 세척·비강 세척 또는 질 세척	70	20	
귀 세척	176	35	1. 귀 세척에는 고실 세척을 포함한다. 2.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방광 세척	178	37	
암컷	236	37	
수컷			
49. 방광 내 약재 주입			1.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암컷 수컷	128 168	12 11	2. 방광 내 약재 주입에 앞서서 배뇨를 시킨 경우에는 B종에 암컷은 25점 수컷은 39점을 더한다.
50. 찜질법	98	48	찜질 재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51. 도포  물약 연고	55 61	5 11	붕대재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52. 분무	56	6	
53. 기관 내 약재 분 무	101	15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54. 제1위 내 용액 투 여	467	11	제1위 내 용액을 채취·투여 하는 것을 말한다.
55. 위 세척	337	22	
56. 관장	102	19	
57. 요도 확보  암컷 수컷	133 162	5 4	요도 카테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58. 사혈	152	11	
59. 자궁 세척  소 말 종돈	701 781 556	130 210 210	세척액과 직장 검사를 포함한다.
60. 자궁 내 약재 투 입	241	9	1. 직장 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3. 약재 주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64 점, A종에 3점을 더한다.
61. 태반 정체 처치  소·종돈  말	242  759	10  10	자궁 정체 처치 후, 의약품에 주·투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소에 대해서는 태반을 자궁 소구에서 분리하여 제거한 경우에는 B종에 363점을 더하며, 태반을 제거 직후에 자궁 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120점을 더한다.

			태반 정체 처치 직후에 자궁 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200점을 더한다.
62. 물리 치료	179	13	자외선 치료, 초단파 치료와 그 외에 전기, 광선, 방사선 등에 의한 치료를 말한다.
63. 유방 내 약재 주입	57	4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64. 일으켜 세우기	337	22	에어매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에 250점, A종에 23점을 더한다.
65. 외상 치료			세척, 도포, 봉합 등 일체의 치료 처치와 붕대 재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63점을 더한다.
작은 외상(20 cm까지) 제1회	160	32	외상이 근육, 장기에 도달하는 경우의 치료 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117점, A종에 49점을 더한다.
제2회 이후	78	15	
큰 외상 (20 cm이상)	378	63	외상이 근육, 장기에 도달하는 경우의 치료 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151점, A종에 72점을 더한다.
제1회	160	32	
제2회 이후			
66. 제4위 변위 간이 정복	249	5	
67. 발굽병 처치	535	50	1. 발굽병 검사를 포함한다. 2. 발굽병 수술 후 치료에도 적용한다. 3. 처치에 필요한 의약품과 붕대 재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32점을, 발굽 블록 또는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181점을 더한다. 4. 2다리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다리 하나 당 B종에 298점, A종에 31점을 더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리 하나 당 B종과 A종에 32점을, 발굽 블록 또는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리 하나 당 B종과 A종에 181점을 더한다. 5. 제2회 이후의 점수에 대해서는 B종 483점, A종 50점으로 한다.
68. 그 이외의 외과적 처치	112	29	1. 처치, 수술 후 치료 (제2회 이후의 점수를 규정한 것과 발굽 질병 수술 후 치료를

			<p>제외한다.), 주사침천자 (여러 개의 침으로 충혈된 부분을 찔러 울혈된 혈액을 배액), 부목 포대, 그 외의 일반 외과적 처치를 말한다.</p> <p>2. 처치의 동반된 의약품과 붕대 재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32점을 더한다.</p>
69. 진정 시키기	92	12	<p>1. 제6 처치비용과 제8 수술비용 등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p> <p>2.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p>
<b>[제7 지도 비용]</b>			
70. 지도	146	5	<p>난포낭종, 황체낭종, 발육부전황체 (황체형성부전), 난소발육부전, 난소정지, 배란 지연 (배란장애), 난소위축, 케톤증, 제4위 변위 (수술한 경우를 제외한다.), 지방간, 기립불능증후군 (분만 전·분만 후 기립불능증), 유열과 송아지의 설사·폐렴에 대하여 두 번째 진료 이후 한번만 적용한다.</p>
<b>[제8 수술 비용]</b>			
두부수술			<p>수술에 필요한 주사, 세척, 도포, 분무 등 일체의 치료 처치 및 붕대 재료와 의약품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요추경막외마취와 요추경막외마취를 실시하여 개복한 경우에는 요추 주사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또한, 진정 또는 전신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정 시키기 또는 마취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그 외에 재왕절개, 자궁탈정복, 난산보조와 자궁염전정복을 실시한 경우에 사용한 자궁이완제, 그리고 개복과 개흉수술을 실시한 경우에 2000 mL를 넘게 사용한 수액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p>
71. trephination	378	67	<p>1. 1개에 대한 점수이다.</p> <p>2. 세척을 포함한다.</p>
72. 안과 수술	378	67	<p>1. 안대를 포함한다.</p> <p>2. 안구적출수술의 경우에는 B종을 621점, A종을 98점으로 한다.</p>

73. 치아 고르기 줄로 고르기 소·종돈 말 짧게 자르기 소·종돈 말	185 353  283 452	22 89  49 117	옆으로 난 이 (ramps), 날카로운 이 (shear mouth), 계단 형태의 이 (step mouth) 등을 줄 (file) 또는 plane으로 고르거나 짧게 자르는 것을 말한다.  Dental cutter를 이용하여 짧게 자르는 것을 말한다.
74. 발치  소·종돈 말 과치, 유치 구치 열치, 영구 구치	321  489 561	28  96 96	1. 하나의 치아에 대한 점수이다. 2. 치조골막염 등에 의한 치아적출의 경우에는 B종에 493점, A종에 76점을 더한다.
75. 비경단열수술 경부수술	679	108	비경단열의 봉합수술을 말한다.
76. 기관절개	352	108	
77. 식도이물제거	337	22	
78. 식도절개	582	97	
79. 악벽교정술 4	336	419	
80. 흉복부수술 흉강천자	223	40	흉수제거를 위한 흉강천자를 말하며, 흉강 내저류액에 확인을 위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흉강천자는 진료에 포함된다.
81. 위천자	175	32	약재의 주입을 포함한다.
82. 제4위 변위 간이 정복수술	603	147	De Lahunta법, Toggle pin법 등의 경피적 간이 정복수술을 말한다.
83. 개흉수술  소·말 종돈	965 7 337 5	853 427	1. 2000 mL 이내에 수액에 사용한 의약품 을 포함한다. 2. 2000 mL 이상으로 사용한 수액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 으로 점수를 더한다.
84. 개복수술			1. 직장검사를 포함한다. 2. 2000 mL 이내에 수액에 사용한 의약품 을 포함한다. 3. 2000 mL 이상으로 사용한 수액제에 대



소·말 제왕절개술	675 2	881	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장관수술	682 2	749	사용한 자궁이완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제1위 절개술		698	장염전, 장중첩 등의 수술을 말하며 제3위와 제4위 수술 (제4위 변위 정복수술을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제4위 변위 정복수술	571 5	707	제4위 변위 정복수술의 일부로서 실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개복수술 중돈 (제왕절개)	479 1		1. 우측 변위의 경우에는 B종에 1069점을 더한다. 그러나 우측 변위의 정복수술과 동시에 제3위의 염전 정복을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1197점을 더한다.
		560 403	2. 제1위 절개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제4위 변위 정복수술의 일부로서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B종에 1418점, A종에 330점을 더한다.
	363 6		개복을 통한 지방괴사증, 중피종, 복막유착 및 간원인대산존의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92 2		
85. 장관천자	255	39	약재의 주입을 포함한다.
86. 허니아 정복수술	169 1	110	수술적 방법으로 정복한 경우를 말한다.
87. 적출수술	713	142	방선균증, 포도당균증, 병적 고환 등의 적출을 말한다.
88. 질탈정복	272	76	1. 압정법에 의한 정복으로서 세척, 안마(마사지), 압박포대, 압정기 사용 등의 처치를 포함한다. 2. 음문봉합에 의한 질탈정복을 수행한 경우에는 B종에 53점을 더한다.
89. 질탈정복수술 봉합법 관혈법	624 129 3	176 202	button법 등에 의한 수술을 말한다.
90. 자궁탈정복	190 9	328	사용한 자궁이완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91. 직장탈정복 봉합법	276	80	

관혈법 소·말 중돈	687 593	164 164	송아지의 항문설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306점을 더한다.
92. 난산처치  소·말  중돈	678  411	107  97	<p>송아지의 자세이상 등의 원인으로 분만곤란이 된 경우에 인공적으로 실시하는 처치 (인공파수, 과대태아 잡아당기기, 태아의 자세교정, 방향교정, 위치교정 등의 정복 등)를 말하며 사망한 송아지의 적출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난산처치를 실시한 경우에 30분을 경과해도 분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B종에 509점을 더한다.</li> <li>2. 사용한 자궁이완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li> <li>3. 태아 분만 후의 송아지에 대한 소생술 (태수의 흡인과 산소 흡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305점, A종에 123점을 더한다.</li> <li>4. 절태 (태아의 머리, 다리 자르기와 내장 적출 등을 말한다.)를 실시한 경우에는 절태 시에 실시한 의약품에 주·투입, 도포, 주사, 자궁세척 등에 관계없이 B종을 2866점, A종을 242점으로 한다.</li> </ol> <p>난산처치를 실시한 경우에 분만간격이 30분을 넘은 경우에는 B종에 306점을 더한다.</p>
93. 자궁염전정복  태아 회전법 어미소 회전법	842 144 0	104 10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궁염전을 정복한 경우와 자궁염전을 정복하고 태아를 빼낸 경우 및 사망태아의 적출을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li> <li>2. 사용한 자궁이완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li> <li>3. 개복에 의한 자궁염전을 정복한 경우에는 B종에 2551점, A종에 433점을 더한다.</li> </ol> <p>서있는 자세에서 정복을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후지를 들어올리는 방법에도 적용한다.</p>
94. 유방절개수술	180 3	22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음부 동맥 결찰수술에도 적용한다.</li> <li>2. 유방절제수술의 경우에는 B종에 1042점</li> </ol>

			을 더한다.
95. 유두협착수술	401	86	1. 유두절개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23점을 더한다. 2. 2개 이상의 분방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한 분방이 늘어남에 따라 B종에 117점, A종에 17점을 더하고, 유두절단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같이 B종에 23점을 더한다.
96. 유두수술	814	76	2개 이상의 분방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한 분방이 늘어남에 따라 B종에 298점, A종에 44점을 더한다.
97 방광수술	522	97	개복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4489점, A종에 380점을 더한다.
98. 요도절개수술	872	134	요도루 형성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B종에 738점을 더한다.
다리수술			
99. 골절정복 관혈정복술	741 3	2396	1. 골접합판을 사용하여 정복한 경우를 말한다. 2. 골접합판과 골수핀으로 정복한 경우에는 B종을 8815점, A종을 2944점으로 한다.
비관혈정복술	816	245	3.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249점을 더한다.
창외고정술	415 6	1080	고정처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63점을,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249점을 더한다.
100. knuckling정복	711	226	1. 고정처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32점을,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181점을 더한다. 2. 두 다리 이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한 다리가 증가함에 따라 B종에 457점, A종에 190점을 더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다리마다 B종과 A종에 32점을,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다리마다 B종과 A종에 181점을 더한다.
101. 탈구정복	796	225	인대, 건 등의 손상부위에 고정처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63점을,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249점을 더한다.
102. 슬개관절 탈구 정복수술	705	117	관혈수술의 경우를 말한다.
103. 발굽수술	822	84	1. 발굽검사를 포함한다. 2. 체관부 또는 각질부 병소를 절개 또는 적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포대재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32점을, 발굽블록 또는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B종과 A종에 181점을 더한다. 3. 두 다리 이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한 다리가 증가함에 따라 B종에 543점, A종에 58점을 더한다. 그러나, 신축성 접착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다리마다 B종과 A종에 32점을, 발굽블록 또는 기부스 포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다리마다 B종과 A종에 181점을 더한다. 4. 발굽절제수술의 경우에는 B종을 1713점, A종을 132점으로 한다.
그 이외의 수술			
104. 절개수술			농양, 여드름, 종기, phlegmon (봉와직염), 좌상 등의 절개 (환부의 절개, 배농, 약액 세척 등 절개에 필요한 일체의 치료처치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포대재료를 포함한다.
작은 절개 (20 cm까지)	325	81	
제1회	182	41	
제2회 이후			
큰 절개 (20 cm이상)	706	135	관절절개 (관절강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이 점수를 적용한다.
제1회	264	68	
제2회 이후			
105. 마취술	365	52	1. 전신마취에 한한다. 2.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약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한다.
106. 소락	145	17	점상소락, 선상소락, 천자소락 등을 말한다.
(제9 입원 비용)			

107. 입원			1. 1일마다의 점수를 말한다. 2. 사료비 및 남방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말	253	37	
중돈	97	19	

- [주]1. B종의 항에 관련된 점수는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 A종의 항에 관련된 점수는 제3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 본 표에 표시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매번 관련지역 농림수산성경영국장과 상담하며 가장 근접한 진료로서 준용하라는 지시를 농림수산성경영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본 표의 치료, 처치, 수술 등의 관련된 점수에 적용한다.
  - 약가 기준표는 별표로 정한다.

## 【별표2】

### 왕진에 참고할 비교 적설지역

북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야마카타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및 토토리현의 지역 및 다음의 표에 기술된 지역

지역명	군명	시촌무라명
미야기현		<구체적인 지역명칭 생략>
후쿠시마현		
토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시가현		
경도부		
효고현		
시마네현		
오카마야현		
히로시마현		

(비고) 이 표의 시촌무라명에 기술된 명칭은 평성 2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시, 촌 또는 무라의 지역을 표시하며 그 후에 각각의 명칭 변경 또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변경에 의한 영향을 받지않는다.

## 약가 기준표 범례

1. 이 약가 기준표는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과 제3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료와 그 이외의 행위에 의해 조합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점수 (가축공제진료 점수표) 중, [제2 치료 비용], [제5 주사 비용], [제6 처치 비용] 및 [제8 수술 비용]에 더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약가 기준표는 의약품을 간단히 주사제, 내용제, 외용제, 주입·투입제와 그 이외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품명을 50음도 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러나, 품명의 앞에 기술된 「동물용」, 「수의용」, 「주사용」, 「○ ○%」 등의 표시는 제외하고 50음도 순으로 배열하였다.
3. 품명의 칸은 약사법 (쇼화 35년 법률 제145호)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일본 약국방에 등록된 의약품 (이하 「국방의약품」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방의약품명을, 국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이하 「국방외의약품」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판매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방외의약품이라도 일반명으로 내용의 통일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명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품명의 항에 (局)의 표시를 한 것은 제16개정 일본약국방에 등록된 의약품이다.
4. 일반명으로 통일한 국방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아래에 판매명을 기술하여 해당 판매명 별로 제조판매 회사명을 기록하였다.
5. 규격·단위의 칸은 각 품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초단위로 여겨지는 규격·단위를 기술하였다. 특히, 주사약에 대해서는 규격의 규정방법이 다양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1) 약재함유량과 용기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

예) chymotrypsin 주사액···5000단위 1 A

1 앰플 중 chymotrypsin 5000단위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표시한다.

예) (局) 링겔액···500 mL 1 V

1병에 링겔액 500 mL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표시한다.

(2) 약제의 농도, 용량 및 용기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

예) (局) adrenalin주사액...0.1% 1 mL 1 A

1 앰플 중 adrenalin의 농도가 0.1%인 주사액을 1 mL 함유하고 있는 것을 표시한다.

(3) 약제의 함유량 (농도)과 용기의 형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1용기 중의 용량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예) (局) estradiol 안식향산 ester주사액...2 mg 1 mL V

1 mL 중 estradiol 안식향산 ester주사액을 2 mg 함유하고 있으며 용기의 형태가 병으로 되어있는 것을 나타낸다.

6. 약가의 칸에는 각 품목의 규격·단위의 해당하는 약 가격을 기록하였다.

7. 비고의 칸에는 해당 의약품의 별명과 그 외의 필요사항을 기록하였다.

8. 제1부부터 제4부까지 각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빈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기록하였다 (제5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사용 부에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의 해당항목을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9. 제5부는 개정 전의 약가 기준표에 기록되어있어 개정에 의해 약가 기준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 기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에서 진료 시설에 재고가 있거나 재고가 있으면 합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의약품을 잠정적으로 수록하는 것으로 평성 26년 6월 30일 까지 남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취급방법

1. 이 약가 기준표는 「가축공제진료 점수표」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사용한 의약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사용한 의약품에 따른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한 의약품의 품목과 수량의 상응하여 계산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더하고 그 합계액을 1점의 가격인 10엔으로 나눈 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고 그 수가 1보다 적은 경우는 절상하여 1로 한다.)를 그 점수로 한다.

(2) 이 약가 기준표에 수록되어있는 의약품으로서 그 사용한 양이 이 약가 기

준표에 기재된 단위로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량에 비례한 가격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약가 기준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진료접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국방의약품과 범례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명으로 이 약가 기준표에 기재되어있는 의약품 중에서 어떤 제조판매회사도 기록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조판매회사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 약가 기준표의 가격에 의해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5) 이 약가 기준표에 기록되어 있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의 품명 (국방의약품명 또는 판매명) 및 규격·단위에 의해 같은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14조의 8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합병 등에 의한 제조판매승인의 승계 또는 회사명의 변경 등에 의해 제조판매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약가 기준표의 가격에 의해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6) 제5부에 기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평성 26년 7월 1일 이후 진료접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이 접수 기준표는 진료접수제에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가축공제에 포함된 가축에 대해서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진료접수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의 판매가격 또는 일반의 진료비에 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제1부 주사제				
품명	제조판매회사명	규격·단위	약가 (엔)	비고
		<구체적인 약품명칭 생략>		

제2부 내용제

제3부 외용제







## [참고2] '16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I 사업개요

#### ① 목 적

- 풍제·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②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 ③ 2016년 사업 예산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예산액(국비) : 628억원('15년 626억원)
- 사업시행방식 : 보조(국고 50%, 자부담 50%) \* 총 보험료 기준
- 사업수혜자 : 보험대상목적물(가축)을 양축하는 농업인

#### ④ 사업 운영

- 사업총괄 : 농식품부
- 사업관리기관 : 특수법인 농금원
  - 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등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현대, 삼성, 동부), 한화손해보험
- 사업감독 : 금융위원회
-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 심의기구 :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 운영체계

- ▶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권장하면서 국고에서 보험료(위험 및 부가 보험료) 지원
- ▶ (민간 보험사) 보험판매와 손해평가업무 등은 주도적으로 실시

**5]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 91%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6 목표 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 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 가축보험 가입률 (주지표)	91	77.3	89.1	90 (목표)	매년말	(보험가입두수/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100
▪ 대상축종 증가수 (부지표)	-	1	-	-	매년말	매년도 가축보험 대상축종수

**6] '16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가축가입두수/대상두수
-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 전년대비 가입농가수 증가율 및 가입두수 증가율

**7]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71,470	84,390	105,754	125,118	125,518
보 조	35,735	42,195	52,877	62,559	62,759
자부담	35,735	42,195	52,877	62,559	62,759

**II**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② 지원대상 및 요건

### 1. 정부지원 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2. 정부지원 제한사항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가축보험 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제출(필수)
  - \* 보험목적물 소재지와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상 소재지 및 축사 소재지는 일치해야 함
  - \* 축사 임대농가는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탁 계약서 첨부시 정부지원 가능
  - 단,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한 등록제외대상은 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보험료 정부지원 가능)
  - 말은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종목:말사육) 사본, 마사회 홈페이지 말 등록정보에서 생산자 확인, (경주마·내륙말)생산자협회 등록여부, 「말산업육성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사본 중 1가지 확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1. 허가대상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 아래 사육시설 면적 초과 시)
  - '15.2.22 이전 : 소 600㎡초과, 돼지 1,000㎡초과, 닭 1,400㎡초과, 오리 1,300㎡초과
  - '15.2.23~'16.2.22 : 소 300㎡초과, 돼지 500㎡초과, 닭 950㎡초과, 오리 800㎡초과
  - '16.2.23 이후 : 소·돼지·닭·오리 50㎡ 초과
2. 등록대상 : 11개 축종
  - 소·돼지·닭·오리(4개 축종) : 허가대상 사육시설 면적 이하인 경우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7개 축종)
3. 등록제외 대상 : 16개 축종
  - 등록대상 가금 중 사육시설면적이 10㎡ 미만은 등록 제외(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조, 지렁이(9개 축종)

○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 '축산 계열화사업자'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임

1. 같은 법 제30조에 의해 시·도지사의 계열화사업 증명을 받은 자 및 '13.3.23 이 법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
3. 시·도에서 현황조사 결과 축산계열화 사업자로 보고한 자
  - \* 농식품부에서 매년 말 기준 축산계열화사업자 현황 파악 및 보험사 통보, 시·도는 신규업체 지정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통보
  - \*\* 보험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가입포함)로 확인된 경우 지원된 국비 및 지방비 보험료가 환수됨을 계약자에게 청약시 사전에 통지

### 「가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말함
- "축산계열화사업자"란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적용대상 규모 :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리수가 돼지: 5천마리 이상, 육계: 33만마리 이상, 토종닭: 12만마리 이상, 산란계: 6만마리 이상, 오리: 15만마리 이상, 염소: 1천2백마리 이상인 경우
- \* 연간계약생산 사육 마리수: 계약생산 사육 마리수×연간 회전수(돼지: 2.5, 육계: 5.5, 토종닭: 3, 산란계: 1, 오리: 5, 염소: 2)

- 축사특약은 가축 주계약에 최소가입금액 10만원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지원 제외
  -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세부 사업내용

(1)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가축 : 16종 \* **소 가축**(「축산법」) 20종의 80% 【제외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평·매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2) 사업실시지역 : 전국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

\* 풍재·수재·설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조

수(潮水) 등으로 인한 피해

(4)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기 축	축 사
	I(송아지)	II(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미만	한육우 12개월 ~13세미만 (젓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 사육 건물 및 부속 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 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 가입	포괄 가입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이상 가입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5) 축종별 보장내용 : 시가의 80% ~100%까지 지급

- 소, 말, 사슴, 양은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가금 8종 및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 축사 화재 등 100% 보상
- 소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소	주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재·수재·설해,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li> <li>○ 부상(사지·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 도축하여야 하는 경우</li> <li>※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li> <li>○ 소 도난에 의한 손해</li> <li>○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li> </ul>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 70% 80% 보상 중 선택
	종모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li> <li>○ 부상,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li> <li>○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li> </ul>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li> </ul>	
축사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li> </ul>	-풍재, 수재, 설해 : 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li> </ul>	

○ 돼지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돼지	주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li> <li>○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li> </ul>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특약	질병위험보장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금액
		축산휴지위험보장	○ 풍재·수재·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전기적장치위험담보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폭염추가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 자기부담금: 100, 200, 300만원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50만원 차감 후 보상	
	설해부담보특약	○ 설해 담보 제외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 말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말	주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li> <li>○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li> <li>○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li> </ul>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단 경주는 경기장외는 가입금액 70%까지 보상, 경기장내는 95%, 90%, 80%, 70% 보장 중 선택)
	특약	○ 말 운송 중 발생하는 주계약 보상 사고	
	씨수말 번식첫해 담보	○ 종모마(수컷)의 번식장애 보상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 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금	주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li> <li>○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li> </ul>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100, 200, 300만원
		폭염추가 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협정보험 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50만원 차감 후 보상	
	설해부담보 특약	○ 설해 담보 제외		
	화재대물배상 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 기타 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기 타 가 축	주 계 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사슴, 양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꿀벌, 토끼, 오소리 는 95%)
	특 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재·수재·설해,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 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가입금액한도내 손해 액 80%까지 보상
축 사	특 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50만 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 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 해 보상	

(6) 보험기간 : 1년

○ 가입시기 : 연중 가입 가능

(7) 보험가입

○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  
록증 사본 반드시 첨부(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축사특약 가입시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첨부(무허가인 경우 축  
사건물배치도 첨부)

- 법인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축종별 약관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 서명,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시스템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 축협 등 대리점은 보험가입시 해당 시·군·구에 가입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청약서상 총보험료, 농가부담 보험료, 정부보조 보험료 이외에 시·도 및 시·군·구 지원 보험료도 명시
- 말과 관련 허위 매매계약 등 방지를 위하여 보험가입시 개체별 건강진단서, 혈통정보사이트(studbook.kra.co.kr)에서 마번 조회 후 “개체별 말 정보조회 마적사항” 확인·첨부, 경매내역서 또는 매매계약서, 말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 \* 현장확인시 말 혈통정보 상 마적사항과 축사 확인, 5천만원 이상 경주마는 마체평가 실시
  - 보험사고시 마이크로칩(바코드)에 휴대용 리더기로 해당 말의 혈통 및 거래내역 등 일치여부 확인

#### (8)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재해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요율(참조요율)로 하고, 손해조사비율은 재해보험사 내부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내부자료가 없는 경우는 시장전체실적에 의한 통계자료 요율 사용
  - 해당 축종의 참조 요율이 없거나 통계자료의 객관성·신뢰성 부족한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 경험요율 또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보험료의 할인·할증
  - (계속계약 할인)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동일한 보험목적물의 위험에 대해 계속계약자 대상으로 축종별 적용요율의 5% 할인
  - (손해율 할인·할증)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최근 3년 보험사 통합 손해율에 따라 축종별 적용요율 적용(5%까지 할인, 15%까지 할증)
  - 할인·할증은 보험요율산출기관 할인·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재해보험사업

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약관, 청약서 등 변경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률에 의한 사용 동의 등 사전 절차 추진

(9)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시 축산농업인 부담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이상 분할 납부 가능
- 보험료 분납방법은 아래 기준을 따르거나 동일 금액으로 분할 납부 가능

구분	납입시기	납입액
1회	보험가입시	축산농가 부담보험료의 60%
2회	보험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축산농가 부담보험료의 40%

(10) 보험가입금액의 산출

- 가축재해보험 약관의 보험가액 산정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중 가축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최대 보유량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 보험계약자는 향후 가격 상승·하락 또는 사육두수 증가·감소가 예상될 경우 기준가액 기준으로 가액을 높이거나 낮춰 가입(통상 가입금액 기준 50~150% 한도)

(11)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 전문성 강화, 이해관계인의 참여 배제, 손해평가 분야별 행동강령 마련·교육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손해평가 실시, 손해평가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됨
  -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손해평가는 가축재해보험 약관의 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 반드시 현장실사 추진

- 손해평가인은 현장 방문 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자격증을 반드시 패용하고 현장조사 실시, 무자격자는 손해평가 실시 불가
- 손해평가인은 조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청구서류를 지체없이 지급심사부에 송부, 누락된 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지역축협인 경우 해당 축협 소속 손해평가인의 자기 손해평가 불가, 인근 지역축협 손해평가인 활용
- 보험금 지급심사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수기작성 및 발급을 배제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된 서류 첨부(원칙)
- 보험금 청구서류는 수익자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피보험자와 보험사고자 일치 여부, 질권설정 여부, 청구서류 위·변조 여부, 수의사 등 발급서류 기재사항 등 누락여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필수 기재사항 등 확인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에 자체 수의사 참여를 배제하고, 시·군 공수의사, 타 지역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 실시

#### (12)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지급심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직접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다만, 청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준비를 대리점 등을 통해 제출받되 심사는 본사가 직접 실시)
- 소 등 청구건수가 많고 보험금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는 손해사정법인에 위탁심사 가능, 사전에 반드시 교육 실시 및 본사심사와 동일한 결재자가 결재
-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여부), 손해액 산정, 손해 보상 방식(비례보상, 실손보상), 보험금 지급대상(수령자와 지급처 동일여부 확인) 등 심사
-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청구
-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험금 지급 전 지급심사 강화
-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HACCP)와 연계한 축산물 정보공유(축산물품질평가원)

- 긴급도축시 ①현지조사서, ②수의사 진단서, ③도축장 정산서, ④도축대상 기립불능확인서(도축장), ⑤소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소 이력시스템에서 도축출하 등록 확인 후 출력), ⑥현장조사 및 사고목적물 사진(사고 가축 사진 증거 능력화를 위해 앞·측·뒤·전체 사진 첨부)
- 폐사시 ①현지조사서, ②수의사 검안서, ③소각 또는 매장증명서, ④도체결함에 대한 도축장 정산서, ⑤소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 서류 첨부(소 이력시스템에서 폐사 등록 확인 후 출력), ⑥현장조사 및 사고목적물 사진(사고 가축사진 증거능력화를 위해 앞·측·뒤·전체 사진 첨부), ⑦잔존물처리비용 증빙서류
- 보험금 지급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작성, 손해평가인 및 심사자가 적정여부 체크 후 서명하여 첨부
- 무자격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손해평가인 관리 철저 및 현지조사서, 소각 또는 매장증명서에 반드시 손해평가인(자격증 일련번호 기재) 및 보험가입자가 확인 서명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업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13) 보험금 지급

- 보험대상 품목별 가입유형에 따라 가입금액 범위내 자부담을 제외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시에는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
  - 자기부담금은 소·말·사슴·양 20%(경주마는 경기장외 30%, 경기장내 5·10·20·30% 중 선택), 돼지·닭·오리 등 가금·꿀벌·토끼·오소리는 5%
  - 돼지, 가금의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및 폭염추가 특약은 100·200·300만원 중 선택
  - 풍재·수재·설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50만원,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이 없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다만, 보험금 청구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급된 서류에 한하며, 수기작성 서류는 불인정)
- 7일 경과시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 《 보험금 지급절차 》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농가→지역·품목농협·축협) → 손해평가 및 지급보험금 결정(통상 2주, 화재나 풍재·수재·설해로 축사 등 가축 수용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통상 4~6주) → 보험금 지급(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 \* 재해피해 농가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 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 ③ 지원대상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일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비)는 총보험료의 20~40% 추가 지원, 실제 자부담은 10~30% \* 서울·부산·대전은 지원없음

### ④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보험료의 50%\* 보조
- \* 단,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말은 초과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35%만 국고지원,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총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손해사정비)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

보험에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업 관련 법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 보험사업자수수료 등 운영비) :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재해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⑥ 보험상품 연구·개선

- 농금원은 축종별 재해피해 특성을 고려하고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도입상품 및 기존 상품에 대한 연구 추진
  - 분기별 또는 필요시 상품개선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 상품연구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 농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

## ⑦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금원의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개발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 개발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재해보험 판매·인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⑧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함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서에 따름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①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및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초까지 시·도, 농금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기 전 지자체, 보험사 등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 설문조사 등 사전 의견수렴 시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위험관리점검회의 개최, 대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8조)

#####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계획을 근거로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사업계획을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지역 대리점, 농협, 낙·축협 영업점 등에 통보하여 축산농가에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시 농금원과 사전 협의

#### ②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전산화에 따른 업무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고, 확정된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을 정하여 12

월중순까지 시·도, 농금원,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사업점검,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 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하여 홍보 철저
  - 연초 지자체 직원 및 각종 협회, 축산농가 대상 권역별 가축보험 설명회 개최 및 축산농가에 가축보험 홍보 팜플렛 배부, 지자체에 포스터 배부,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추진
- 가축보험 상품개선협의회는 현장간담회, 전문가 협의회를 분기별 또는 필요시 개최
-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 보험사 내부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시스템(농식품부의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농금원의 지방비 관리시스템·보험요율산출기관의 할인·할증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철저
  - 다음연도 시·도 및 시·군·구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한도, 지원두수 한도 등 지자체 지원기준을 파악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12월중순까지 통보, 재해보험사업자는 12월말까지 내부시스템에 입력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비 지원기준을 변경 요청한 경우(지자체는 시행일 1주일전까지 농금원에 통보) 보험사 전산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지방비 예산은 농금원 지방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실시간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자체별 예산은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붙임4)에 적합하게 전체 보험사 중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 지원·관리
  - 매월 지자체 가입실적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지자체 정산요청서 공문 통보시(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 지자체 예산잔액·미정산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보 및 재해보험사업자 점검·관리
  - 지원된 지방비 정산요청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현황을 관리하고, 지연된 시

- 도 및 시·군·구는 특별관리
-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정산 현황을 알기 쉽도록 메뉴 정상화 및 유지보수 관리 철저
-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의 월보 제출 실적, 지자체 매월 정산요청 내역과 시스템상 지자체 보험가입실적 합계, 농금원 지방비 관리시스템상 지방비 잔액이 일치되도록 현황 관리
- 매월 월보와 정산내역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금액 및 배분(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농가 자부담)의 적정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보험료 할인·할증 반영 등 사전 적정성 검증 후 농식품부 보고 및 지자체에 정산내역 통보,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폭염·폭설 등 재해, 방역 등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보험사고 접수현황(계약자, 축사소재지, 축종, 폐사두수, 추정보험금 등) 요청시 보험사 자료를 받아 매일 현행화하여 농식품부 보고,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지역 대리점과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평가인 등 대상 교육, 홍보, 운영비 집행 등 세부계획 수립(분야별 월별 추진계획 포함) 후 농금원을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12월말)
- 가축보험 제도개선 사항 관련 축종별 단체, 지자체, 낙·축·농협, 수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설명회 개최
- 축협 등 대리점을 통하여 선착순 지원, 갱신계약시기 도래 등 사전 안내
- 손해평가인을 위촉하고 자격증 교부, 평가요령 및 응대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관리 철저
- 전체 영업점에 가축보험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부착·비치, TV 광고, 보도자료, 기획기사, 기고 등 홍보 실시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 대상가축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오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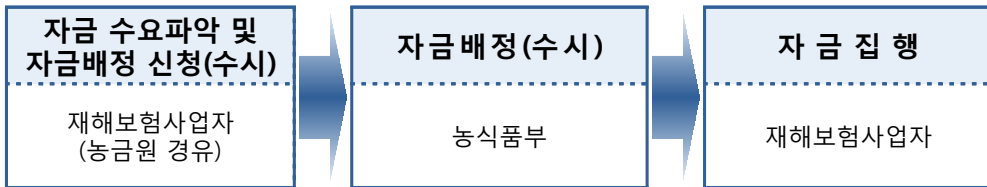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8일까지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및 시·도별 가입현황, 보험금 지급실적(계약건별 상세내역 첨부),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별) 정산요청 및 정산처리실적 등 월보를 농금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전산화를 추진하고 보험가입시 국비·지방비를 제외한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가축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부, 농금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
  -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에 적정하게 가축보험 사업 운영 및 축협 등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경된 사업시행지침 사전 교육 실시
  - 축산농가에서 보험가입 요청시 축산업 등록증 등 지원제한, 지자체별 지원기준, 제외대상 등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지방비 지원 비율, 농가당 지원한도에 맞게 보험료 계산 및 농금원 지방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방비 자동배정
  - 지자체에서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처리를 위하여 전화 또는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부적격자 지원 취소 등 변경 요청시 즉시 확인하여 조치 후 3일 이내 회신
  - 지자체에서 정산 및 이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재해보험 통합관리 시스템에 가입현황 등 정확한 자료를 1일 단위 업그레йд 실시
  -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완료하고 12월분은 이월하여 익년 1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현황, 자료 등 요청시 적극 협조
  -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발송한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입금하고, 예산 조기 소진 등 사유로 지자체에서 요청시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 후 예산으로 재사용
-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자체 시스템에 개인별·지자체별·영업점별 보험가입현황, 시·도 및 시·군·구비 지원현황 및 환급·추징 등 계약변경현황 등을 관리하고 관련 자료 송부
  - 시스템상 송부한 자료와 매월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 송부한 월보가 일치되도록 현황 관리

- 농식품부, 농금원 및 지자체에서 지원된 보조금 정산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상 송부하는 자료 추가

### ③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배정
  - 전년도 사업시행자의 보험 가입율과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월별 가입현황 및 자금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적정성 여부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및 자금 집행
  - 자금배정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자,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교부신청액 및 교부조건 등 포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금원에 보고

####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농금원·손보사(정책보험팀)
  - (조사) 손보사(감사·SIU)
  - (수사) 경찰청(수사국 수사1과)·금융감독원(보험조사국 손해보험조사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농금원은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
  - 개최시기 : 분기별,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범위 : 농식품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등
  - 점검내용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가 ‘경계·심각단계’의 보험금 청구 건으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가축재해보험 실태 점검·조사, 보험사고 혐의자 수사의뢰,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내용 : 보험계약 체결현황 및 보조금 등 자금집행실적 및 운영현황, 국고보조금 지원의 적합 여부, 부가보험료(사업운영비, 사업수수료) 세부항목별 집행실적과 사용내역, 보험사업 목적외 사용,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가축재해보험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시행지침 이행여부, 자체세부사업계획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 농업인 지원 규모, 지



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실시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분기별 위험관리상황을 농금원 경유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가 제시한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는 실태점검 실시 또는 수사의뢰
  - 신호단계(보험금 청구횟수 및 지급액): 관심→주의→경계→심각
  - 농가별 개인/법인, 지점별 구분, 위험단계 기준은 사고 발생수 및 보험금 지급액 동시 만족시 적용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중 경계·심각 신호단계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안건은 매 분기별 또는 필요시 위험관리 점검회의 상정

구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사고 발생 수 및 보험금 지급액	개인	5회이상, 4천만원 이상	5회이상, 5천만원 이상	5회이상, 6천만원 이상	5회이상, 7천만원 이상
	법인	7회이상, 2천만원 이상	7회이상, 3천만원 이상	7회이상, 4천만원 이상	7회이상, 5천만원 이상
	지점	30회이상, 5억 이상	30회이상, 7억 이상	30회이상, 9억 이상	30회이상, 11억 이상
조치사항				실태점검	실태점검 또는 수사의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횟수 및 보험금 지급액 초과로 경계이상 단계인 개인, 법인, 지점에 대하여 자체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분기말까지 실태점검 실시

- 자체 실태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자체 실태점검이 미흡한 경우 또는 위탁심사를 추진한 경우 농금원에서 재해보험사업자 본사 서류점검 후 현장점검 실시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 농식품부는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게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보험계약자(피해보험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보험사고 관련 해당 대리점·영업점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각각 수수료 감액조치 등의 제재를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 및 관련된 수의사 명단 등을 위험관리 점검회의 시에 농금원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보험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군·구 관할 전체 영업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⑤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실적 측정

### 《만족도 조사》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주관 : 농금원
  - 조사시기 및 대상 : 사업기간 중 /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결과제출 : 10월말까지 조사결과 농식품부에 제출(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 통보 前 정책반영)

## ⑥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1.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2. 사업평가 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금원
  - 평가기간 및 평가대상 : 매년 1월중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3.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1월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금원에 제출(1월 10일 까지)

#### 4. 평가 후 사후관리

- 농금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 《환 류》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참고3] 가축재해보험법안 및 가축질병보험법안**

가축재해보험법	가축질병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가 가 가</p>	<p>제1조(목적) 가 가 가</p>
<p>제2조(정의)</p> <p>1. "가 ( " 가 )</p> <p>2."가 " 가</p> <p>3. " 가 " 가 가</p> <p>가</p> <p>4. " " 가 가 가</p> <p>5. " " 가 가</p> <p>가 가</p> <p>6. " " 가</p>	<p>제2조(정의)</p> <p>1. "가 ( " 가 )</p> <p>2."가 " 가</p> <p>3. " 가 " 가 가</p> <p>가</p> <p>4. " " 가 가 가</p> <p>5. " " 가 가</p> <p>가 가</p> <p>6. " " 가</p>



<p style="text-align: center;">3</p> <p>3.</p> <p style="text-align: center;">3</p> <p style="text-align: center;">4 1 3</p> <p style="text-align: center;">1 6</p>	<p style="text-align: center;">3</p> <p>3.</p> <p style="text-align: center;">3</p> <p style="text-align: center;">4 1 3</p> <p style="text-align: center;">1 6</p>
<p><b>제2장 재해보험사업</b></p>	<p><b>제2장 가족질병보험사업</b></p>
<p><b>제4조(가족재해보험의 종류 등) 가</b></p>	<p><b>제4조(가족질병보험의 종류 등) 가</b></p>
<p><b>제5조(보험목적물)</b></p> <p>가 가</p> <p>1. 가 : 가</p>	<p><b>제5조(보험목적물)</b></p> <p>가 가</p> <p>1. 가 : 가</p>
<p><b>제6조(보상 범위) 가</b></p> <p>가 가</p>	<p><b>제6조(보상 범위) 가</b></p> <p>가 가</p>
<p><b>제7조(보험가입자) 가</b></p>	<p><b>제7조(보험가입자) 가</b></p>





<p>1 가 가 가</p> <p>「 」 95 • 97 98 . ,가</p> <p>가 「 ,」</p> <p>」 95 1 5 , 「 」</p> <p>「 」 98</p>	<p>1 가 가 가</p> <p>「 」 95 • 97 98 . ,가</p> <p>가 「 ,」</p> <p>」 95 1 5 , 「 」</p> <p>「 」 98</p>
<p><b>제11조(수급권의 보호)</b> 가</p> <p>.</p>	<p><b>제11조(수급권의 보호)</b> 가</p> <p>.</p>
<p><b>제12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b> 가 가 가</p> <p>가 가 가</p> <p>가</p> <p>.</p>	<p><b>제12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b> 가 가 가</p> <p>가 가 가</p> <p>가</p> <p>.</p>
<p><b>제13조(업무 위탁)</b> 가 가</p> <p>가</p> <p>가</p> <p>.</p>	<p><b>제14조(업무 위탁)</b> 가 가</p> <p>가</p> <p>가</p> <p>.</p>
<p><b>제14조(회계 구분)</b> 가</p> <p>.</p>	<p><b>제14조(회계 구분)</b> 가 가</p> <p>가</p> <p>.</p>
<p><b>제15조(분쟁조정)</b> 가</p>	<p><b>제15조(분쟁조정)</b> 가</p>

<p>(調停) 「 」 51 57 .</p>	<p>(調停) 「 」 51 57 .</p>
<p><b>제16조(「보험업법」의 적용)</b> 「 」 102 , 104 107 , 118 1 , 119 , 120 , 124 , 127 , 128 , 131 133 , 134 1 , 136 , 162 , 176 181 1 : " " " " .</p>	<p><b>제16조(「보험업법」의 적용)</b> 가 「 」 102 , 104 107 , 118 1 , 119 , 120 , 124 , 127 , 128 , 131 133 , 134 1 , 136 , 162 , 176 181 1 : " " " " .</p>
<p><b>제17조(재정지원)</b> 가 가 가 가 가 ( " " ) : 가 가 가 1 가 1</p>	<p><b>제17조(재정지원)</b> 가 가 가 가 가 ( " " ) : 가 가 가 1 가 1</p>
<p><b>제3장 보험사업의 관리</b></p>	<p><b>제3장 보험사업의 관리</b></p>
<p><b>제18조(가축재해보험의 관리)</b> 가 1. 가 2. 가 3. 가</p>	<p><b>제18조(가축질병보험의 관리)</b> 가 1. 가 2. 가 3. 가</p>

<p>1. 1 1 5 2. 8 2 가 4. 가</p>	<p>1. 1 1 5 2. 8 2 가 4. 가</p>
<p><b>제19조(통계의 수집·관리 등)</b></p> <p>1 가 가 가 가 3 1</p>	<p><b>제19조(통계의 수집·관리 등)</b></p> <p>1 가 가 가 가 3 1</p>
<p><b>제20조(시범사업)</b> 가</p>	<p><b>제20조(시범사업)</b> 가</p>

1      2	1      2
<p><b>제21조(보험가입의 촉진 등)</b>      가</p> <p style="padding-left: 100px;">가</p> <p style="padding-left: 100px;">가</p>	<p><b>제21조(보험가입의 촉진 등)</b>      가</p> <p style="padding-left: 100px;">가</p> <p style="padding-left: 100px;">가</p>
<p><b>제22조(보고 등)</b></p> <p style="padding-left: 20px;">가</p> <p style="padding-left: 40px;">가</p> <p style="padding-left: 100px;">가      가</p>	<p><b>제22조(보고 등)</b></p> <p style="padding-left: 20px;">가</p> <p style="padding-left: 40px;">가</p> <p style="padding-left: 100px;">가      가</p>
<b>제5장 벌칙</b>	<b>제4장 벌칙</b>
<p><b>제23조(벌칙)</b>      10      2</p> <p style="padding-left: 20px;">「      」      98</p> <p style="padding-left: 40px;">(      3</p> <p style="padding-left: 20px;">)      2</p> <p style="padding-left: 20px;">가      3</p> <p style="padding-left: 100px;">1      1</p> <p>1.    10    1</p> <p>2.    11    2</p> <p style="padding-left: 40px;">가</p> <p style="padding-left: 40px;">15</p> <p style="padding-left: 40px;">500</p>	<p><b>제23조(벌칙)</b>      10      2</p> <p style="padding-left: 20px;">「      」      98</p> <p style="padding-left: 40px;">(      3</p> <p style="padding-left: 20px;">)      2</p> <p style="padding-left: 20px;">가      3</p> <p style="padding-left: 100px;">1      1</p> <p>1.    10    1</p> <p>2.    11    2</p> <p style="padding-left: 40px;">가</p> <p style="padding-left: 40px;">15</p> <p style="padding-left: 40px;">500</p>
<b>제24조(양벌규정)</b>	<b>제24조(양벌규정)</b>

<p>30</p> <p>(科) . ,</p>	<p>30</p> <p>(科) . ,</p>
<p><b>제25조(과태료)</b> 가</p> <p>가 10 2</p> <p>「 」 95</p> <p>1</p> <p>가 ,</p> <p>, , ,</p> <p>, 500</p> <p>1. 18 「</p> <p>」 120</p> <p>2. 18 「</p> <p>」 131 1 • 2</p> <p>4</p> <p>3. 18 「</p> <p>」 133</p> <p>500</p> <p>1. 10 2 「</p> <p>」 95</p> <p>가</p> <p>2. 10 2 「</p> <p>」 97 1</p>	<p><b>제25조(과태료)</b> 가</p> <p>가 10 2</p> <p>「 」 95</p> <p>1</p> <p>가 ,</p> <p>, , ,</p> <p>, 500</p> <p>1. 18 「</p> <p>」 120</p> <p>2. 18 「</p> <p>」 131 1 • 2</p> <p>4</p> <p>3. 18 「</p> <p>」 133</p> <p>500</p> <p>1. 10 2 「</p> <p>」 95</p> <p>가</p> <p>2. 10 2 「</p> <p>」 97 1</p>

<p>3. 29</p> <p>1 , 2 1 3</p> <p>2 2 3</p> <p>가</p> <p>.</p>	<p>3. 29</p> <p>1 , 2 1 3</p> <p>2 2 3</p> <p>가</p> <p>.</p>
--	--

## [참고4] 가축질병공제(보험)에 관한 설문조사

가축질병 방역강화 및 FTA에 따른 축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 농가의 가축질병 문제의 해결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질병공제(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동 질병공제(보험)은 가입가축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 예찰 및 처치활동, 응급 처치활동등에 따른 비용을 보장하는 공제(보험) 상품임

응답자: (무기명 사인 필요)

### I. 응답자 인적사항

1. 나이 : 만 (            )세,    수의사 경력 (            )년
2. 주 활동지역 : (    )도(시)
3. 주 활동 분야 : 대동물(    ), 소동물(    )

### II. 가축질병공제(보험)에 대한 설문

1. 가축질병공제(보험)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대상 축종(효율성 측면 고려)	도입순서
젖소, (한)육우	
돼지	
가금(육계, 산란계)	
기타(            )	

2. 가축질병공제(보험)의 대상질병(법정전염병 포함)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대상질병 범위	포함여부
제1종 법정전염병	
제2종 법정전염병	
제3종 법정전염병	
일반질병	

## 3-1. 가축질병공제(보험)의 진료활동 범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진료활동 범위	포함여부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기방문 예찰활동 및 백신처방, 응급 진료	
약제비용(수의사 처방에 의한)	
질병관리 컨설팅	

## 3-2. 진단처치와 약제비(예방접종 포함) 비중(합계 100%)은 경험상 어느 정도일까요?

진단 처치	약제비(예방접종포함)
( )%	( )%

## 4. 진료비부과방식에 대하여 걱정하다고 판단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진료비 부과방식	선택여부
- 행위별 수가를 적용(일본, 충남사례)	
- 기본진료비와 추가진료비 적용(서울우유사례)	
- 두당 관리비 적용(이스라엘 사례)	

## 5. 표준수가 적용과 지역별 차별화 여부에 대하여 걱정하다고 판단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표준진료수가 및 지역별 차등화	선택여부
- 표준진료비 적용	
- 지역별 차별화	
- 야간진료 및 주말진료 차별화	

## 6. 가축질병공제(보험) 보장수준에 대하여 걱정하다고 판단하시는 수준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장 수준	선택여부
- 가축가액 관계없이 무제한	
- 가축가액 100% 한도로	
- 가축가액 50% 한도로	
- 가축가액 ( )% 한도로	



7. 보험료 계산을 위한 축종 구분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험료 계산을 위한 위험 분류(평균치료비 차이)	선택여부
- 축종 구분	
- 연령구분(성우, 송아지)	
- 성별구분(암소, 수소)	

8. 축산농가별 질병관리 노하우 및 경험을 고려하여 보험료 차별화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험료 차별화	선택여부
- 질병관리실태 평가	
- 손해율 평가	
- 보험료 차이(±10%, ±20%, ±30%, ±40%, ±50%, ±100% 등)	±( )%

9. 가축질병공제(보험) 도입에 따라 수의사에 의한 가축질병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폐사율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을지 주관적인 경험을 고려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수의사에 의한 질병관리가 없을 경우와 비교)

폐사율 ( ) % 감소

10. 방역관리상 가축질병공제(보험)에 특정지역 전체 가입 또는 농가별 선택가입 허용에 대한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험료 차별화	선택여부
- 특정지역 전체 가입	
- 축산농가별 선택 가입	

11. 방역관리상 가축질병공제(보험)에 축산농가 전체 두수 가입 또는 일부 개체만 선택 가입 허용에 대한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험료 차별화	선택여부
- 전체 두수 가입	
- 일부 개체 선택 가입	

12. 가축질병공제(보험)에 참여하는 수의사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하여 적절한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수의사 서비스에 대한 보수 지급	선택여부
- 공제(보험)에서 수의사 고용(가축진료소), 농가 선택	
- 공제(보험)에서 수의사 지정, 축산농가 선택	
- 기타( )	

13. 증빙서류 간소화 및 입증 강화(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처방시스템 활용(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미지정보 제공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수의사 서비스에 대한 보수 지급	선택여부
- 처방시스템 활용(증빙서류 및 입증 강화)	
- 처방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질병현황의 실시간 체계적 파악 및 대응	
- 기타( )	

14. 수의사의 예방·처치활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수의사 서비스에 대한 보수 지급	선택여부
- 심사·평가 필요성 있음(심사평가 주체, 내용, 방법 사전 설정)	
- 없음	
- 기타( )	

※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